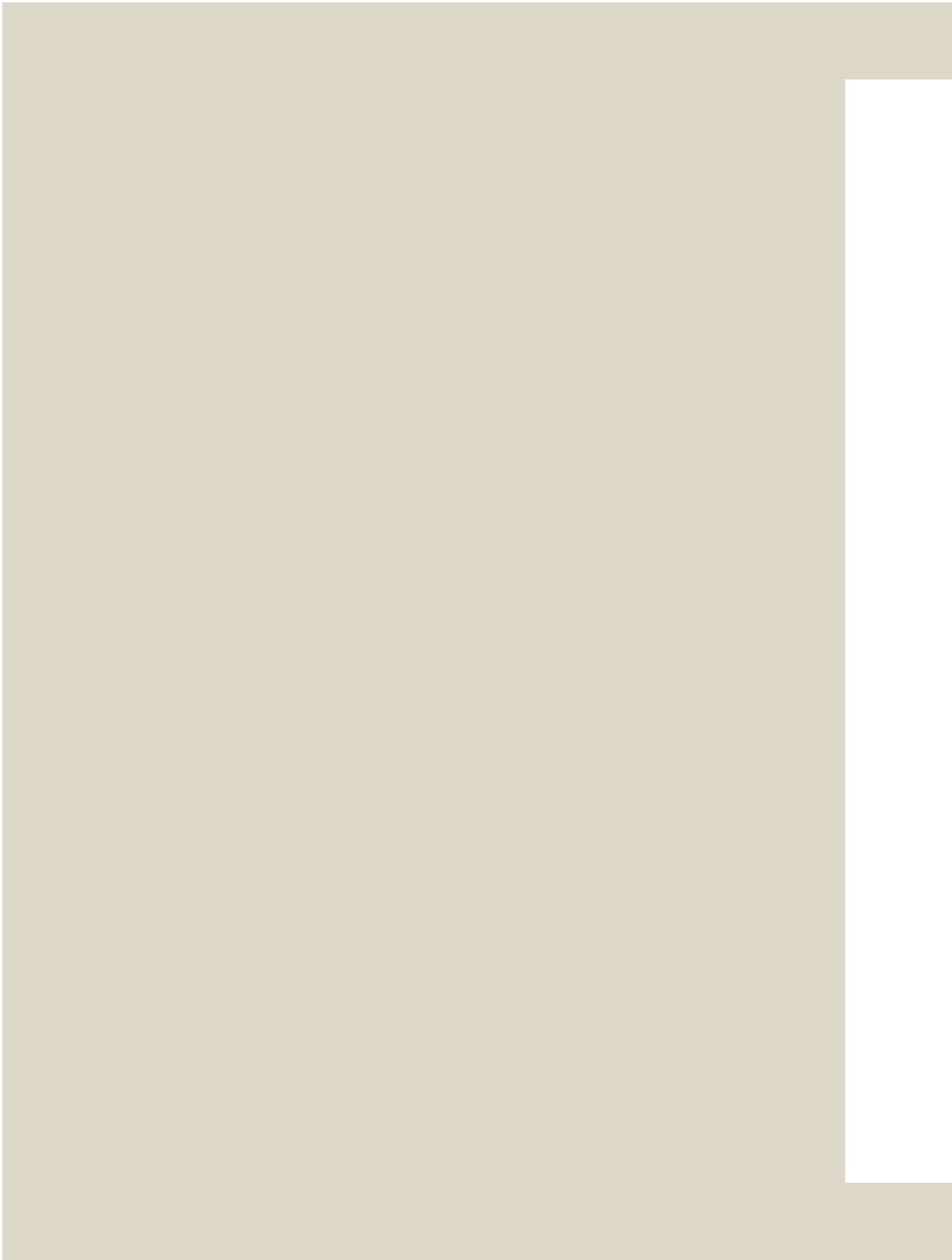


W H I T E P A P E R O N G I C P R O J E C T

# 개성공단 5년

개성에 가면 평화가 보인다

개성공단5년 발간위원회 편



# 개성공단 5년

개성에 가면 평화가 보인다

개성공단5년 발간위원회 편

## 발간에 부처

2003년 6월 첫 삽을 뜬 지 약 5년이 되는 지금, 개성공단은 1단계 부지 조성 및 분양을 완료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그간 개성공단은 꾸준히 발전하여 이제는 월 생산액 2천만 달러, 월 수출액 4백만 달러, 북측 근로자 2만명이 일하는 남북경제공동체의 현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2007년 말 현재 60여개의 기업이 가동중이고, 앞으로 1단계가 완전 가동되는 3-4년 후에는 입주기업이 450여개로 증가할 것입니다. 북측 근로자도 10만명 이상이 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개성공단의 빠른 성장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그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개성공단 개발은 그 자체의 성장 못지 않게 남북관계에도 역동적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5년 전 수많은 지뢰가 깔려 있던 인근 비무장지대는 하루 1천명의 인원과 500대가 넘는 차량이 왕래하는 평화의 통로로 변했습니다.

단절과 대치의 공간이 반 세기 넘게 지속되어온 분단을 극복하는 치유와 희망의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남북이 함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성공단 개발 경험은 우리 민족이 함께 쓴 새로운 현대사(現代史)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개성공단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7 남북정상선언』에 따라 지난 12월 17일 개성공단 2단계 개발이 착수되었고 통행·통관·통신 등 3통을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 장치들을 완비해 나가기 위한 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 개발이 완료되고 2단계에 돌입하는 이 시점에서 지난 5년간의 개성공단 개발 경험을 가감없이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의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 내일의 역사를 설계하고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 5년』은 2003년 여름 개성공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이래 남북 당국간 협의 과정, 공단 건설 경과, 입주기업 현황, 사업 추진 체계, 공단 운영 현황, 미래 비전 등을 상세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 사업 관련 남북 합의서, 법규집 등도 부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은 개성공단 투자 안내서인 동시에 향후 북한 지역에 남북 합작 공단을 건설할 경우 하나의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또한 개성공단의 지속적인 발전과 남북경제공동체 가속화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데에 유익한 자료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개성공단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이바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7년 12월 28일  
통일부장관 이재정

발간에 부쳐

## 제1장 개성공단인의 태동

### 제1절 개성공단 건설의 역사적 배경 13

- 1. 정부의 대북 교류협력정책 추진 13
- 2. 북한의 경제 관련 개선 조치 15

### 제2절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협의 과정 17

- 1. 민간 차원의 협의 17
- 2. 당국 차원의 협의 18
- 3. 2007 남북정상회담 28

#### ◎ 현장의 소리(Interview)

이강연 | 현대아산 부사장 32

## 제2장 1단계 공단 조성 및 분양

### 제1절 1단계 공단 건설 착공 37

- 1. 1단계 착공 준비 37
- 2. 1단계 공단 건설 착공 39

### 제2절 1단계 분양 40

- 1. 시범단지 40
- 2. 본단지 1차 43
- 3. 본단지 2차 44

### 제3절 1단계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완공 49

- 1. 부지 조성 50
- 2. 교량 52
- 3. 용수시설 53



4. 환경기초시설	54
5. 전력	56
6. 통신	59

## 제3장 입주기업 및 근로자 현황

### 제1절 생산 활동

1. 유치 업종 및 투자규모	63
2. 생산 및 수출 현황	69
3. 공장 가동률 현황	77

### 제2절 근로자 현황

1. 북측 근로자 현황	78
2. 남측 근로자 현황	79
3. 생산성	80
4. 기술교육훈련	81

#### ◎ 현장의 소리(Interview)

유창근   (주)에스제이테크 사장	84
이규용   (주)에스제이테크 개성법인 실장	87

## 제4장 입주기업 활동 지원

### 제1절 기업 운영 지원

1. 노무관리	93
2. 기업창설·등록	97
3. 부동산 등록	97
4. 세무업무	98
5. 보험업무	100
6. 자동차 등록	100
7. 공단관리	101

제2절 금융 및 판로 지원	105
1. 금융 지원	105
2. 원산지 문제 해결 노력	105
3. 판로 개척	108

제3절 출입·통관 지원	111
1. 출입 현황	111
2. 물자 반출입 절차	116
3. 전락물자관리	118

## 제5장 사업추진 및 지원 체계

제1절 남북 당국간 협의 체계	125
1. 남북장관급회담	125
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126
3.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및 실무접촉	126

제2절 사업추진 및 지원 체계	127
1. 개성공단사업지원단	127
2.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128
3. 정책협의체 운영	129

제3절 관련법 지원 체계	133
1. 북한 법체계	133
2. 남한 법체계	136
3. 남북간 합의서	139

제4절 홍보 및 관련 정보 지원	141
1. 개성공단 방문행사	141



2. 미국 방문 설명회	144
3. 관련 정보 지원	145

◎ 현장의 소리(Interview)

조명균   대통령비서실 안보정책비서관/전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단장	152
-------------------------------------	-----

## 제6장 개성공단의 성과와 미래

제1절 개성공단 사업의 성과	159
-----------------	-----

1. 남북 상생의 경험 모델 창출	159
2. 개성공단의 경쟁력 확보	161
3. 우리 경제에의 파급 효과	162

제2절 개성공단의 미래	163
--------------	-----

[부록]	1. 개성공단 사업 추진경과(일지)	168
	2. 남북 합의서	175
	3. 주요 법규집	193
	4. 주요 통계	347

◎ 편집후기

박형일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개발기획팀장
김기혁	통일부 남북경제협력본부 남북기반협력팀장/ 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사업지원부장
이수영	통일부 정책의제관리팀장/ 전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지원총괄팀장
마경조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사무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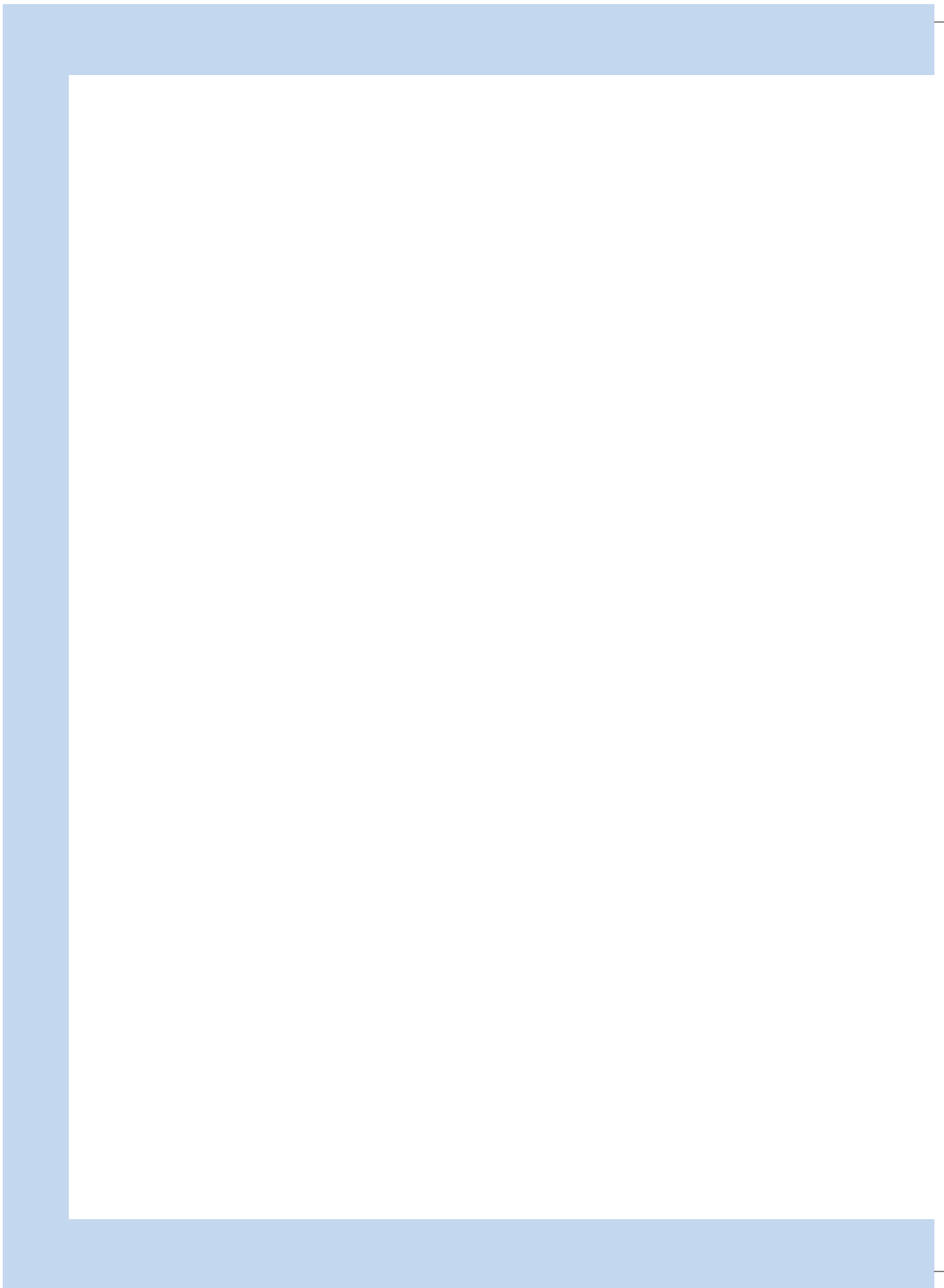
## 제1장 개성공단의 태동

---

- 제1절 개성공단 건설의 역사적 배경
- 제2절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협의 과정



개성공단 전경





## 제1장 개성공단의 태동

---

### 제1절 개성공단 건설의 역사적 배경

#### 1. 정부의 대북 교류협력정책 추진

남북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남북 당국간 경제회담은 1984년 11월 15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사무실에서 처음 열렸다. 남북경제회담은 그 뒤 몇 차례 더 열렸으나 만남 자체에 의의가 있었을 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경제회담에서는 남북간의 물자교역, 경제협력, 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 공동어로구역 설치, 지하자원 공동개발 등 다양한 경협방안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남북경제회담은 1985년 11월 열린 5차 회담을 끝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그 뒤 간헐적으로 이어진 남북대화에도 불구하고 냉전 구조하에서 남북경협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찾지 못했다.

정부가 1988년 발표한 '7.7선언'은 남북경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

다. 7.7선언은 경제인을 포함하여 남북 주민의 상호방문과 교류를 허용하고, 남북교역을 민족내부교역으로 간주하여 그 문호를 개방하며,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우방국들의 대북 교역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어 정부는 남북간 교류협력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간 교역은 1990년대 들어 급증하였다. 1989년 1,872만달러에 불과하던 교역규모가 1992년에 1억 7,343만달러로 늘었다.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대북 투자도 점차 증가하였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북한의 인프라 건설 지원을 포함한 ‘베를린선언’을 발표하였다. 2000년 6월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간 대결국면을 화해·협력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02년 4월 대통령 특사 방북시에도 개성공단 건설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개성공단을 남북 상생의 경험 모델로 만들기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개성공단은 이러한 남북관계의 발전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배경으로 태동하게 되었다.



개성공단 현지 공장에서 조업중인 북한 근로자

## 2. 북한의 경제 관련 개선 조치

개성공단이 태어난 또 하나의 배경에는 북한의 내부적 요인도 있었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경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해 왔다. 1984년의 합영법과 1991년 시작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이 대표적 조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자유치 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체제의 경직성,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한 투자자의 외면으로 실제 성과는 미미했다.

북한은 특히 2001년 '신사고운동' 과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를 통해 경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 7.1조치로 물가, 임금, 환율 등 가격기구조정을 통한 가격체계가 현실화되고, 기업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인센티브제가 도입되었으며, 배급제의 단계적 폐지 및 공공요금 인상 등 사회보장의 범위가 점진적으로 축소되었다.

북한은 2003년 3월 처음으로 종합시장 개설을 공식화하고, 최고가격·변동가격제를 실시하였다. 공식 배급망의 기능 저하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장 기능을 수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장마당' 도 더욱 확산되었다.

특히 북한은 중국의 경제특구 제도를 모방하여 신의주특별행정구역(2002.9)과 금강산관광지구(2002.10)를 지정하였다.

이어서 북한은 2002년 11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여 개성공업지구를 지정하고, 11월 20일에는 '개성공업지구법' 을 제정하였다.

개성공업지구법은 북한이 제정·공포한 북한법이지만 남한과 해외 기업들이 경제특구에서 자유로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경제에 기초한 법 체제를 최대한 수용한 점이 특징이다.

남측 개발업자가 공단 개발에 필요한 부지조성, 전력, 통신, 용수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분양하고, 남측이 임명한 이사장이 공단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했다.

## 개성공단 1단계 개발 과정



시범단지 토공사 현장(2004.3)



시범단지 입주업체 공장 건축이 진행중인 모습(2005.3)



대부분의 입주업체 공장 건축이 완료된 시범단지 전경(2006.3)



개성공단 1단계 330만㎡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된 모습(2007.10)

## 제2절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협의 과정

### 1. 민간 차원의 협의

1999년 10월 1일 현대와 북측은 서해안 공단 건설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양측은 공단 입지에 대하여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현대가 해주를 요구했지만 북측은 신의주를 주장하였다.

2000년 6월 28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평양을 방문하여 공단개발 사업에 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개성지역을 공단후보지로 제시하고, 2000년 8월 방북한 현대아산 정몽헌 회장에게 개성특구 결정 사실을 통보하였다.

2000년 8월 10일부터 사흘간 현대의 공단부지 조사단은 개성 사업후보지를 조사하였으며, 2000년 8월 22일 베이징에서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서와 함께 개성을 중심으로 한 '공업지구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후 현대·토지공사와 북측간에 공단 개발을 위한 실무 접촉이 5차례 있었으며, 그 결과 북한은 2002년 12월 23일 현대아산에게 개성공업지구 전체에 대하여 50년간 사용을 보장하는 토지이용증을 발급하였다.

이에 따라 현대·토지공사는 공장구역 조성사업 중 우선 1단계 330만㎡을 개발하는 사업시행협약서를 체결하였다. 토지공사는 분양·임대업무를, 현대는 공사시공을 담당하기로 업무를 나누었다. 12월 27일 통일부는 이들 기관을 개성공단 공장구역 1단계 조성공사에 대한 협력사업자로 승인하였다. 개성공단 착공식은 2002년 12월말 갖기로 합의(2002년 11월 제3차 경추위)했지만, 군사분계선 통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연기되었다가 2003년 6월 30일 마침내 1단계 개발 착공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개성공단은 남측 사업자가 공단 개발은 물론 용수, 전력, 통신, 에너지 등 일체의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남측이 임명한 관리위원장이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개성공단은 법적으로 북한법에 의해 개발되고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지도를 받게 되어 있으나, 사실상

공단의 개발과 관리운영은 남측에 위임되어 있다는 점이 여타 특구와 구별된다.

## 2. 당국 차원의 협의

민간 차원에서 시작된 개성공단 개발과 관련된 협의는 2002년 4월 3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대통령 특사 방북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쌍방은 공동보도문에서 개성공단 건설 등을 토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가동에 합의하였다.

### 가. 남북장관급회담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개성공단 개발 문제는 2002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회담부터 구체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남측은 장관급회담에서 개성공단의 조속 건설(9차),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협력 및 안정적인 투자여건 조성(15, 16차), 2단계 개발 조속 추진(16차), 경협을 통한 공동번영(17, 18차), 개성공단의 활성화(20차) 등을 제의하였다.

장관급 회담을 통해 우리측은 개성공단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 및 관련 법제도 정비에 초점을 두고 이를 강조하였고, 북측은 사업의 조속하고 전면적인 추진을 요구했다.



제20차 장관급 회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재정 통일부장관과 권호웅 북측 수석대표



### 개성공단 관련 장관급회담(2002-2007) 합의문 요지

- 제7차('02.8월) : 경추위 2차 회의를 개최, 개성공단 건설 등의 문제 협의
- 제8차('02.10월) : 개성공단 착공 등 실무문제는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하고, 개성공단이 건설되면 남측의 해당부문 사무소 설치
- 제10차('03.4월) : 남과 북은 개성공단 착공식 등 이미 합의되었거나 예정되어 있는 협력 사업들을 적극 추진
- 제13차('04.2월) :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성공단 1단계 330만㎡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 2004년 상반기 중에 33,058㎡(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를 개발하도록 적극 협력
- 제16차('05.9월) : 개성공단 2단계 개발 등을 통해 민족 공동의 이익과 번영, 민족경제의 통일적·균형적 발전을 촉진시키고 남북경협을 실질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합의
- 제17차('05.12월) : 2단계 개발과 통행·통관·통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추위 개최
- 제18차('06.4월) : 경추위를 개최하여 개성공단건설사업 등을 협의
- 제20차('07.2월) : 개성공단 건설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합의

### 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북장관급회담의 하부 회의체로 설치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이하 ‘경추위’)에서는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된 많은 실무조치들이 협의되었다. 특히 2002년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제2차 경추위부터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협상이 본격화되었다. 제2차 회의에서 제13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남측은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의 개선과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속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빠른 성과를 낼 것을 요구하였다.

제2차 회의에서 남측은 개성공단 개발사업 착공을 위해 2002년 9월 중 양측 사업자간 실무협회가 재개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과 공사 착수 이전에 북측이 개성공단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관련 특별법을 곧 제정·공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7차 회의에서 남측은 2004년도 개성공단 건설공사의 본격 추진을 위한 일정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하위규정의 공포와 통행합의서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였다.

제8차 회의에서 북측은 2004년 상반기 안에 33,058㎡(1만평) 규모의 시범공단 부지를 조성하여 생산에 착수하고, 2004년 안에 1단계 330만㎡ 개발구역에 대한 기반시설 건설도 완료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남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토지임차료, 지장물 철거 보상비 등을 우선 합의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상반기 내에 시범단지 부지조성이 완료되는 대로 기업들이 생산에 착수하도록 하고, 1단계 330만㎡의 내부 기반시설 공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전력·통신 등도 상업적 방식으로 적기에 공급하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9차 회의에서는 개성공단 통신문제가 논의되었다. 초기에 통신서비스 공급문제에 대하여 양측 입장이 크게 달랐으나, 협의 결과 ‘문산-개성 전화국-공단통신센터’를 광케이블로 연결하기로 합의하고 이점이 있는 세부적인 사안들은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에서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11차 회의에서 남측은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 등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사적 보장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제13차 회의에서는 개성공단 건설을 활성화해 나가기 위하여 통행·통관·통신 문제, 북측 노동력의 공급과 숙소 및 편의시설 건설, 2단계 개발 준비사업 등에 대해 별도로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 경제협력추진위원회(2000-2007) 합의문·공동보도문 요지

- 제1차('00.12월) : 개성공단(공업지구) 건설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실무협의
- 제2차('02.8월) : 개성공단 건설이 2002년 내에 착공되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며, 북측은 '개성공업지구법' 을 곧 제정·공포하고, 남측은 개성공단 건설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상업적 차원에서 추진
- 제4차('03.2월) : 개성공단 건설사업에 대해 이미 합의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체적 대책을 세워 계속 협의
- 제5차('03.5월) : 개성공단 건설 착공식을 사업자간에 합의되는데 따라 2003년 6월 하순에 개최하며,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적극 협력
- 제6차('03.8월) : 개성공단 1단계 개발구역에 대한 종합설계가 끝나는 데 따라 기반시설 건설에 착수하고 관련 하위규정도 조속히 제정·공포하며 공단개발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협력
- 제7차('03.11월) : 개성공단 개발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하위 규정의 제정·공포, 1단계 330만㎡ 개발구역에 대한 설계 등을 2003년 내에 끝내고 2004년 초부터 기반시설 건설에 착수하며, 빠른 시일 안에 공단관리기구도 구성·운영
- 제8차('04.3월) : 개성공단 개발을 진척시켜 2004년 상반기 안으로 33,058㎡ 규모의 시범단지에서 부지조성이 완료되는 대로 기업들이 생산에 착수하도록 하고, 1단계 330만㎡ 개발구역에 대한 내부기반 시설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2005년부터는 부지조성공사가 진행되는데 따라 단계적으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협력
- 제9차('04.6월) : 개성공단 1단계 330만㎡ 구역안의 시범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004년 말까지 제품생산에 들어가도록 하며, 2004년 6월까지 개성공단 관리기관을 구성·운영하는데 적극 협력. 전력과 문산-개성(전신전화국)-개성공단 통신센터간 구성되는 광케이블 전송로를 이용한 통신 등을 2004년 9월부터 상업적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1단계 개발공사가 원만하게 진전되는데 따라 다음 구역 개발에 대한 내부 준비를 진행

- 제10차('05.7월) : 개성공단 1단계 330만㎡ 구역에서 기반시설을 조속히 건설하여 전력, 통신, 용수 등을 원만히 보장하며 이미 계획된 15개 시범 공장 건설을 2005년 안에 끝내고 공업지구 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될 수 있도록 통행 절차 개선, 본단지 분양 등에 적극 협력
- 제11차('05.10월) : 개성공단 건설 등이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하루빨리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계속 협의
- 제12차('06.6월) : 개성공단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마련해 나가며, 제2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가지고, 출입증제 실시 등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 근로자의 안정적인 공급,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숙소 및 편의시설 건설 문제 등을 협의
- 제13차('07.4월) : 개성공단 건설을 활성화해 나가기 위하여 통행·통관·통신 문제, 북측 노동력의 공급과 숙소 및 편의시설 건설, 2단계 개발 준비 사업 등에 대해 제3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협의 해결

#### 다.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남북 경제협력 관련 제도적 보장 장치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 기구인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는 2002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제1차 회의에서는 통행합의서 채택문제 등에 대한 상호 입장차이로 인하여 서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상대 입장을 이해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남측은 북측 전 지역에 대한 통행 합의서 체결을 목표로 이를 의제화하였으나, 북측은 당시 상황이 경제 초기단계로 북측 전 지역에 대한 통행 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과 함께 개성공단·금강산 지구에 한정된 통행 협상을 희망하였다.

제2차 회의는 2003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남북경제협력의 현황에 따라 개성·금강산 지구에 적용될 통행 합의서를 채택하자는 북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개성·

금강산관광지구의 통행에 관한 합의서' 를 우선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03년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문산에서 진행된 제3차 회의에서 개성공단·금강산 지구에서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보장 문제에 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2003년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 남북은 이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협의하였다. 남측이 제기한 남측 위법 행위자에 대한 강제송환 원칙 보장 주장과 북측이 주장한 법질서 위반자에 대한 북측법 적용 및 처벌 주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자,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후 신변안전보장문제와 관련하여 북측의 형사재판권 인정 여부에 대한 남북간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제1차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접촉이 2004년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개성에서 열렸다. 남측은 지구 내 법질서 위반자에 대한 활동중지, 경고 및 범칙금 부과,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위반사실 통보 및 강제송환을 주장하고, 조사기간 동안 대상자의 접근권과 변호인 조력권 등 기본적인 권리보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남측은 강제송환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엄중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하는 등 남북간 별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기본적으로 북측의 형사주권에 따라 처리하되 엄중한 주권침해 범죄를 저지른 인원은 남과 북이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협상 결과, 양측은 북측이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한 후 위반내용을 남측에 통보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벌금, 남측 지역 추방 등의 조치를 취하며, 조사기간 동안 대상자의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쌍방이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 되었다.

또한 체류기간 연장승인 기관과 관련하여 북측은 지구출입사업기관이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출입증명서가 비자 형태로 운영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입증명서 발급기관인 지구관리기관이 연장승인

을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남측 의견을 수용하여 당국과 지구관리기관이 이를 담당하는데도 동의하였다. 마침내 양측은 체류, 출입심사, 신변 안전보장 등에 대해서 최종 합의하고 아래 요지와 같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2004.1.29) 요지**

- 개성·금강산 지구에 출입하는 인원은 남측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와 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고 통행차량 등을 이용하여 출입하며, 북측은 해당 증명서를 소지한 인원에게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출입을 보장
- 지구에 8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도착일로부터 48시간 내에 체류등록을 해야 하고, 90일을 초과하는 장기체류나 1년 이상 거주시 별도의 등록절차 필요
- 북측은 남측 인원의 신체·주거·개인 재산의 불가침을 보장하며, 법질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사·통보 후 경고, 범칙금 부과 또는 추방 등 조치를 취하고, 남측은 송환된 인원을 처리한 후 결과를 북측에 통보하며, 피해보상에 협력
- 출입·체류와 관련한 문제는 이 합의서가 우선 적용되고, 남과 북은 관련 문제들의 협의·해결을 위해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

**라.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남과 북은 2002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평양에서 제1차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쌍방 당국의 역할문제 등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공단건설 착공시기, 외부기반시설 건설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남측은 먼저 경쟁력 있는 공단건설을 위한 법적·제도적 여건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북측이 개성공업지구법과 하위규정들을 신속하게 제정·공포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공단 건설과정에서 많은 장비와 자재, 인력이 왕래해야 하는 만큼 당국간 협의를 통해 통신, 통관 및 검역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개성공단 착공에 따른 기본방향을 정할

필요성 등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로 7개항에 이르는 합의를 채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성공단 건설 사업이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양측 당국은 제1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2002년 12월 6일부터 8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하여, 12월 중 개성공단 착공 및 착공식 개최 일자, 경의선 임시통행로 개통, 통신·통관·검역 등 제도적 보장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였다.

남측은 개성공단 조성원가 절감을 위해 북측의 협력을 재차 강조하면서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규정 및 세칙의 신속한 제정·공포를 다시 한 번 촉구하였다. 또한 공단개발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해 통신·통관·검역에 관한 합의를 채택하고, 착공에 필요한 임시통행로 개통 등을 합의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리고 남측은 북핵 문제로 인해 악화된 국내외 여론에도 불구하고 공단개발 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북측에 강조하였다. 이 실무접촉에서 쌍방은 통신·통관·검역에 관한 기본합의서 채택과 착공식 일정, 착공 전 개성-문산 사이의 임시 도로 개통 등에 합의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2002.12.8) 요지

-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는 국가간 교류가 아닌 민족내부간의 교류로 간주,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교환, 내용 비밀 보장
- 북측은 우편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보장하며, 세부절차는 남과 북이 협의하여 확정
- 우편 및 전기통신에 대한 상대방의 관련법 및 국제협약·국제관행을 존중하며,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시 상호 제공

###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2002.12.8) 요지

- 공업지구 개발사업 착공 전까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공업지구를 연결하는 도로 및 철도의 출입통로를 지정
- 통관 업무를 전담하는 세관을 공업지구 내에 설치
- 차량을 지정된 기관(남측: 세관, 북측: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하게 하고 통행차량증명서를 발급
- 반출입시 사전에 공업지구 세관에 신고서류를 제출, 출입관세 및 수수료 면제

###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2002.12.8) 요지

- 검역대상 물자·검역기준 및 검역방법은 공업지구 개발사업 시작 전까지 양측 당국이 협의하여 확정
- 북측은 검역소를 공업지구 내에 설치
- 검역절차를 간소화하여 물자를 신속히 통과시키고,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인원을 파견하여 검역에 협조 가능
- 검역대상물자를 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업지구검역소에 검역대상 물자를 입고시키고 검역 신청

남북 양측은 개성공단 전력·통신 공급문제와 통신·통관·검역 부속합의서 채택 등을 협의하기 위해 2004년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개성에서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개성공단 통신 공급 문제와 관련하여 북측은 남측 사업자가 설비를 제공하고 북측이 운영하여 이익을 배분하는 합작방식을 주장하면서 통신망 연결은 개성 전화국에 전송장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측은 남측의 지정사업자가 상업적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것이 기합의

사항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공단 내 통신망은 남측 사업자가 단독으로 설치·운영하되, 북측 구간(MDL-개성전화국-공단경계)은 남측 설계·기술 지원을 조건으로 북측이 시공·유지·보수를 책임지며 필요시 남측 기술진의 접근을 보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공단과 남측 지역간 통신망은 개성전화국의 전송장비를 경유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북측이 공단 내 통신사업 참여를 주장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통관·검역 부속합의서 채택과 관련하여서도 북측이 기합의된 기본합의서를 현실에 맞게 수정·보충할 것을 주장함에 따라 쌍방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전력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북측이 양질의 전력공급을 위해서 남측 사업자가 직접 설계·시공·운영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수용하고, 건설·유지보수 인원의 출입보장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이밖에 용수공급을 위한 월고저수지-개성공단간 송수관 건설에 필요한 우리측의 자재·장비 제공, 북측의 폐기물처리장 무상제공 등에 합의하였으나, 통신문제와 부속합의서 채택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회담은 종료되었다.

이후 남과 북은 경추위 제12차 회의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06년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에서 제2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개최하였다.

쌍방은 출입증 제도의 실시 등 통행·통관 절차의 간소화,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 근로자 증가에 따른 숙소 및 편의시설 건설, 용수·전력·통신 등 기반시설 건설문제 등을 중심으로 협의하였다. 북측은 남측이 제시한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출입체류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또한 노동력 공급문제는 개성시 인근지역으로부터의 인력조달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위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남측은 출입증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고, 연중 상시통행보장을 위해 양

측 출입사무소(CIQ)를 연중무휴로 운영하며, 근로자 임금 직불제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외국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환전소 설치·운영 및 통근열차 운행과 개성공단 방문 확대, 기반시설 건설 협조 등의 문제도 제기하였다. 북측이 제시한 근로자 숙소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노력·공동해결 원칙’을 제시하는 등 입장을 충분히 교환하였으며,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이후 시범단지 전체 및 본단지 일부 기업이 완전 가동되고, 1단계 잔여 부지 분양, 기반시설 완공 등 개성공단 사업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업의 확대에 따르는 제반 문제점들을 남북이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개성에서 제3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 3. 2007 남북정상회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2007 남북정상회담’은 개성공단 사업이 확대·발전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01년 이후 남북장관급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등 남북 당국간 회담은 물론 개성 현지에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측간의 실무접촉을 통해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양측의 입장차이로 해결할 수 없었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양 정상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 정상은 개성공단 사업 추진사례가 남북공동 번영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개성공단 사업을 내실화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협의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10월 4일에 발표하였다. 동 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주요 내용(2007.10.4)

- ① 6.15 공동선언을 적극 구현
  -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 해결
  - 6.15 공동선언 이행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 강구
- ②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로 확고히 전환
  - 상호 내정 불간섭과 제반 문제를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
  -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통일지향적으로 정비
  - 의회 등 각 분야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
- ③ 군사적 긴장완화 추진
  - 한반도에서의 전쟁에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
  - 공동어로수역 지정과 평화수역 설정,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등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추진
  - 11월 중 평양에서 국방장관 회담 개최
- ④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핵문제 해결 노력
  -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 추진을 위해 협력
  - ‘9.19공동성명’, ‘2.13합의’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공동 노력
- ⑤ 남북 경협 확대·발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 투자 장려, 기반시설 확충, 자원개발, 우대조건과 특혜 우선 부여
  -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 하구 공동 이용 등을 적극 추진
  - 개성공단 1단계 조속 완공 및 2단계 개발 착수, 문산-봉동간 철도 화물수송 시작, 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
  -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의 공동이용
  -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 △농업·보건의료·환경 분야 등 협력
  -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
- ⑥ 역사·언어·교육·과학기술·문화예술·체육 등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발전
  -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및 백두산 관광 실시

- 2008 북경올림픽 남북응원단, 경의선 열차 이용 참가

⑦ 인도주의 협력사업 적극 추진

- 이산가족 상봉 확대 및 영상편지 교환사업 추진, 금강산면회소에 쌍방 대표 상주 및 이산가족 상시 상봉 진행
- 자연재해 등 재난발생시 적극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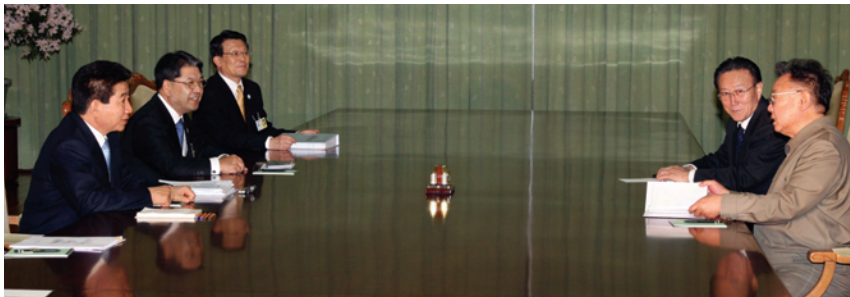
⑧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동포들의 권익을 위한 협력 강화

⑨ 남북정상선언을 위한 총리회담을 11월 중 서울에서 개최

⑩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 정상이 수시로 만나 현안문제 협의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1단계 조속 완공 및 2단계 개발 착수, 문산-봉동간 철도 화물수송 시작, 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 등이 합의되었다. 개성공단 사업에 있어 남북정상회담 합의의 가장 큰 의미는 남북이 개성공단을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의 시금석으로 인식하였다는 점과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장애 요인들을 기업의 입장에서 해소하려는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 있다. 남북 모두 개성공단 발전을 위해 공단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시급함을 인식하고 3통문제의 해결을 합의했다는 점은 남북경협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정부는 이러한 합의를 토대로 후속 조치 등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안심하고 투자 및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17일 2단계 개발을 위한 측량·지질조사에도 착수하였다.



2007 남북정상회담 회담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 노무현 대통령, 개성공단 방문(2007.10.4)

노무현 대통령은 2007 남북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10월 4일 서울로 귀경하는 길에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후 7시 30분 개성공단에 도착해 관리위원회 강당에서 홍보동영상을 시청한 뒤 공단 현황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민족과 조국은 하나다”라는 말이 현실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 개성공단”이라고 평가했다. 통행·통관·통신 등 3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러한 문제를 신속하게 풀기 위해 고위급 회담을 자주 열도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 강당 입구에 전시된 입주기업들의 생산제품을 둘러본 뒤 관리위원회 앞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입주기업인 신원을 방문하여 남북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증가 속도가 눈부시다.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라고 근로자들을 격려한 뒤 “개성공단의 성공이 평화에 대한 믿음과,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 근로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한 뒤 오후 8시 40분 1시간 가량의 개성공단 방문 일정을 마치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으로 귀경했다.



(주)신원 개성공단 현지 공장을 방문하여 북한 근로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내외분 모습



• 인터뷰: 이강연 | 현대아산 부사장  
• 대 담: 전봉근 | 외교안보연구원 연구교수

| 전봉근 | 개성공단 사업 개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 이강연 | 사업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파트너에 대한 이해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경제협력사업은 서로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유무상통의 정신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서로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초창기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했던 과제는 북측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 전봉근 | 북측과의 협력이 필요했던 분야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 이강연 | 개성공단 사업범위의 결정, 개발계획의 수립, 실행 등 모든 과정에서 북측과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개성공단의 지리적 경계 설정 및 개발 마스터 플랜 작성, 북측 근로자 공급을 받아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등에 있어서 북측과의 협력은 필수적이었습니다.

현대아산은 1단계 조성사업을 수행하면서 건설용 쇄석골재, 모래 등 건설자재를 북측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안정적인 골재공급을 위해 인근 지역의 석산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1단계 조성사업 토공사 중 삼봉천 이남지역은 북측의 건설기업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개성공단 개발 과정은 남측과 북측이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통하여 건설공사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좋은 협력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봉근 | 개성공단 사업에서 경험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이강연 | 개성공단 건설 초기 북측 근로자를 공급받아 건설 현장에 투입한 결과, 남측의 건축공법 및 장비를 사용한 경험이 없어서 초기에는 생산성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간 북측 근로자들이 남측 근로자와 공동으로 작업하면서 많은 기능을 습득하였고, 생산성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과 북의 근로자가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서 서로간에 오해가 발생했던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업무적인 대화 이외에도 가족이라든가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대화도 나누는 등 관계가 좋아져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전봉근 |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끼신 보람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강연 | 이제 개성공단 북측 관계자들은 우리 직원들에게 “경협사업을 오래하려면 건강에 조심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합니다. 또한, 건설 작업에 참여하는 북측 근로자들이 전체 공정의 속도나 완성도에 관심을 표하는 등 사업 성과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는 모습을 보여줄 때 남다른 감회가 듭니다. 이것이 바로, 남북이 단순히 동포라는 공감대를 넘어 서로 보다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의식의 발아(發芽)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에 보람을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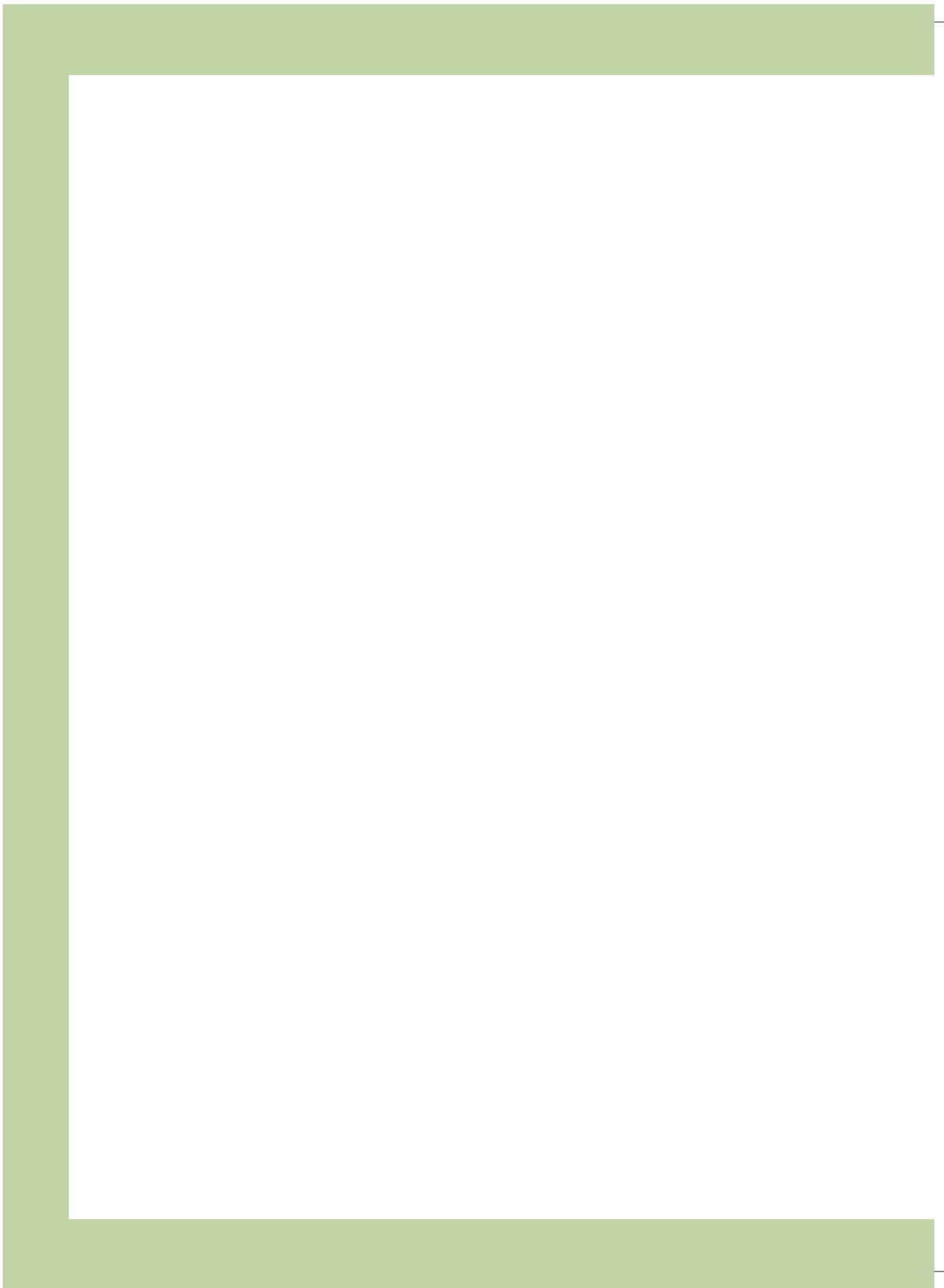


## 제2장 1단계 공단 조성 및 분양

- 제1절 1단계 공단 건설 착공
- 제2절 1단계 분양
- 제3절 1단계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완공



개성공단 착공식





## 제2장 1단계 공단 조성 및 분양

### 제1절 1단계 공단 건설 착공

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의 측량 및 토질조사팀 30여명은 2000년 11월 11일부터 약 한 달간 일정으로 개성 현지에 도착하여 개성공단 개발을 위한 측량과 토질조사 작업을 벌였다. 북측은 측량조사에 필요한 삼각점과 수준점을 제공하는 등 남측의 현장 조사에 협력하였다.

현장조사 결과 1단계 사업은 판문읍 봉동리 일원에 조성기로 하였다. 이 지역은 휴전선에서 불과 4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개성공단 전체 후보지 가운데 경의선 철도·도로와 연계성이 좋아 물자 수송이 용이하고 완만한 구릉지로 되어 있어 공장 건축에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개성공단 사업은 당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어 사업 추진이 한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다가 2002년 이후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 1. 1단계 착공 준비

2001년 3월에 수립된 개성공단 ‘건설기본계획’은 개성공업지구 총개발

계획 및 철도, 도로, 구릉지 등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공단이 자족성과 경제성을 갖출 수 있는 규모로 사업범위를 정하였다. 또한 공단 내 삼봉천은 지천까지 포함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보존하고 주변에 중앙공원과 녹지 등을 계획하여 수변공간을 제공하고 남북연결도로와 접속되는 단지 진입부와 중앙에 지원시설 용지를 배치하여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였다.

유치업종으로는 남북경제교류에 적합한 노동집약적 경공업인 섬유·봉제·의복, 피혁, 신발 및 전기·전자부품을 주업종으로 선정하고 입주예상 업체를 약 250개 내외로 추정하였다.

개성공단의 도로·철도망은 동측 경계에 접하여 경의선 철도가 남북으로 통과하게 배치하고, 남동측 경계까지 남북연결도로가 접속되도록 하였다. 북측으로 개성시와 연결되도록 도로체계를 구축하고, 지구 내는 격자형 가로체계를 유지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북측 근로차의 통행을 위하여 동-서, 남-북의 주요 도로에는 자전거 도로의 설치도 계획하였다.

2003년 2월 21일 분단 후 최초로 정부 관계자, 현대아산 및 토지공사 관계자들로 구성된 육로답사팀이 판문점을 통하지 않고 남북연결 도로를



개성공단 후보지 답사를 위해 남방한계선을 통과하고 있는 육로답사팀

통해 DMZ를 넘어 개성공단 후보지 답사에 나섰다. 답사에서는 1단계 경계  
확정을 위한 현지조사 및 도로, 철도 연결노선과 공단 기반시설 등에 대한  
조사 및 협의가 이루어졌다.

## 2. 1단계 공단 건설 착공

토지공사, 현대아산과 북측간의 개발업자 지정 합의서가 2002년 12월  
4일 체결되었다. 이후 2003년 6월 30일 정세현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남  
측 관계자 119명과 북측의 박창련 지도총국장 등 북측 관계자 200명이 참  
석한 가운데 개성공단 착공식이 거행되었다.

착공식 이후 개성공단 설계를 위한 지형측량과 토질조사, 경의선 철도노선  
계획변경이 이뤄졌으며, 이 시기에 북측은 공단 내에 자리잡고 있던 군사시설들  
을 신속하게 후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사를 확인시켜 주었다.

개성공단 330만㎡에 대한 토지임차료 협상은 2003년 11월에 시작되  
었고 2004년 4월 13일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남측의 토지공사 사장과



착공식(2003.6.30)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발파를 위해 모여있는 모습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이 각각 서명한 개성공단 토지임차료 계약이 체결되었다.

## 제2절 1단계 분양

### 1. 시범단지

2004년 4월 북측과 토지임차료 협상 타결 이후 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은 통일부로부터 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북측에 개발계획을 제출하였다. 이어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함에 따라 시범단지에 대한 분양이 시작되었다.

입주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시범단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기반시설 사용 및 배출량이 적고, 노동집약성이 높으며, 재무상태가 양호한 업체를 유치한다는 심사기준도 마련하였다.

시범단지는 개성공단 투자환경의 사전 검증과 개성공단의 조기 활성화



시범단지 입주예정기업 대상 설명회에 참석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입주기업 관계자들(2004. 6. 14)

를 위해 1단계 준공 이전에 우선적으로 추진된 시범사업(Pilot Project)이었다. 시범단지에는 봉제, 신발, 전자부품 등 4개 업종에 15개 필지를 분양하였다. 2004년 6월 14일 시범단지 9만 3천㎡ 부지를 대상으로 15개 기업에 분양 계약이 체결되었고, 협력업체 동반 입주 등으로 현재 26개 기업이 가동 중에 있다.

### 분양 심사항목·기준

심사항목	배점	심사기준	입증서류, 소명자료
산업폐수 배출량	15	- "산업폐수배출량/일/3,300㎡" 기준 (배출량이 없거나 적은 업체 유치)	입주신청서,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신고필증 사본
산업폐기물 배출량	15	- "산업폐기물배출량/일/3,300㎡" 기준 (배출량이 없거나 적은 업체 유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증
개성공단 투자비중	8	- "개성공단투자비/총자산" 기준 (낮은 업체 위주 유치) * 개성공단투자비 : 토지비, 건축비, 시설비	재무제표
동종업계 영업활동기간	12	- 업력이 오래된 기업의 경우 높은 점수 부여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고용 근로자수	25	- "고용근로자/3,300㎡" 기준 (높은 업체 위주 유치)	고용보험확인서
신용등급	25	- 신용등급 높은 업체 위주 유치	주거래은행 신용 등급확인서
(가점)	(2)	- 대북사업 유경험업체, 유공업체 등 우대	대북사업 실적증명서, 훈·포장 수상서 사본
합계	100		

### 시범단지 개요

- 조성면적 : 9만 3천㎡(2.8만평)
- 조성기간 : 2003년 6월 30일 - 2004년 6월 30일
- 추진경위
  - 2004년 5월 18일 : 시범단지 분양공고
  - 2004년 6월 5일 : 시범단지 입주업체 선정
  - 2004년 6월 14일 : 시범단지 입주업체 계약체결 및 설명회 개최
  - 2004년 6월 30일 : 시범단지 부지 조성 공사 완료
  - 2004년 12월 15일 : 시범단지 입주업체 최초 공장 준공 생산(리빙아트)
  - 2005년 3월 16일 : 시범단지 최초 전력 공급(남→북 1.5만 kW)
  - 2005년 12월 28일 : 직통전화 300회선 개통
- 입주업체 : 26개 업체
- 입주업종 : 봉제, 신발, 전자부품, 기계금속 등

이들 기업들은 모두 4차례에 걸쳐 정부로부터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다. 같은 해 9월 10일 (주)리빙아트(현 소노코쿠진웨어)의 공장 건설공사가 시작되었고, 2004년 12월 15일 개성공단 첫 제품 생산 기념식과 출하식을 열었다. 이어 (주)에스제이테크도 12월 28일 공장 준공식을 갖고 생산을 시작하였다.



개성공단 현지에서 열린 (주)신원 패션쇼(2005.5.26)



2005년 4월 30일 (주)리빙아트는 개성공단 제품을 처음으로 해외로 수출하였다. (주)로만손은 협동화 공장으로는 처음으로 8월 11일 준공식을 거행하였으며, 본격 생산 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5년 5월 26일에 의류제조업체인 (주)신원이 남측 유명 모델들이 참석한 패션쇼를 개성공장 현지에서 열어 주목을 끌기도 했다.

## 2. 본단지 1차

2004년 12월 시범단지 첫 제품 생산 등 시범단지 입주기업들의 건축·가동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입주 희망 기업들의 관심이 고조되자 본단지 분양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개성공단 본단지 분양을 위하여 통일부는 2005년 1월 관계부처 협의 및 분양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기준과 방법 등 분양계획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개성공단 입주수요가 가장 많은 섬유·봉제·의복 및 가죽·가방·신발 업종에 1차로 16만 9천㎡ 규모를 우선 분양하기로 하였다.

개성공단 본단지 1차 분양에 앞서 개성공단 입주희망업체에게 개성공단과 관련한 전반적인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서울 삼성동 COEX에서의 첫 개성공단 투자설명회(2005.8.5)를 시작으로 부산(2005.8.9), 대구(2005.8.10) 등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입주희망업체 관계자들(2005.8.5)



개성공단 현지에서 열린 투자설명회(2005.9.15)

분양 용지를 일반공장용지(13만㎡), 협동화단지(2만 6천㎡), 아파트형 공장용지(1만 3천㎡)로 구분하여 2005년 8월 분양신청을 받은 결과 93개 업체가 신청하였다. 신청 업체 중 일반공장용지에 17개 기업, 협동화단지에 6개 기업, 아파트형 공장용지에 한국산업단지공단 1개 기관 등 총 24개 기업 및 기관이 선정되어 2005년 9월 21일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다. 분양가는 시범단지와 동일하게 ㎡당 4만 5천원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 3. 본단지 2차

본단지 1차 분양에 이어 2006년 2차 분양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양 착수를 하지 못한 채 한 해를 넘기게 되었다.

2007년 2월에 『2·13 합의』로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열리자 그동안 지연되었던 본단지 2차 분양이 4월 말 공고되었다. 우선 분양 착수 지연으로 위



축된 투자분위기 쇄신을 위해 입주희망기업을 대상으로 2007년 3월 7일부터 5월 29일까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등 6대 광역도시는 물론 인천 남동공단, 안산 시화공단 등 주요 공단지역까지 12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열었다. 특히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소속 외국 기업인 대상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하였다.

본단지 2차 분양은 기반시설 준공 시기가 2007년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 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잔여물량 전부(175만㎡)를 공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입주자 선정방식은 추첨과 심사방식을 병행하였으며,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용도별로는 일반공장용지 외에 중견기업 및 대기업 유치를 위한 선도기업 유치용지, 중소기업의 협력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협동화단지, 영세기업에 유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개성공단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를 위한 외국기업 유치용지 등 다섯 종류로 구분하여 신청을 받았다. 업종별로는 섬유·봉제·의복, 가죽·가방·신발, 화학·고무·플라스틱,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타 제조업 등 6개군으로 분류하여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고자 하였다.

1단계 2차 분양은 공급물량 규모의 대폭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2.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함으로써 개성공단 사업이 남북경협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7년 10월말 현재 1단계 전체 공급대상 249만 9천㎡중 206만 1천㎡가 공급됨으로써 82%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2차 분양에서 183개 업체가 입주기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섬유·봉제·의복이 53개 업체로 가장 많고 기계·금속이 30개 업체로 뒤를 이었다. 가죽·가방·신발 15개 업체, 화학·고무·플라스틱 15개 업체, 기타 제조 42개 업체, 전기·전자 17개 업체, 복합 업종이 11개 업체로 나타났다. 외국기업유치용지의 경우, 6필지 중 3필지(중국계2, 독일계1)가 이미 매각되었다.



대구 섬유업계 관계자 대상 개성공단 진출 설명회 및 입주기업 성공사례 발표(2007.3.9)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소속 외국 기업인들 대상으로 실시된 분양설명회 (2007.5.29)



개성공단 1단계 2차 분양시 선정된 입주예정업체 관계자들의 개성공단 현장 방문(2007.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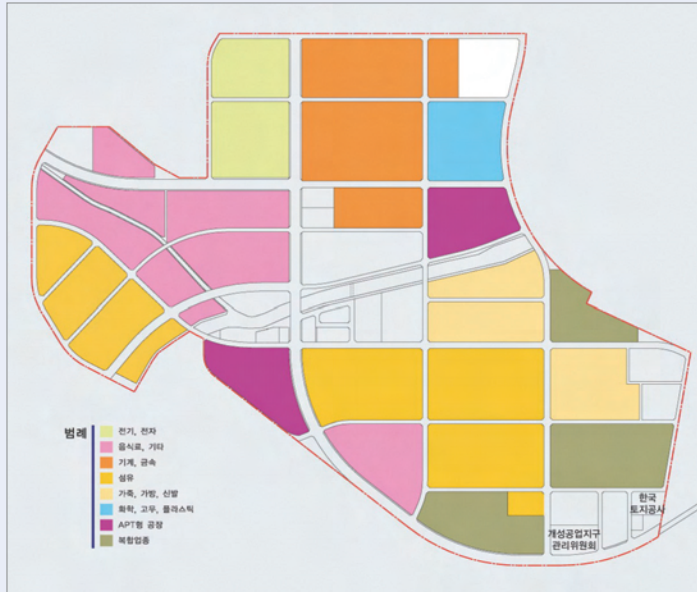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도(1단계 부지)



### 토지이용계획표(1단계 부지)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m <sup>2</sup>			
계	3,306,175	100.0		
생산시설용지	2,192,078	66.3		
복 합 용 지	33,454	1.0	주거용지, 일부 의료, 체육, 문화 등	
지원시설용지	196,213	5.9		
	상업·업무	53,528	1.6	
	공공지원시설	99,707	3.0	종합지원센터, 경험사무소 등
	의료시설	9,917	0.3	
	통신시설	9,917	0.3	
	기술교육센터	23,144	0.7	기술·기능양성소 등
공공시설용지	884,430	26.8	도로, 공원 등	

### 업종배치도(1단계 부지)



### 업종배치표(1단계 부지)

구분	면적	
	m <sup>2</sup>	%
섬유·봉제	558	25,5
가죽·가방·신발	214	9,8
화학·고무·플라스틱	91	4,1
기계·금속	338	15,4
전기·전자	159	7,2
기타제조업	416	19,0
복합업종(+APT형 공장)	416	19,0
합 계	2,192	100,0

### 제3절 1단계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완공

개성공단 1단계 부지 조성 공사는 2004년 4월 정부의 협력사업승인을 받은 이후 시작되어 2006년 6월에 완공되었다. 도로, 상하수도 등 단지 내 시설공사는 2004년 8월부터 시작해 토공사와 병행하여 진행되었고 2007년 6월에 준공되었다. 교량 등 특수시설물은 2005년 10월, 조경시설은 2005년 12월에 착공하여 2007년 10월까지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다.

이외에도 용수, 환경기초시설, 전력·통신 등 개성공단 1단계의 주요 기반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2007년 10월 16일에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재현 한국 토지공사 사장을 비롯한 남측 관계자 225명과 주동찬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 등 북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최초의 대규모 남북경협사업인 개성공단 1단계의 성공적 완수를 알리는 준공식이 거행되었다. 준공식에서는 개성공단 1단계 준공에 기여한 유공자 46인에 대한 포상도 있었다.



개성공단 1단계 준공식에 참석한 이재정 통일부장관, 주동찬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 등 남북 관계자들의 모습



## 1. 부지 조성

개성공단 1단계 330만㎡에 대한 부지조성공사는 공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조기 착공(fast-track)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2004년 4월 23일 토공사가 착공되었다. 개성공단 부지는 한국전쟁 당시의 치열한 교전지역이자 전쟁 이후에도 군사적 요충지로서 각종 군사시설들이 밀집된 지역이었다. 따라서, 공사시행중 지하군사시설 및 각종 폭발물이 발견되어 이를 처리하기 위해 복측과 폭발물 탐지 및 처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 공사와는 다른 조건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전체 토공량 약 770만㎡, 암석 발파량만도 약 173만㎡에 이르는 대규모 토공사를 약 2년여의 공사기간에 사고없이 무사히 마치고 2006년 6월 29일 부지조성을 완료하였다.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 근로자의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 조경공사는 2005년 12월 28일에 착공되었다. 개성의 지리적 역사성을 고려하여 전통정원 양식으로 만든 민족공원을 비롯하여 통일체육공원, 삼봉공원, 평화기념광장 등의 다양한 공원시설을 조성하였다. 공단을 가로질러 흐르는 하천과 도로변을 따라 완충녹지를 조성하고 약 20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함으로써 공단 내 근로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남북의 근로자가 함께 휴식하고 어울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였다.



개성공단 내 민족공원에 위치한 세심지(연못)와 동심정(정자)의 모습

가로등은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비상하는 모습을 역동적인 조형으로 표현하였다. 한민족의 진취적 기상과 개성공단의 발전을 형상화한 가로등 총 1,184주의 조명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로조명을 제공하고 단지 내 미관도 살렸다. 또한 첨단 무선 원격제어 시스템을 적용하여 중앙통제소에서 상황에 따라 점등 및 소등이 가능한 효율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부지 조성을 위하여 포크레인과 불도저를 이용, 토사를 절취하고 있는 모습



토사제거후 드러난 암석에 화약을 장착, 발파를 시행하는 모습

## 2. 교량

개성공단의 중심 도로이자 서울과 평양을 잇는 남북연결도로는 개성공단을 통과하여 만남의 다리를 건너게 된다. 이러한 만남의 다리를 포함한 개성공단 내 총 8개의 교량을 건설하고 지구 내 하천을 환경친화적인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특수시설물 공사가 진행되었다. 각 교량에 국내에서도 보기 드문 경관 설계 기법과 각종 최신 신기술·신공법을 도입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아름다운 교량이 건설되었으며, 북측에 남측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개성공단을 가로지르는 하천(삼봉천)은 공단 근로자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고, 징검다리과 여울 등을 설치하였다.



개성공단의 대표적 교량인 삼봉 3교(만남의 다리)는 4개의 기둥이 하나의 구를 받드는 모습으로서 남북화합을 상징

### 개성공단내 교량 현황

구분	폭(m)	연장(m)	기초형식
삼봉 1교	25.8	51	강관말뚝
삼봉 2교	20.8	41	강관말뚝
삼봉 3교	49.0	46	강관말뚝
삼봉 4교	20.8	49	직접/강관
공단 1교	34.8	17	강관말뚝
공단 2교	15.8	15	직접기초
공단 3교	20.8	14	직접기초
보도교	8.8	14	강관말뚝



### 3. 용수시설

정·배수장은 2007년 10월이 되어야 완공되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그 이전에 입주한 시범단지 및 본단지 1차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지하수를 개발하여 용수를 공급하여야 했다.

시범단지에 대해서는 1일 600톤 공급 규모의 용수시설 즉, 지하관정 5개소 및 급수탑 2개소를 2005년 4월에 설치하여 2005년 5월부터 용수를 공급하였다. 본단지 1차 입주기업 용수 공급을 위하여 1일 1,000톤 공급 규모의 용수시설 즉 집수정, 정수설비, 가압펌프 등을 설치하여 2006년 10월부터 입주기업에 용수를 공급하였다.

개성공단 개발에 따른 용수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측 지역에 댐을 건설하는 방안과 임진강 물을 끌어오는 방안 등이 검토되었으나, 막대한 사업비와 소요기간 등으로 추진이 어려웠다.



상수원인 월고저수지 내 제방에 방수탑(물을 방류하는 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모습



월고저수지에서 개성공단 정·배수장까지 원수를 공급하는 상수관로를 매설하고 있는 모습



월고저수지로 부터 원수를 공급받아 정수한 뒤, 개성공단과 개성시로 공급하고 있는 개성공단 정·배수장의 시공 중 모습

이에 사업비를 줄이고 사업의 조기실행이 가능하도록 월고저수지를 확대 건설하는 방향으로 북측과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2005년 3월 24일 체결된 ‘개성공업지구(1단계) 용수시설 건설 합의서’에 따라 남측이 공사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북측에 지원하고, 북측은 월고저수지 제방 축조, 물길 굴(도수터널), 도수관로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을 맡아 1단계 공단 입주기업을 위한 용수공급시설을 건설하였다.

개성공단 정·배수장은 2005년 12월 19일에 토공사가 시작되었고, 2007년 10월에 완공, 정상 가동되어 입주기업에 양질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정·배수장은 개성공단 기점 북쪽으로 약 17.8km 지점에 위치한 월고저수지로부터 원수를 취수하여 1일 6만톤의 용수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개성공단에 일일 약 4만 5천톤의 맑은 물을 공급하고 또한 개성시에 일일 1만 5천톤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다.

#### 4. 환경기초시설

##### 가. 폐수처리시설

시범단지 및 본단지 1차 입주기업에 대해서 임시 오폐수처리시설(용량: 600톤/일, 100톤/일 각 1개소)을 설치하여 2005년 5월부터 입주기업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해 왔다.

그리고 1단계 전체에서 발생하는 1일 3만톤의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2005년 4월부터 26,446㎡(8천평) 부지에 오폐수처리시설 건설 공사를 시작했다. 폐수종말처리장에는 남측의 환경기준 이상을 만족시킬 수 있는 첨단 처리공법이 적용되었다. 이 시설은 2007년 7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환경관리공단이 운영을 하고, 관리위원회는 관리를 맡게 된다. 폐수처리를 위한 2단계 1만 5천톤 처리시설은 입주예정기업의 입주 추이를 지켜보면서 2009년 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 나. 폐기물처리시설

시범단지 및 본단지 1차 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는 본 폐기물처리시설이 완비되는 2008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북측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본 폐기물처리시설은 개성공단 내 5만㎡ 부지에 매립용량 20.4만㎥, 소각용량 1일 62톤의 시설(12톤 1기, 50톤 1기)을 설치하여 330만㎡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계획이다.



개성공단 내 폐수종말처리장의 수처리 구조물 전경

1단계로 6.1만㎡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시설은 2005년 12월에 착공되어 2007년 6월에 완공되었다. 1일 12톤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도 2007년 8월에 착공되어 2008년 4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다. 또한 나머지 매립시설과 소각시설도 입주 추이에 따라 건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의 적정 처리·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개성공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중 1단계로 설치된 폐기물매립시설 조성 완료 모습

## 5. 전력

### 가. 시범단지 전력공급

2004년 12월 남북간 체결된 ‘개성공업지구 전력공급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측 문산변전소에서 개성공단까지 약 200개의 전주를 이용하는 배전시설(1만 5천kW) 공사를 2005년 1월 착수하여 2005년 3월 16일부터 시범단지에 전력을 공급하였다.

시범단지에 대한 전력공급은 1948년 5월 14일 전기요금 미납 등을 이유로 북측이 일방적으로 단전 조치한 뒤 57년만에 끊어진 전기가 다시 남측에서 북측으로 전력이 공급되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 나. 1단계 본단지 전력공급

2004년 5월 한국전력이 개성공단 전기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시범단지는 배전선로 방식, 본단지는 송전방식으로 전력을 공급한다는 방침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1단계 시범단지를 포함한 본단지 전체에 대한 전력공

## 독수리 월동지 이전

문산에서 개성으로 연결하는 송전노선이 파주시 장산반도 민통선에 위치한 독수리 월동지 인접지역을 지남에 따라 독수리의 안전과 스트레스를 우려하여 파주시 환경단체와 한국조류보호협회 등에서는 2005년 4월 송전선로 경과지의 재조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2005년 5월 통일부는 파주시 및 한국조류보호협회 파주시 지부와 의 합동현장조사를 거쳐 군과 협의하여 월동지를 문산을 장단면 거곡리에서 문산을 마정리 1398번지와 5필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해당지역은 독수리 월동지로서 부적절하다는 문화재청의 의견이 있어 현재의 월동지에서 250m 떨어진 곳에 별도로 먹이주는 곳을 조성함으로써 독수리 월동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현재 문화재청은 장단면 거곡리 63번지 일대 51,600㎡를 독수리가 안전하게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지역은 매년 11월초부터 다음해 3월초까지 러시아, 몽골에서 독수리가 날아와 월동하는 갈대밭과 논으로 문화재 지정구역 지정을 통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독수리가 먹이부족으로 탈진하거나 죽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독수리 월동지

급을 위하여 10만kW 용량의 송변전시설(평화변전소) 공사가 추진되었다. 2005년 4월 송전 경과지 노선을 확정하고 2006년 1월 16일 정부의 사업 승인을 받아 2006년 4월부터 공사에 착공하였고 2007년 5월 26일 드디어 송전방식으로의 전력공급을 시작하였다. 송전선 건설과정에서 비무장 지대에 대한 지뢰제거와 같은 어려운 문제도 양측 군부의 협조를 얻어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독수리 월동지 대책도 관계기관과의 협조하에 원만히 추진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협조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2007년 6월 21일 남북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변전소 준공식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송전방식의 전력공급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양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송전방식에 의한 전력공급은 문산변전소에서 개성공단 1단계 내 평화변전소까지 16km 구간에 송전철탑 48기(남측 : 33기, 북측 : 15기)를 설치하여 154kV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는 10만kW 까지 전력공급이 가능하나 변전소에 변압기를 추가하면 20만kW까지 전력공급이 가능하다. 1단계 또한 부지내 배전선로 구축도 완료하여 입주기

### 평화변전소 개요

- 형태 : 옥외 가스절연개폐장치 형태
- 공사기간 : 2004년 7월~2007년 6월 (준공행사 : 2007년 6월 21일)
- 전력공급 가능용량 : 10만kW
- \* 변압기 추가시 20만kW 공급 가능



평화변전소 준공식에 참석한 국회·정부 등 관계자들의 모습



입주기업에게 양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평화변전소 전경



업은 언제라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6. 통신

### 가. 광케이블 연결

2004년 12월 KT와 북측의 조선통신회사간에 체결된 ‘개성공업지구 통신공급에 관한 합의서’ 및 2005년 3월 ‘통신공급 부속합의서’에 따라 남북간에 통신망을 직접 연결하는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통신사업자인 KT는 2005년 7월 18일 남북간 민간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광케이블을 연결하였다.

### 나. 직통전화 개통

KT는 2005년 11월 17일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른 통신장비 반출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획득하여 개성공단 내 KT 통신실에 교환·전송 장비, 개성전화국에 전송장비를 설치하고 2005년 12월 28일 303회선을 개통하였다. 이후 기존 회선용량 부족에 따라 2007년 7월에 350회선을 추가 설치하여 2007년말 현재 653회선의 전화·FAX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직통전화의 개통으로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우리 기업은 양질의 통신 서비스 뿐 아니라 기존의 분당 2달러 30센트보다 82.6%가 인하된 분당 40센트(약 400원)의 싼 비용으로 국내 본사와 직접 통화할 수 있게 되었다. 본단지(1단계)에 대한 통신공급을 위해 2008년까지 통신센터(9,917.4㎡, 3,000평)를 건립하여, 인터넷·이동전화 개통을 포함해 1만회선 규모의 통신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성공단 통신 개통은 제3국을 경유하는 기존방식과 달리 광복 60년 만에 최초로 남북간을 직접 연결하는 상용 통신망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업중인 북한 근로자

---

## 제3장 입주기업 및 근로자 현황

---

제1절 생산 활동

제2절 근로자 현황



## 제3장 입주기업 및 근로자 현황

---

### 제1절 생산 활동

#### 1. 유치 업종 및 투자규모

##### 가. 유치 업종

2007년 10월말 기준으로 공장을 가동중인 기업은 모두 52개사이며, 이중 가죽·가방·신발을 포함한 섬유업종이 28개사에 이른다. 시범단지와 본단지 1차 분양대는 입주 수요가 크고 전략물자 및 원산지문제가 적은 업종을 중점적으로 유치해 섬유·봉제·의류, 가죽·가방·신발 등 섬유관련 업체가 가장 많다. 다음으로 기계·금속 17개사, 전기·전자 5개사, 화학업종 2개사가 입주해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산 업종 분류(2007년 10월말 현재)

업종 구분	계	섬유(섬유·봉제·의류, 가죽·가방·신발)	화학	기계·금속	전기·전자
계	52	28	2	17	5
시 범 단 지	26	(주)삼덕스타필드 (주)신원에벤에셀 문창기업(주)개성	(주)태성하타 (주)지에스	(주)로만손 개성공장 (주)로잔 개성공장 (주)현진 개성공장 (주)엔·아트 동일정공(주) 대선테크(주) (주)픽시스 (주)에버존 이라모드시계(주)개성공장 (주)개성대화 소노코쿠진웨어(주) 개성신영(주) (주)조민 P&P (주)대건실업 (주)호산에이스 (주)티에스피	개성부천공업(주) 솔루텍지이스(주) (주)제씨콤 개성 공장 (주)개성마이크로 (주)용인이엔티
본단지 1 차	10	성화개성(주) (주)좋은사람들 개성공장 (주)진글라이더 개성코튼클럽(주) (주)평안 개성공장 (주)개성제일상품 (주)명화제화 (주)만선개성 (주)개성아트랑		케이엠에프개성	
본단지 1차 (아파트형 공장)	16	(주)에버그린 (주)개성스킨넷 개성팀스포츠 (주)나인모드 가드뱅크 (주)엘고개성 (주)아이에스레포츠 (주)개성자수 제이패션 (주)아진개성 (주)개성쉬크베베 (주)진성산업 (주)드림에프개성 (주)동우 (주)개성창대어패럴 개성신한물산(주)			

## 1) 시범단지

시범단지는 우리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조기 입주 수요를 충족시키고 본 공단 가동시의 법·제도, 투자환경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시범사업(Pilot Project) 성격을 갖고 있다.

시범단지는 1단계 330만㎡ 부지 안에 9만 3천㎡를 15개 필지로 나누어 분양했고 섬유 3개사, 화학 2개사, 기계·금속 16개사, 전기·전자 5개사 등 4개 업종에 걸쳐 모두 26개 기업이 입주하게 되었다.

먼저 이들 공장을 가동시켜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개발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시범단지는 2004년 5월 18일에 분양을 공고한 뒤 2004년 12월부터 기업들이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 12월 15일에 개성공단 첫 제품을 생산하였으며, 지금은 26개 기업이 모두 가동 중에 있다.

시범단지 입주기업 주요 생산품

회사명	주요 생산제품	회사명	주요 생산제품
(주)로만손	손목시계	소노코쿠진웨어(주)	주방기구
(주)로잔	손목시계	개성신영(주)	주방기구
(주)현진	시계부품	(주)조민 P&P	쇼핑백, 포장재
(주)엔·아트	큐빅세팅	(주)대건실업	주방기구부품
동일정공(주)	시계유리	(주)개성대화	자동차 연료펌프
대선테크(주)	시계밴드	(주)지에스	반도체부품용기
(주)픽시스	시계케이스	문창기업(주)	의류
(주)에버존	시계케이스	(주)호산에이스	공조기 부품
아라모드시계(주)	손목시계	솔루텍지에스(주)	자동차 부품·금형
(주)삼덕스타필드	신발	(주)티에스피	반도체 부품·금형
(주)태성하타	화장품 용기	(주)제씨콤	광통신 부품
(주)신원에벤에셀	의류	(주)매직마이크로	LCD 모니터
개성부천공업(주)	전기배선부품	(주)용인이엔티	트랜스포머





개성공단 시범단지 전경

개성공단 생산제품



신원 의류



대화연료펌프 자동차연료펌프



부전공업 Wire Harness



태성산업 화장품용기



로만손 손목시계



재영슬루텍 자동차 전자부품 경영



삼덕봉상 신발



소노코 쿠진웨어 주방기기

## 2) 본단지 1차 입주

1단계 본단지 1차 분양은 2006년 8월 1일에 분양 공고하여 입주 수요가 크고 전략물자 및 원산지문제가 적은 섬유·봉제·의류, 가죽·가방·신발 관련 업종을 유치하였다. 모두 16만 9천㎡의 공장부지를 일반공장(17개), 협동화단지(6개), 아파트형공장(1개) 등 모두 23개 업체 및 1개 기관에 분양하였다.

2007년 11월 기준으로 코튼클럽 등 38개 기업(아파트형 공장 포함)이 입주하여 정상 가동 중이며, 나머지 기업들은 공장을 건축하고 있다.

### 본단지 1차 분양 현황

구분	업종	회사명
일반 공장용지	섬유·봉제·의류	성화물산, 서도산업, 좋은사람들, 엠에스, 진글라이더, 코튼클럽, 평안, 제일상품, 녹색섬유, 에스엔지(10개)
	가죽·가방·신발	아트랑, 밀리온스, 평화유통(3개)
협동화 사업단지	섬유·봉제·의류	만선, 한국마이크로월터, 화인레나운(3개)
	가죽·가방·신발	삼덕통상, 영일신소재, 영화상사(3개)
아파트형 공장용지	섬유·봉제·의류 가죽·가방·신발	에버그린, 투라인, 에스엠베딩, 와이에스코리아, 나인모드, 서우, 팀스포츠, 금담, 일성레포츠, 드림에프, 에스엔티스포츠, 신한모드, 창대어패럴, 동우어패럴, 제이패션, 스킨넷, 광일실업, 성림 상사, 옹피케이스, 아진통상, 쉬크베베, 신즈디자인하우스, 협동섬유, 한중실크유통, 현진실업, 뷔에세, 진성산업, 신한물산, 새서울자수, 동화, 한국 마이크로(31개)

※ 분양업체중 계약을 포기한 4개 업체(섬유·봉제·의류 3개, 가죽·가방·신발 1개) 제외

## 나. 투자규모

### 1) 평균투자액

#### 입주기업 투자액

(단위: 억원)

업종	섬유	화학	기계·금속	전기·전자	계
업체수	12개사	2개사	17개사	5개사	36개사
총투자금액	963	324	332	270	1,889
업체평균투자액	80	162	20	54	52

- 주 : 1. 투자금액은 2007년 10월말 기준이며 아파트형 공장은 제외  
 2. 투자액 = 토지+건물+기계설비  
 3. 평균 투자액 = 투자금액/업체수  
 4. 업체수 : 토지를 분양받은 36개사 기준(52개 가동기업 중 아파트형 공장 16개사 제외)

2007년 10월 현재 가동중인 개성공단 입주업체 중 아파트형 공장 입주 기업을 제외한 36개사의 총투자액은 1,889억원으로 지금까지 업체당 평균 52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화학업종이 업체당 평균 162억원을 투자하여 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섬유가 80억, 전기·전자 54억, 기계·금속 20억원 순이었다.



입주기업협의회 대표자 정례회의(2007.10.25)에 참석한 입주기업 대표 및 관계자들의 모습

## 아파트형 공장 입주기업 투자액

(단위: 억원)

업체수	총투자금액	업체평균투자액
16개사	35.2	2.2

2007년 10월말 현재 가동중인 개성공단 아파트형 공장 16개사의 총투자액은 35억 2천만원으로 업체당 평균 2억 2천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소규모 섬유봉제 업체들이 임대입주하였고 공장건축비가 들지 않아 공장부지를 분양받은 업체들보다 상대적으로 투자금액이 적었다.

### 2) 투자비중

#### 입주기업 투자비중

(단위: 억원)

	토지	건물	기계	합계
총투자금액 (투자 비중)	73 (3.9%)	1,025 (54.3%)	791 (41.8%)	1,889 (100%)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총투자액 중 건물(공장건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54.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계 41.8%, 토지 3.9%의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생산 및 수출 현황

### 가. 개요

2007년 10월말 기준으로 생산누계액은 모두 2억 3,475만달러였다. 연도별 생산액은 2005년 1,491만달러, 2006년 7,374만달러, 2007년 10월말 현재 생산액은 1억 4,611만달러로 2006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월별 평균생산액은 2005년 124만달러, 2006년 614만달러, 2007년 1,461만달러로 2005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수출은 2007년 10월말 기준으로 누계액이 5,233만달러로 생산액의 22.3%를 차지하고 있다.

#### 연도별 생산 실적

(단위: 천달러)

구분	2005	2006	2007.10 현재	총계
생산액	14,906	73,737	146,116	234,759
월평균	1,242	6,144	14,611	—

#### 연도별 수출 실적

(단위: 천달러)

구분	2005	2006	2007.10 현재	총계
수출액	866	19,825	31,634	52,325
월평균	72	1,652	3,163	—

#### 분기별 생산·수출실적

(단위: 천달러)

구분	생산	수출
2005년 1/4분기	505	—
2005년 2/4분기	1,214	107
2005년 3/4분기	4,019	353
2005년 4/4분기	9,168	406
<b>2005년 합계</b>	<b>14,906</b>	<b>866</b>
2006년 1/4분기	12,397	2,280
2006년 2/4분기	15,001	3,775
2006년 3/4분기	19,947	6,642
2006년 4/4분기	26,392	7,128
<b>2006년 합계</b>	<b>73,737</b>	<b>19,825</b>
2007년 1/4분기	35,598	8,380
2007년 2/4분기	41,906	9,813
2007년 3/4분기	47,707	9,207
2007년 10월	20,905	4,234
<b>2007년 합계(10월말 현재)</b>	<b>146,116</b>	<b>31,634</b>
<b>총계</b>	<b>234,759</b>	<b>52,325</b>

## 나. 생산 현황

시범단지에 입주한 리빙아트(현 소노코쿠진웨어)가 2004년 12월 15일 주방용품인 냄비를 생산해 첫 선을 보였다. 국내 공단의 경우 조성단계에서 입주기업의 공장 설립, 가동에 이르는 기간이 적어도 3년 넘게 걸린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2004년 6월 공장 설립을 위한 첫 삽을 뜬 지 불과 6개월 만에 첫 생산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였다.

첫 선을 보인 ‘통일냄비’는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1천세트가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판매를 시작한 지 불과 1시간이 못되어 매진되었다. ‘통일냄비’를 사기 위해 장시간 줄서있던 많은 고객들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발길을 돌려야했다.

시범단지 입주기업들의 공장설립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2005년 2월부터는 의류, 신발, 유공압실, 자동차 부품, 시계 등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어 국내로 반입되었다. 이 가운데 의류, 주방용품, 시계 등이 완제품으로 생산되어 국내의 다양한 판매장에서 판매되거나 해외시장에 직접 수출되었으며 자동차부품, 유공압실, 와이어하네스 등은 부품용으로 생산되어 반입되었다.



첫제품 생산 기념식 (2004.12.25)



2005년에는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입주한 18개 기업이 공장을 가동해 모두 1,490만달러어치의 제품을 생산하였다. 섬유업종이 678만달러로 총생산 금액 가운데 45%를 차지하였고, 기계·금속업종이 525만달러(35%), 화학업종 176만달러(12%), 전기·전자업종이 110만달러(8%) 순으로 집계되었다.

2006년에는 시범단지 26개 기업이 가동되어 총생산액은 전년도보다 395% 증가한 7,373만달러로 집계되었다. 업종별로는 섬유업종이 310% 증가한 2,779만달러, 화학업종이 517% 증가한 1,090만달러, 기계·금속업종이 297% 증가한 2,085만달러, 전기·전자업종이 1,181% 증가한 1,419만달러로 나타났다.

2007년에는 시범단지 26개 기업과 본단지에 입주한 26개 기업 등 52개 기업이 1억 4,611만달러를 생산하여 1월부터 10월말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총생산액은 2006년보다 약 98%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섬유업종이 141% 증가한 6,702만달러, 화학업종이 43% 증가한 1,561만달러, 기계·금속업종이 59% 증가한 3,314만달러, 전기·전자업종이 114% 증가한 3,033만달러로 나타났다.

### 입주기업 생산 실적

(단위: 천달러)

구분	2005	2006(증가율)	2007.10 현재(증가율)
섬유	6,780	27,793 (310%)	67,027 (141%)
화학	1,768	10,900 (517%)	15,614 (43%)
기계·금속	5,250	20,853 (297%)	33,143 (59%)
전기·전자	1,108	14,191 (1,181%)	30,332 (114%)
계	14,906	73,737 (395%)	146,116 (98%)

주: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 연도별·월별 생산 실적

(단위: 천달러)

구분	섬유	화학	기계·금속	전기·전자	계	
2005	1월	-	-	201	-	201
	2월	30	-	92	-	122
	3월	130	-	52	-	182
	4월	201	-	135	-	336
	5월	297	36	108	-	441
	6월	318	40	79	-	437
	7월	390	87	298	-	775
	8월	594	123	407	69	1,193
	9월	964	235	697	155	2,051
	10월	1,176	350	1,091	227	2,844
	11월	1,279	417	979	267	2,942
	12월	1,401	480	1,111	390	3,382
계	6,780	1,768	5,250	1,108	14,906	
2006	1월	1,569	461	1,002	364	3,396
	2월	1,965	373	986	468	3,792
	3월	2,813	411	1,338	647	5,209
	4월	2,002	448	1,243	657	4,350
	5월	2,113	458	1,519	1,053	5,143
	6월	1,897	957	1,464	1,190	5,508
	7월	1,643	885	1,924	1,063	5,515
	8월	1,936	1,240	2,164	1,471	6,811
	9월	2,416	1,408	2,163	1,634	7,621
	10월	2,366	1,295	2,080	1,814	7,555
	11월	3,109	1,508	2,448	1,803	8,868
	12월	3,964	1,456	2,522	2,027	9,969
계	27,793	10,900	20,853	14,191	73,737	
2007	1월	5,531	1,473	2,631	2,327	11,962
	2월	4,436	1,369	2,590	1,960	10,355
	3월	6,112	1,751	3,020	2,398	13,281
	4월	6,127	1,415	2,472	2,446	12,460
	5월	6,872	1,718	2,663	3,135	14,388
	6월	6,870	1,642	3,655	2,891	15,058
	7월	6,693	1,669	2,839	3,702	14,903
	8월	7,383	1,481	3,515	3,318	15,697
	9월	7,702	1,375	4,487	3,543	17,107
	10월	9,301	1,721	5,271	4,612	20,905
계	67,027	15,614	33,143	30,332	146,116	
총누계	101,600	28,282	59,246	45,631	234,759	

## 다. 수출 현황

2005년 4월 리빙아트(현 소노코쿠진웨어)가 생산한 주방용품(냄비 3종 세트)이 개성 제품으로는 최초로 부산항에서 선적되어 멕시코에 수출되었다.

입주기업 생산제품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외국인 바이어들을 수시로 개성 현지공장으로 초청해 제품이나 생산 과정을 직접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초기에 외국인들의 개성방문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여러 차례 외국인 바이어 현지방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05년 5월부터 외국인에 대한 초청장 발급을 시작하였다.

2005년 6월 독일인 바이어가 처음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하여 리빙아트의 공장생산시설을 둘러보았다. 2005년 7월에는 중국 내 유공압실 전국판 매망을 보유한 상해 소재 A-ONE PONG사 경영진이 방문하여 입주기업인 지에스와 1천만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맺는 등 이 때부터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힘입어 지에스가 유공압실을 중국에, 개성대화가 자동차부품(오일



개성공단 제품으로는 최초로 해외에 수출되는 (주)리빙아트 주방용품을 차량에 싣고 있는 모습

필터)을 호주에 수출하는 등 화학 및 기계·금속 2개 업종에서 2005년에 모두 86만 6천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수출금액으로는 미미한 실적이거나 개성공단에서 남북의 근로자가 손잡고 생산한 제품을 처음으로 세계시장에 팔기 시작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2006년에는 시범단지 입주기업의 정상가동이 이루어지고, 본단지 1차 입주기업 중 일부가 가동을 시작하여 생산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2006년 한해 수출실적은 전년보다 약 2,189% 늘어난 1,982만달러에 이르렀다. 화학업종이 825% 증가한 497만달러, 기계·금속업종이 292% 증가된 1,285만달러,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 새로이 추가되어 199만달러어치를 수출하였다.

2007년 1월부터 10월말 현재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총수출액은 2006년보다 약 60% 증가한 3,163만달러로 집계되었다. 업종별로는 화학업종이 65% 증가한 819만달러, 기계·금속업종이 48% 증가한 1,901만달러, 전기·전자업종이 122% 증가한 442만달러로 나타났다.

### 입주기업 수출 실적

(단위: 천달러)

구분	2005	2006(증가율)	2007.10(증가율)
화학	538	4,974 (825%)	8,195 (65%)
기계·금속	328	12,855 (292%)	19,014 (48%)
전기·전자	-	1,996 (-)	4,425 (122%)
계	866	19,825 (2,189%)	31,634 (60%)

주: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 연도별·월별 수출 실적

(단위: 천달러)

구분	화학	기계·금속	전기·전자	계	
2005	4월	-	38	-	38
	5월	27	37	-	64
	6월	5	-	-	5
	7월	37	-	-	37
	8월	63	72	-	135
	9월	169	12	-	181
	10월	78	63	-	141
	11월	83	55	-	138
12월	76	51	-	127	
계	538	328	-	866	
2006	1월	86	516	53	655
	2월	54	541	66	661
	3월	86	781	97	964
	4월	87	839	94	1,020
	5월	72	944	115	1,131
	6월	829	681	114	1,624
	7월	686	1,365	132	2,183
	8월	530	1,516	173	2,219
	9월	594	1,454	192	2,240
	10월	685	1,185	343	2,213
	11월	646	1,480	295	2,421
	12월	619	1,553	322	2,494
계	4,974	12,855	1,996	19,825	
2007	1월	677	1,663	377	2,717
	2월	497	1,651	354	2,502
	3월	891	1,808	462	3,161
	4월	878	1,635	483	2,996
	5월	1,022	1,962	526	3,510
	6월	619	2,254	434	3,307
	7월	1,055	1,296	467	2,818
	8월	697	2,082	482	3,261
	9월	614	2,115	399	3,128
	10월	1,245	2,548	441	4,234
계	8,195	19,014	4,425	31,634	
총계	13,707	32,197	6,421	52,325	

### 3. 공장 가동률 현황

개성공단 분기별 가동률 증감 추이

(단위: %)

	'6.1/4	2/4	3/4	4/4	'07.1/4	2/4	3/4
평균가동률	72.2	67.5 (-4.7)	76.4 (+8.9)	71.2 (-5.2)	76.6 (+6.3)	77.3 (+0.7)	77.3 (0.0)
섬유	69.3	68.3(-1.0)	68.3(0.0)	61.5(-6.8)	69.3(7.8)	71.2(1.9)	71.8(0.6)
화학	84.1	70.1(-14.0)	81.1(1.1)	71.6(-9.5)	80.5(8.9)	82.4(1.9)	82.5(0.1)
기계·금속	79.7	64.3(-15.4)	70.9(6.6)	70.2(-0.7)	76.9(6.7)	78.5(1.6)	79.3(0.8)
전기·전자	55.6	67.3(11.7)	85.4(18.1)	81.5(-3.9)	83.2(1.7)	84.9(1.7)	83.9(-1.0)

주 : 1. ( )안은 전 분기말 대비 증감률(%)

2. 평균 가동률(%) = 당월 생산실적/월간 생산능력 \* 100

2007년 3/4분기 현재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평균가동률은 77.3%로 전년 동기 대비 0.9% 상승하였다. 업종별 평균가동률은 전기·전자 업종이 83.9%로 가장 높았으며, 화학 82.5%, 기계금속 79.3%, 섬유업종이 71.8%로 그 뒤를 이었다. 2007년 3/4분기까지의 가동률은 평균 77.1%를 기록하여 전년평균 71.8% 대비 5.3% 상승하였다. 이처럼 개성공단 평균가동률은 입주업체 생산수주 물량 증가와 북측 근로자들의 작업숙련도 향상으로 전년에 비해 상승하였다.

개성공단 입주기간별 평균가동률

(단위: %)

구분	1년 미만 업체	1년 이상 업체	평균
평균가동률	72.8	82.5	77.3

※참고자료 : 1. 국내 중소기업 평균가동률 : 70.0%(중소기업중앙회, 2007.8월 중소기업 동향자료)

2. 국내 제조업 평균가동률 : 83.7%(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입주기간별 평균가동률은 입주 1년 미만 기업이 72.8%, 1년 이상 기업이 82.5%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평균가동률 77.3%는 국내 제조업 평균인 83.7%보다 6.4% 낮으나, 국내 중소기업 평균인 70.0% 보다는 7.3% 높은 수치이다. 특히 1년 이상 가동기업의 경우 대기업을 포함한 국내 제조업 평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82.5%의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어 개성공단의 평균가동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 제2절 근로자 현황

### 1. 북측 근로자 현황

개성공단에서는 2004년 11월 (주)리빙아트(현 소노코쿠진웨어)가 55명의 북측 근로자를 채용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2005년 12월 말에는 입주기업과 개발사업자가 모두 6,511명의 북측 근로자를 채용하였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월평균 400명 이상의 북측 근로자를 채용하여 2006년 11월에 1만명을 돌파하였고, 2007년 11월 5일에 2만명을 돌파하였다. 2007년 11월말 현재 북측 근로자수는 20,634명에 이르고 있다.



북측 근로자들의 아침 출근 모습

### 분기별 복측 근로자 증가 추이(누계)

구분	복측근로자 누계	전분기 대비 증가율
2005년 1/4분기	1,964	-
2005년 2/4분기	3,607	83.7%
2005년 3/4분기	4,712	30.6%
2005년 4/4분기	6,013	27.6%
2006년 1/4분기	6,541	8.8%
2006년 2/4분기	7,871	16.9%
2006년 3/4분기	8,879	12.8%
2006년 4/4분기	11,160	25.7%
2007년 1/4분기	12,492	11.9%
2007년 2/4분기	15,584	24.8%
2007년 3/4분기	17,671	13.4%
2007년 10월말	19,502	-
2007년 11월말	20,634	-

## 2. 남측 근로자 현황

개성공단에는 2007년 10월말 현재 847명의 남측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기업이 본격적으로 입주하기 이전인 2005년도에는 부지조성 및 공장 건축을 위한 개발사업자와 협력업체 근로자 400명 내외가 근무하였다. 기업이 본격적으로 입주하기 시작한 2006년부터 남측 근로자들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12월에는 791명에 이르렀다.

남측 근로자는 입주기업 근로자, 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지원기관의 관계자, 개성공업지구 기반시설 및 공장건축 등을 담당하는 개발사업자와 협력업체 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다. 남측 근로자는 입주기업 356명, 관리위원회 등 지원기관 125명, 개발사업자 및 협력업체 366명 등으로 전체 847명이 현지에 주재하고 있다.

### 3. 생산성

#### 가. 1인당 생산성

연도별 1인당 생산액 증감 추이

(단위: 달러)

	2005	2006	2007
1인당 생산액	638	1,000 (+56.7%)	1,256 (+96.8%)

- ※참고자료 : 1. 1인당 생산액 = 월간 총생산액/월간 상시근로자수  
2. ( )안은 2005년 대비 증가율  
3. 2007년은 10월말 현재까지의 평균임.

2007년 10월말 현재까지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근로자 1인당 생산액은 평균 1,256달러를 기록하였다. 1인당 생산액은 신규 가동업체의 증가 및 기존업체들 신규 근로자수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256달러(+25.6%), 2005년 대비 618달러(+96.8%)가 증가하는 등 가파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입주기업들이 추정하는 북측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업종별, 기계장치 비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중국 현지공장의 80~90%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입주기업 중 개성대화, 지에스, 태성하타, 신원 등 가동 3년차 기업들의 생산성은 이미 중국수준을 넘어섰으며, 남측 기준으로도 80%대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생산 3년차에 접어들면서 근로자들의 꾸준한 기술 습득과 작업집중도 향상에 힘입어 기술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는 생산성이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나. 업종별 생산성

업종별 1인당 생산액

(단위: 달러)

업종	섬유	화학	기계·금속	전기·전자	평균
1인당 생산액	970	1,865	1,780	1,523	1,256

※참고자료 : 1. 1인당 생산액 = 월간 총생산액/월간 상시근로자수  
2. 2007년 10월말 현재까지의 평균임.

업종별 1인당 생산액은 화학업종이 1,865달러로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기계·금속이 1,780달러, 전기·전자 1,523달러 순이며, 섬유업종이 970달러로 가장 낮은 생산액을 보이고 있다.

화학, 기계금속,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 자동화 및 기계화율이 비교적 높아 노동집약적 산업인 섬유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1인당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섬유업종의 경우 생산물량이 증가하면서 2007년 상반기 근로자 채용이 상대적으로 많아 다른 업종에 비해 생산성이 낮아졌다.

## 4. 기술교육훈련

### 가. 기술교육센터 설립

북측 근로자에 대한 기술교육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시행하여 입주기업의 생산성 조기 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한 인력수요에 부응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직종에 맞는 전문적인 기술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노동력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개성공단에 기술교육센터를 건립하였다.

2005년 12월에 착공된 기술교육센터는 2007년 11월에 완공되었으며, 2008년 1월에 개원할 예정이다. 건립비용은 약 193억원으로 남북협력

기금에서 지원을 받았다. 센터는 대지면적 23,142㎡(7,000평), 건축면적 10,909㎡(3,300평)의 규모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 22개의 강의·실습실, 대강당, 회의실, 식당 등을 갖추고 있으며, 1일 동시 교육가능인원 약 700여명, 연간 최대 4,000명의 기능인력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이 가능하다.

#### 나. 교육훈련 직종 및 내용

북측은 기술교육센터의 교과목을 관리위원회가 선정해 줄 것과 입주기업 수요에 맞는 직종을 선정하여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더불어 북측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술분야 교육 외에 여타 분야 교육도 실시해 줄 것을 추가적으로 요청하였다.

따라서 초기에는 실험적(Pilot) 교육훈련 직종으로 섬유·봉제, 기계, 전기·전자, 컴퓨터 분야를 선정하되 개성공단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추가 직종에 대한 교육내용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운영상의 가변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공과 개념으로 진행된다.

주요 교과목 편성의 경우 섬유·봉제공과는 봉제, 니트웨어, 양장, 신발류제조, 신발봉제, 기능성 내의 디자인 중에서 입주업체의 신규 채용 및 훈련수요를 감안하여 교육운영반을 편성할 것이다.



기술교육센터 행정동(좌) 및 교육동(우) 전경

기계공과의 경우 전산응용가공(CAD/CAM), CNC 선반, 머시닝센터, 기계조립, 시스템 제어 중에서 입주업체의 신규채용과 훈련수요를 감안한 교육운영반을 편성한다.

전기·전자공과는 전기기기, 전기시스템제어, 전력전자, 전자기기, 자동 제어설계 중에서 입주업체 신규 채용 및 훈련수요를 감안하여 교육운영반을 편성할 것이다.

컴퓨터공과는 컴퓨터 기초, 고장수리,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을 기본적인 교육내용으로 하면서, 업체의 훈련수요에 따라 OA, IT 교육 등의 교육운영반을 편성할 것이다.

#### 기술교육센터 교육훈련 직종

공과	섬유·봉제	기계	전기·전자	컴퓨터	기타
교과목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제</li> <li>· 니트웨어</li> <li>· 양장</li> <li>· 신발류제조</li> <li>· 신발봉제</li> <li>· 기능성내의 디자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산응용가공</li> <li>· CNC 선반</li> <li>· 밀링</li> <li>· 기계조립</li> <li>· CAD</li> <li>· 머시닝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기기</li> <li>· 시스템제어</li> <li>· 전력전자</li> <li>· 전자기기</li> <li>· 자동제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 교육</li> <li>· OA</li> <li>· 컴퓨터기초</li> <li>· 고장수리</li> <li>· 워드</li> <li>· 엑셀</li> <li>· 파워포인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JT</li> <li>· 세무</li> <li>· 생산관리</li> </ul>





- 인터뷰: 유창근 | (주) 에스제이테크 사장
- 대 담: 이상숙 | 평화협력원 연구원

| 이상숙 | **기업인으로서 개성공단 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창근 | 개성공단 초기 진출기업으로서 길잡이 역할을 하며 겪은 고생은 많았지만 개성공단 시범단지 사업은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던 국내 중소기업에게 좋은 대안이 되었다고 봅니다. 국내에서는 인건비 상승, 원재료비의 상승, 구인난 등 경영악화 요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1단계 본단지 분양에 국내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는 개성공단 입주를 통하여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되었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여 중국과도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 이상숙 | **개성공단의 장점과 경쟁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유창근 | 개성공단에는 무엇보다 우리말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양질의 인력이 있습니다. 북한은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인데 우리로 따지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제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인력들이 있어서 기술이전과 경영안정을 빨리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대, 고려성균관대학교 출신의 우수 인재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어 앞으로 조만간 세계 최고의 제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력운영과 기술보호 측면에서도 큰 장점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인력이동이 심하여 추석이나 신년 휴가시 귀향한 종업원들의 20~30% 정도가 더 높은 임금

을 따라 훌쩍 직장을 바꾸는 예가 많기 때문에 항상 만성적인 생산차질 문제와 기술유출 위험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개성공단은 인력이동이 없고 매우 안정적입니다.

다른 대북사업에 비해서도 개성공단은 큰 경쟁력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기반시설 완비 등 투자여건이 신의주, 나진·선봉, 평양 등 북측 내 다른 지역과는 확연히 구별됩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모여 있어 기술교육센터, 은행, 병원, 편의점 등 공동시설을 건설·운영하기도 좋습니다.

#### | 이상숙 | 북측 근로자들의 업무자세와 생산성에 만족하십니까?

| 유창근 | 북측 근로자들의 작업 및 기술 교육에 임하는 자세는 진지하고 성실하며 열성적입니다. 제조분야, 손재주를 이용하여 단순 반복 작업을 진행하는 분야에서는 빠른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시하고 시범을 보이고 즉시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은 불과 1~2주 만에 교육이 끝나 작업 시작 후 3개월 내에 만족할만한 품질과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론 교육과 숙련이 필요한 작업에는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전문 분야의 용어에 익숙해지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북측 근로자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들의 장점과 단점을 경우에 맞게 잘 활용하여 경영효과를 최대한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한 사람에게 한 개의 공정만 집중적으로 맡긴다든지, 자연스런 반별 경쟁을 통하여 성취동기를 높이는 방안도 있습니다.

| 이상숙 | **복측 근로자들과 일하면서 생긴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 유창근 | 복측 근로자 중에는 자신의 의사를 당당하게 표현하는 이도 있습니다. 교육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품질부서에 배치 받은 한 복측 직원이 일도 안하고 자신의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당시 이 직원은 연구소에 배치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현재 이 직원은 희망대로 연구소에 배치되어 책임 연구원으로서 학습과 연구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처음 면접하는 날 “공장을 궁전처럼 가꾸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직원이 있었는데, 이 직원은 현재 회사의 미화반장으로 회사 전체의 환경과 청소, 주재원 숙소의 관리 등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개성공단에서 첫 번째로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식당·샤워 시설 등의 복지시설도 그랬습니다. 처음 시행착오를 겪은 이후, 우리 회사는 이 문제를 직원들과 함께 상의하여 해결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였습니다. 황해도 지방에는 예로부터 온천이 유명했고 몸을 따뜻하게 데우는 한증문화가 있었는데, 직원들은 기왕에 샤워실을 마련할 바에는 한증탕을 만들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저도 그렇다면 직접 설계하고 실행해 보라고 기회를 주었는데 직원들이 설계에서 시공까지 훌륭하게 해내어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회사는 한증탕에 들어갈 건식 사우나용 히터, 온수용 가스보일러 등을 제공하였고 한증탕은 직원들과 회사가 힘을 합해 만든 복지시설이 되었습니다. 금요일에는 여직원 전체가 부서별로 돌아가며 이용하고, 토요일에는 남직원 전체가 부서별로 교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이규용 | (주) 에스제이테크 개성법인 실장
- 대 담: 이상숙 | 평화협력원 연구원

| 이상숙 | 북측 근로자와 공동 근무시 일화가 있으면 소개하여 주십시오.

| 이규용 | 북측 근로자들은 순박하여 자신들의 사생활을 표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데, 심지어 자신의 결혼식이 있어도 아무 말 없이 며칠 휴가를 받아 넘기곤 합니다. 주재원들은 주변 상황을 보고 ‘결혼했구나’ 하고 짐작할 뿐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20대 초반 여직원이 있었는데 휴가를 다녀온 이후에 혹시 결혼한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어린아이가 벌써 결혼합니까” 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북측 여직원이 결혼하지 않은 줄로 알았고, 임신으로 몸이 불어나도 그냥 몸이 좋아져서 그런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 직원은 출산 달이 다가와서야 결혼과 임신 사실을 털어 놓았고, 이 때 저는 “시집도 안 간 처녀가 무슨 임신” 이냐고 말하며 함께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 이상숙 | 근무하면서 느꼈던 보람이나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이규용 | 우리 회사에는 17세에 고향인 해주를 떠나 남측으로 내려온 흥태표 고문이 계시는데 이분이 처음 개성 발령으로 부임하는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태극기 들고 독립만세 부른 사람만 애국한 것이 아니다. 이 시대에 개성에 와서 일하는 사람도 애국하는 사람이다. 후에 자식들에게 할 말이 있지 않느냐. 그 때 그 시간에 나는 개성에 있었노라고...” 저도 주변의 친지들에게 우스갯소리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통일을 위해 보람 있는 일을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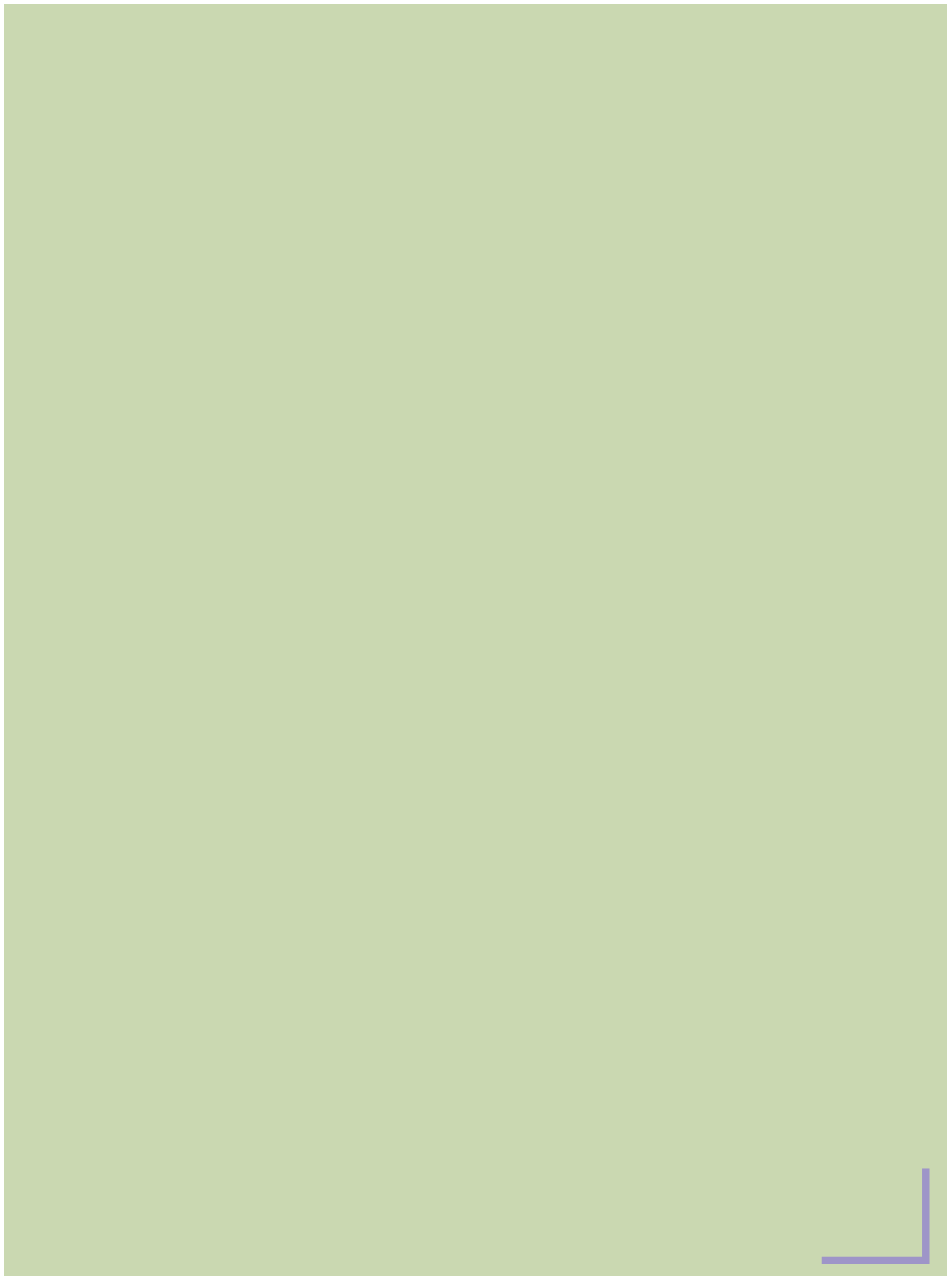
고 있는데, 회사에서 월급도 준다고...”

오랫동안 남측에 있다가 개성에 올라가면 동료직원들이 없는 동안 사무실이 텅 빈 것 같았다고 하며 반갑게 맞이하는 것을 보며 이제는 한술밥을 먹는 식구가 다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2006년 미사일과 핵실험 위기로 개성공단에 대한 외부 시선이 따가워졌을 때, 북측 근로자들이 더욱 더 열심히 협조적으로 일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분단 반세기만에 함께 지켜내야 할 일터를 만들고 힘을 합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큰 보람입니다. 어려운 점이 없다고 하면 거짓이겠지만 이런 저런 보람들은 모든 어려움을 덮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 이상숙 |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이규용 | 개성공단 내에서 인터넷이나 통신강좌를 통해서 기술영역을 넓히거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등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간도 필요합니다. 음악 감상, 독서 등을 할 수 있는 도서관 등을 건립하고 이곳에서 문학 강좌 혹은 음악회 등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행사들을 진행해 준다면 개성공단 근무가 더욱 보람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개성 또는 평양의 북한 연주단이나 공연단을 초청하여 공연을 갖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GAESEONG INDUSTRIAL CO  
개성공단관

JEL SANGPUM CO., LTD.  
(BYG)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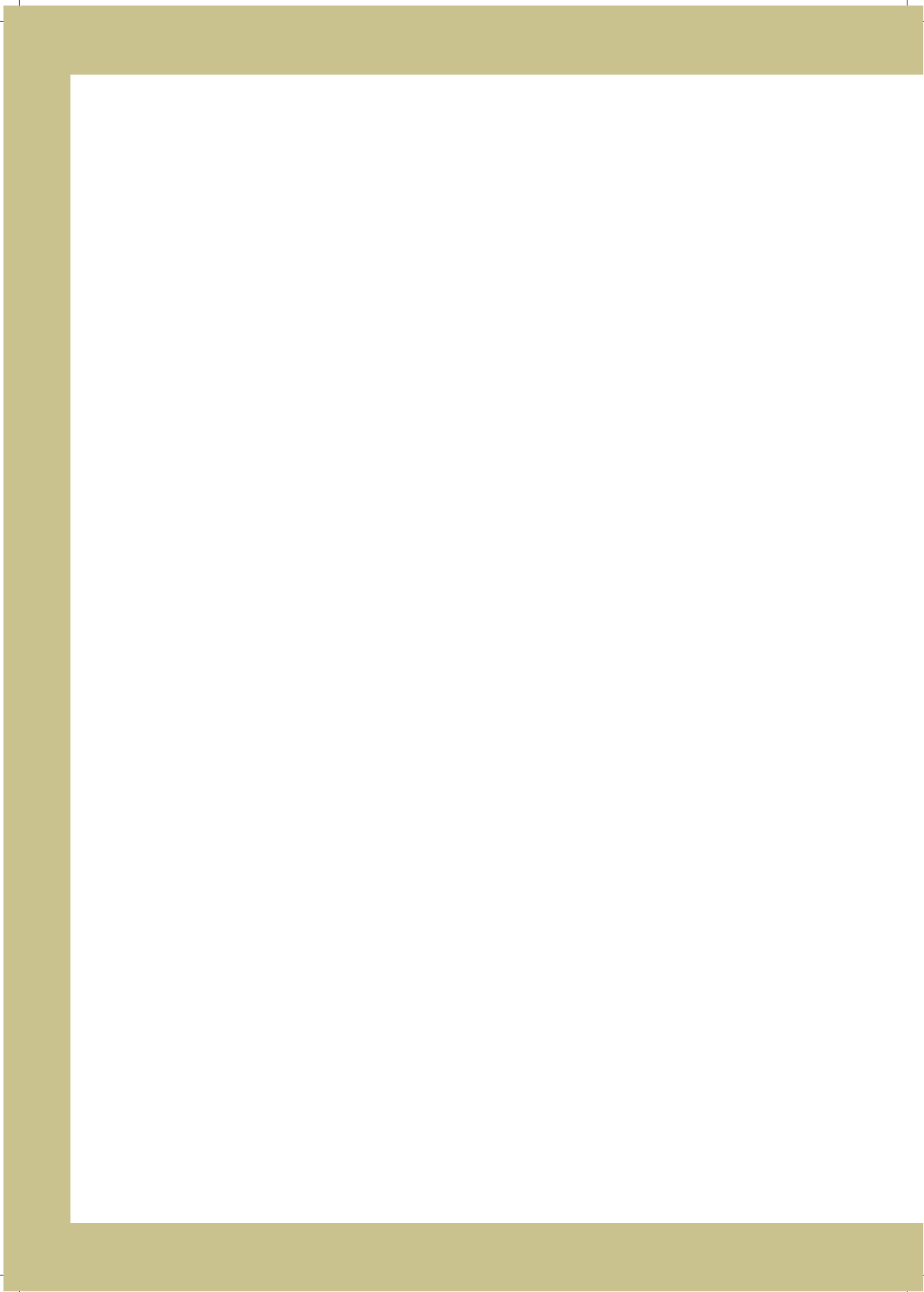
## 제4장 입주기업 활동 지원

제1절 기업 운영 지원

제2절 금융 및 판로 지원

제3절 출입·통관 지원

부산 국제 「신발·섬유패션전시회」에  
설치된 개성공단관



## 제4장 입주기업 활동 지원

---

### 제1절 기업 운영 지원

#### 1. 노무관리

##### 가. 입주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활동

개성공단단의 노무관리는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가 노력알선 및 채용의 지원, 노동규정의 해석과 개별기업의 노무관리 및 노동규정의 적용 등에 대한 상담을 통해 입주기업의 노무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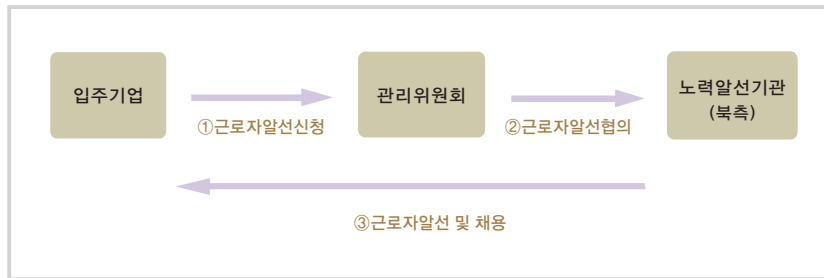
관리위원회는 입주기업의 노무관리 관련 애로사항을 상시 청취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시에는 북측의 지도총국, 남측의 유관기관 등과 직접 협의를 통해 해결을 모색한다. 노동규정의 적용 및 해석과 관련한 세부적인 해석기준을 마련하고 보완하기 위해 노동규칙, 노동중재절차, 개성공업지구 노임보장제도, 노동규정 시행세칙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도 진행하고 있다.

## 나. 주요 노무관리 제도

### 1) 근로자 채용

근로자 채용은 먼저 입주기업에서 성별, 나이, 전공 등을 고려, 필요한 근로자의 요건을 문서로 작성하여 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 노력알선기관에 요청하면 노력알선기관에서 기업에 근로자를 보내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보통 신청에서 배정까지 30-40일이 소요되며 기업에서는 배정된 근로자가 기업의 요구와 크게 어긋나게 되면 다시 협의를 통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2)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개성공단의 주간 법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며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과 종업원 대표가 상호 합의하여 실시한다. 기업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하거나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경우에는 노동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일근로를 실시할 경우에는 시간급 또는 일당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급금으로 지급한다. 휴일근로를 실시하고 15일 이내에 대체휴가를 부여하면 가급금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

입주기업은 노동규정에 따라 복측의 명절과 공휴일에 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연간 14일의 정기휴가와 임신중 근로자에게는 150일의 산전·산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기업이 정기휴가 또는 산전·산후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휴가비를 산정하여 지급하되, 산전·산후 휴가의 경우에는 150일 중 60일분에 해당하는 휴가비를 지급하게 된다. 휴가비는 휴가개시 이전 3개월간의 노임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에 실제 휴가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3) 노동보수

노동보수는 노임과 가급금, 장려금 및 상금으로 구성된다. 노임은 월최저노임 이상으로 기업이 결정하되 조업준비중인 기업, 견습공 및 무기능공에 대해서는 월 최저노임의 70%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월최저노임은 관리위원회와 총국의 합의로 결정하며 전년도 최저노임의 5% 이상을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근로자의 월최저노임은 50달러였는데 관리위원회와 복측 지도총국간 합의에 의하여 2007년 8월 1일부로 52.5달러로 인상되었다. 기업들은 노동보수와 별개로 월 노임총액의 15%를 익월 10일까지 사회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복측 근로자들은 노동보수 중 약 30% 정도를 사회문화시책 기금으로 제하고 나머지를 현물(생필품)과 북한 화폐로 지불받고 있다.

월 노동보수 지불계산서																					
성명	성별	생년월일	부서직역	입직년월일	월로임	일로임	시간로임	로동시간					로임				장려금, 상금	월로동보수계	수표		
								가동일수	연장 150%	야간 150% 200%		휴일근무 200%	결근	지각	초퇴	외출				기본로임	초과로임

복측 근로자는 노동보수 지불계산서에 서명함으로써 자신의 월 노임액을 확인함



#### 4) 해고 및 사직

개성공단 노동규정은 근로자의 해고사유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해고사유가 발생하여 기업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례는 거의 없다. 북측과 협의하에 부적합한 근로자를 교체하는 것은 가능하다.

개성공단의 근로자는 진학, 직종 부적합 등의 개인적인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직할 수 있으며,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 이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기업은 사직서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사직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기업은 기업의 사정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을 퇴직시키는 경우에는 퇴직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3개월간의 평균 월 임금에 근무한 연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5) 복리후생

기업은 북측 근로자의 출퇴근 지원을 위해 1인당 월 5달러의 교통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식사지원(점심국)과 연장근무시 초코파이 등의 간식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대부분 기업내 샤워실을 갖추고 기업형편에 따라 1주 1회 정도 북측 근로자들의 샤워실 이용을 보장하고 있다.

#### 6) 제재 및 분쟁해결

관리위원회는 노동규정을 위반한 기업이 있을 경우 그 위반정도에 따라 10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의 벌금을 물리거나,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별기업의 노동관련 분쟁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해결이 원칙이고,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중재절차로 해결한다.

## 2. 기업창설·등록

관리위원회는 개성공업지구법과 기업창설·운영규정에 따라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성공단에 투자하고자 하는 남측, 해외동포, 외국의 법인, 개인 등을 심사하여 기업창설승인서와 기업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개성공단 내에서 기업설립은 ‘기업창설’이라고 하며, 기업창설은 남측,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성공단에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업창설 절차는 먼저 통일부로부터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후 관리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된다. 관리위원회는 기업창설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으로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창설신청이 북측 법규 및 남측 관련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하거나 부결한다.

기업창설을 승인받은 기업은 등록자본(총투자액의 10% 이상) 투자 후 기업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는 기업등록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하며, 승인하였을 경우 기업등록증을 발급한다.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20일 이내에 북측 기관에 세관 및 세무등록을 하면 기업창설 절차가 마무리된다.

2007년 10월말 현재 26개의 시범단지 입주기업은 모두 기업창설 및 등록을 완료하였다. 본단지 1차는 46개 기업 중 35개 기업이 기업창설을 완료하였고 26개 기업이 기업등록을 마쳤으며, 나머지는 기업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 3. 부동산 등록

개성공단 부동산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위원회는 부동산 취득과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등록 및 집행준칙을 2006년 2월 6일 제정·공포하였고, 이에 따라 공단 내 부동산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시범단지 입주기업 26개 기업 가운데 토지이용권은 22개 기업, 건축물은 15개 기업 중 14개 기업이 등록을 완료하였다. 본단지 1차는 입주기업 26개 기업 중 토지이용권 14개 기업, 건축물은 7개 기업이 등록하였다. 본단지 2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아파트형 공장 건립으로 132개 기업들이 부동산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 4. 세무업무

##### 가. 세금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2003.8.20)’에 의해 입주기업 등의 발생소득에 대해서는 남·북한중 일방에서만 과세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의 세금 종류 및 세율

구분	납세의무자	과세기준	세율	감면제도
기업 소득세	개성공업지구에서 소득을 얻은 기업	결산이윤	14%(일반업종)  10%(경공업, 하부구조, 첨단과학 등 장려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려·생산부문 투자 : 15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은 이윤 발생년도부터 5년 면제, 이후 3년은 50% 감면</li> <li>서비스부문 투자 : 10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은 이윤발생년도부터 2년, 이후 1년 50% 감면</li> <li>이윤 재투자 : 3년 이상 운영시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 소득세의 70%를 다음년도 세금에서 감면</li> </ul>
개인 소득세	개성공업지구에 184일 이상 체류하며 소득을 얻은 개인	월 보수액에서 30%를 공제한 금액이 500달러 이상일 경우	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 당국 협정에 의한 소득면제</li> <li>북측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저축성 예금이자와 보험금 또는 소득면제</li> <li>공업지구에 설립된 은행의 비거주자들 예금의 경우 이자소득 면제</li> </ul>
재산세	매년 1월 1일 현재 개성공업지구 내 영구건물 소유자	건물 용도별 취득 시 현지가격	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 건물소유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li> </ul>
상속세	개성공업지구 내 재산을 상속받은 자	세금규정에서 정한 지출을 공제한 금액의 상속재산액	6%~25%	

구분	납세의무자	과세기준	세율	감면제도
거래세	생산부분의 기업	생산물 종류별 판매수익금	1%-2%(단 술, 담배, 기타 기호품 등 15%)	•생산제품을 남측 혹은 다른 나라에 수출할 경우 면제
영업세	서비스 부분의 기업	건설, 금융 등 부문별 서비스 수입금과 건설물인도 수입금	1%-2%(단 오락 부분은 7%)	•하부구조 부문 기업 면제(전기, 가스, 난방 같은 에너지의 생산 및 공급부문, 상하수도, 용수, 도로 부문)
지방세	도시 경영세	개인 및 기업	월 노임총액 또는 월 수입총액	
	자동차 이용세	매년 1월 1일 현재 개성공업지구 내 자동차를 소유한 기업 또는 개인	자동차 종류	3-60달러

## 나. 회계

북한은 2005년 6월에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을 공포하여 기업의 경영 활동 및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은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세사항은 관리위원회가 작성하는 기업회계기준에 위임하고 있다. 관리위원회는 입주기업이 어려움 없이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남측 기준과 최대한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작성하여 2007년 6월 15일 공포하였다. 기업회계기준은 입주기업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여 공업지구의 투명한 회계환경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관리위원회는 입주기업 재무제표의 투명성과 현물투자에 대한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의 회계검증사무소(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화인경영회계법인)를 개성공단 회계검증사무소로 선정하였다.

## 5. 보험업무

투자기업과 거주 및 체류자들의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제6조에서는 화재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 자동차배상책임보험, 종업원재해보험을 의무보험으로 규정하여 그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개성공단에서의 보험사업은 동 규정 제3조에 따라 북측 지도총국에서 정하는 보험회사가 수행하게 되어있다. 지도총국은 2005년 1월 26일 조선민족보험총회사<sup>1)</sup>(이하 '보험총회사')를 개성공단에서 유일한 보험사업자로 지정하였다.

개성공단 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나 자체수리 등으로 해결하거나 남측 또는 북측 보험총회사의 보험보상으로 처리되고 있다. 2006년 7월 12일 남측 보험사에 보험가입한 토지공사 차량과 북측 보험총회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관리위원회 차량 간 사고가 발생해 보험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899달러를 수령한 이래 모두 9건 12,517달러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 6. 자동차 등록

2005년 6월 26일 관리위원회는 '자동차등록준칙'을 만들어 자동차등록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후 다음 해인 2006년 1월부터 등록업무를 시작하였다.

이에 북한도 2006년 7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76호로 '개성공업지구 자동차관리규정'을 채택함으로써 관리위원회의 자동차등록업무의 근거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

1) 조선민족보험총회사(KNIC)는 2006년 1월 1일부로 회사이름을 변경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조선국제보험회사(KFIC)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왔다.

## 자동차 등록 현황

(2007년 10월말 기준, 단위: 대)

구분	승용	버스	화물	특수	계
첫 등록	53	84	115	67	319
삭제등록	-	1	25	4	30
변경등록	3	-	-	-	3

또한 2006년 11월 20일 관리위원회는 공고 2006-5호로 그간 시행해 오던 등록업무를 현실에 맞춰 개정하였다. 아울러 ‘자동차등록번호부여와 자동차등록번호판부착 및 봉인에 관한 세부지침’을 제정·공고함으로써 그간 진행되어 오던 번호부여와 번호판 형식 등을 규정화하였다.

관리위원회는 향후 운행 자동차의 안정성 담보 등을 위해 개성공단 현실에 맞는 자동차검사기준 등을 마련하고 자동차검사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7. 공단관리

### 가. 기반시설 운영·관리

2007년 10월 현재 공단의 모든 기반시설 및 환경시설 공사가 완료되어 관리위원회에 인계되었으며, 관리위원회는 기반시설(도로, 가로등, 상수·우수·오수관로 등)과 환경 기초시설(폐수처리장, 정·배수장, 폐기물처리장)의 정상적인 설치 지원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들 시설의 활용·점용 등에 대한 인허가 사항도 담당하고 있다.

### 나. 지적등록·관리

지적업무는 개성공단의 토지위치·면적을 확정하여 지적공부(토지대장,



경계점좌표부, 지적도 등)를 작성하고 등록·관리하는 업무이다. 지적공부 등록 후 순차적으로 토지이용권 등록 및 공장건물 소유권 등록 절차가 진행된다.

입주기업의 재산권 조기 공시와 금융기관 근거당 설정조건을 위해서 시범단지(15필지) 및 본단지 1차(24필지)는 공사좌표를 기준으로 지번을 부여하여 2005년 8월부터 지적공부 작성·등록을 하였다.

#### 다. 건축인허가

개성공단 건축준칙은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8월 최초로 개성공단 시범단지 건축인허가 기준을 발표하고 이에 근거하여 건축인허가를 시행하였다.

시범단지 인허가 기준은 개성 지역의 특수성 및 기반시설공급용량을 고려하여 건폐율 50%, 용적률 100%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였다.

2005년 5월 향후 1단계 전체에 적용 가능한 개성공업지구 건축준칙과 세칙을 공표하였으며, 2005년 10월에는 본단지 1차의 공장건축에 대비하여 개성공업지구 본단지 1차 기준을 공표하고 이에 의하여 건축인허가를 시행하였다. 본단지 1차 기준은 시범단지의 건축인허가 경험을 반영하여 전기, 소방, 가스 등의 시설 설치 기준을 보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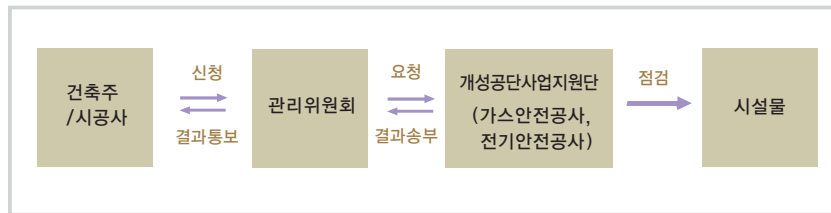
또한 1단계 본단지 2차 분양에 대비하여 2006년 12월 개성공단 본단지 건축인허가 기준을 공표하였고 용적율을 공장은 180%, 주거시설은 200%, 상업시설은 800%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건축준칙의 일부조항을 본단지 건축인허가 기준과 상치되지 않도록 개정하였다.

#### 라. 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관리위원회에서는 입주기업의 전기 및 가스 시설물 등에 대해 사전예방 및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여 대형사고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5년 12월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상주

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안전점검 절차



### 마. 환경관리

2004년 11월 23일 관리위원회는 환경관리준칙(수질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관리, 폐기물관리 등)을 제정하였다. 그 목적은 기업·개인의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피해를 줄이고,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통해 적정하게 처리·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5년 11월 9일 관리위원회는 북측의 총국 및 개발업자와 협의하여 1 단계 개발·건설·운영에 따른 주요 환경영향조사,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자연·생활·사회·경제환경 측면의 환경현황조사·예측·분석·저감방안 등을 고려한 사후환경보호계획인 ‘환경보호계획’을 수립하였다.

2006년 11월 21일에는 북측 총국, 관리위원회 및 개발업자 간 3차례의 협의를 통해서 ‘개성공업지구 환경보호규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를 통해서 개성공단의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보존과 조성, 엄격한 환경오염방지질서의 수립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 바. 산업안전 및 보건위생

개성공단 내 산업안전을 위해 입주기업 및 각종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에 대한 안전의식 함양과 고취, 개별 사업장별 노동안전담당 일군 선임을 통한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활동 독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기 산업안전점검 실시, 무재해운동의 보급과 추진, 산업재해 발생시 발생 원인 파악 및 대책 제시 등 산업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2005년 5월부터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인원 1명이 관리위원회에 상주하면서 산업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건위생을 위해서는 개성공단 각 사업장에 대한 보건·위생 및 전염병 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증진을 위한 식품위생 및 전염병 예방준칙을 2006년 1월 제정하였다.

사업장 자체 응급처리체계 구축을 위한 보건담당을 선임하였으며, 전염병 예방 및 집단급식 관리를 위한 보건위생 자체 점검카드를 활용하여 예방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 분야별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6년 3월에는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말라리아 기피제 및 검사 장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진단 및 치료예방 약제를 갖추어 방역활동을 강화하였다.



근로자 건강진단

## 제2절 금융 및 판로 지원

### 1. 금융 지원

정부는 개성공단 개발 초기의 열악한 사업환경을 고려하여 입주기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대출하여 초기시설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시범단지 입주기업에 약 470억원, 본단지 1차 입주기업에 약 230억원이 대출됨으로써 개성공단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정부는 본단지 2차 입주기업부터는 상업적 방식의 자금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2006년 6월 경제정책조정회의 의결로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을 통해 시중금융기관이 소요자금을 대출하도록 하였다.

기업당 보증지원의 규모는 총 투자예정금액의 70% 이하, 국내보증금액을 포함하여 총 100억원 이하로 하며, 초기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보증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의 특성에 따라 일반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벤처·이노비즈기업은 기술보증기금에서 담당하며, 보증업무 처리방식은 국내기업과 동등하다. 다만 남북당국간 합의로 추진되는 사업, 아파트형 공장 건축과 같이 소요자금의 규모가 커서 보증지원을 하기 어려운 분야는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원산지 문제 해결 노력

우수한 노동력, 수도권과의 지리적 인접성 등 개성공단의 경쟁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우리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지역에 대한 판로를 확보한다면 개성공단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다. 그러나 개성이 북한 지역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수출할 경우 대부분이 '북한산'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국들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수출

이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에 정부는 각국과의 FTA 협상과정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과 동일한 관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한-싱가포르 FTA 선례를 바탕으로 2005년 9월 1일 발효된 한-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와 2007년 6월 1일 발효된 한-ASEAN FTA에서도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국내산과 동일한 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의 하나인 미국과의 FTA가 2007년 4월 2일 타결되었으며 동 협정에서는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가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하게 함으로써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2006년 6월 한-미 FTA 1차 협상이 시작된 이후 8차례의 협상을 진행하면서 우리측은 매번 개성공단 생산제품 문제를 제기하였다. 우리측은 개성공단은 실질적인 한국 공단이므로 역외가공방식에 의해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과 동등하게 인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2007년 3월부터 개최된 마지막 협상에서 우리측은 개성공단 생산제품 문제를 다시 제기하였고, 많은 논의 끝에 한-미 FTA 협정 발효 후 1년 시점에서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가동하여 일정 기준하에 북한의 특정 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개요

- 구성 및 운영 :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 협정 발효후 1년 후 개최(매년 1회 개최 또는 양국 합의시 수시 개최 가능)
- 기능
  - 역외가공지역(OPZ, Outward Processing Zone)가 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을 지정
  - 동 지역이 위원회가 마련한 OPZ 지정기준의 충족여부의 판정
  - OPZ의 생산품이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요건 마련
  - OPZ에서 추가될 수 있는 총 투입가치의 최대 한도 설정

비록 협정문에 개성공단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가 구성·가동되면 1차적으로 역외가공지역으로 검토될 대상이 개성공단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오히려 이번 합의로 개성공단 지역뿐만 아니라 북한의 다른 지역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일정 기준-한반도 비핵화 진전, 역외가공지역내의 일반적인 환경기준, 근로기준 및 관행, 임금(북한지역의 일반적인 기준 및 관련 국제규범을 참조) 등도 제시하였다.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을 비롯한 북한 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합의를 기초로 하여 향후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되어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미국 수출길이 열리게 되면 개성공단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며, 현재 진행중인 EU, 캐나다 등과의 FTA협상에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역외가공지역 지정 관련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 22-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1. 대한민국의 헌법상 위임 및 안보 이익과, 미합중국의 상응하는 이익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립한다. 위원회는 한반도에서의 상황이 역외가공지역들의 설립 및 개발을 통한 추가적 경제개발에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2.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 협정 발효 1주년 기념일에 회합하며, 그 후 매년 최소 1회 또는 상호 합의하는 대로 어느 때나 회합한다.
3. 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들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들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으로부터의 상품이 이 협정의 목적상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기 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을 수립한다. 그 기준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진전
- 역외가공지역들이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 역외가공지역에서 일반적인 환경 기준, 노동 기준 및 관행, 임금 관행과 영업 및 경영 관행. 이 경우 현지 경제의 그 밖의 곳에서 일반적인 상황 및 관련 국제규범을 적절하게 참고한다.

4. 위원회는 그러한 역외가공지역이 위원회가 수립한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또한 역외가공지역의 지리적 구역 내에서 원산지 최종상품에 추가될 수 있는 총 투입 가치의 최대 한도를 설정한다.

5. 위원회의 일치된 동의에 따라 내려진 결정은 양 당사국에게 권고되며, 양 당사국은 역외가공지역들에 대하여 이 협정의 개정을 위한 입법적 승인을 구할 책임을 진다.

### 3. 판로 개척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체제가 완비될 경우를 대비해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단기적으로는 내수용으로 판매 하거나, 수출제한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러시아, 중국, 동유럽 등 북한 제품에 대해 비차별적인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해외인지도 제고를 통한 판로확대를 위해 국내외 유명 전시회 참가를 적극 지원했다.

2006년에는 중국 상해 섬유패션대전(프리뷰인 상하이), 서울 섬유교역전(프리뷰인 서울) 등 5개 전시회에 참가하여 2,445만달러 규모의 상담실적을 올리고, 실제 727만달러의 수출계약을 맺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개성공단사업의 국민적 지지도 제고를 위해 국회에서 개성공단 제품 전시 및 판매전을 개최한 바 있다.



### 국내외 전시회 개성공단 생산품 전시(2006)

	전시회	참여 업체수
2006년 (5건)	2006 프리뷰인 상하이 (4.5~4.8, 중국 상해)	신원 등 5개사 협찬 10개사
	2006 프리뷰인 서울 (9.6~8, 서울 COEX)	서도산업 등 17개사
	뒤셀도르프 신발박람회 (9.15~17, 독일 뒤셀도르프)	삼덕통상
	2006 부산 국제 신발·섬유패션전시회 (10.31~11.2, 부산 BEXCO)	삼덕통상 등 14개사
	2006 국회1일 판매전 (12.8, 국회 의원회관)	신원 등 10개사

### 국내외 전시회 개성공단 생산품 전시(2007)

구분	전시회	참여 업체수
2007년 (11건)	2007 서울 국제 스포츠레저산업전 (SPOEX) (2.28~3.3, 서울 COEX)	삼덕통상
	2007 프리뷰인 상하이 (3.26~29, 중국 상해)	좋은사람들, 평화제화
	2007 유통산업대전 (5.23~26, 서울 COEX)	로만손, 평화제화, 평안, 성화개성
	프리뷰인 서울 (9.4~6, 서울 COEX)	문창기업, 성화물산 등 8개사
	EU 전시회 (9.14~16, 밀라노, 뒤셀도르프, 파리)	삼덕통상
	상해·북경 국제 동력전동 및 제어기술 전시회 (10.10~19, 중국 상해·북경)	SJ테크
	제6회 한상대회 (10.31~11.2, 부산 BEXCO)	신원, 삼덕통상, 서도산업 등 7개사
	섬유의 날, 개성공단 제품 전시 및 판매전 (11.6~8, 서울 섬유센터)	신원, 삼덕통상, 평안 등 6개사
	2007 부산 국제 신발·섬유패션전시회 (11.29~12.1, 부산 BEXCO)	삼덕통상 등 11개사
	2007 FTA 활용박람회 (11.28~12.1, 서울 COEX)	신원, 로만손 등 3개사
	2007 국회 개성공단 제품 1일 판매전 (12.6,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	신원, 태성 등 7개사

또한 2007년에는 ‘2007 서울 국제 스포츠레저산업전(SPOEX)’ (서울, 2.28-3.3), ‘프리뷰인 상하이’ (중국, 3.26-29), ‘2007 국제유통산업전’ (서울, 5.23-26) 및 ‘프리뷰인 서울’ (서울, 9.4-6), ‘2007 부산 국제 신발·섬유패션전시회’ (부산, 11.29-12.1) 등 전년보다 더욱 다양한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하여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홍보하고, 판로 개척 활동을 펼쳤다.



2006년 중국 「프리뷰인 상하이」에 설치된 개성공단관



2007년 부산 국제 「신발·섬유패션전시회」에 설치된 개성공단관

## 제3절 출입·통관 지원

### 1. 출입 현황

#### 가. 인원 및 차량의 출입 절차

개성공단은 북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출입을 위해서는 비무장지대를 통과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 방문은 남북합의서인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2004년 1월 29일 합의)’,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2003년 1월 27일 합의)’,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2002년 12월 8일 합의)’와 우리측 법률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북측 법규인 ‘개성공업지구법’, ‘개성공업지구 출입체류거주 규정’, ‘개성공업지구 세관규정’ 등 남북의 여러 법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의 경우 출입증명서 신청(남측)→출입승인(북측)→방문증명서 발급(남측)→출입계획 제출(남측·북측)→개성공업지구 방문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차량은 수송장비운행 승인 신청(남측)→수송장비운행 승인(남측)→출입계획 제출(남측·북측)→통행차량증명서 발급(남측)→출발보고서 작성(남측)→개성공업지구 도착이라는 절차를 거친다.

정부와 관리위원회는 개성공단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복잡한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출입시간 및 출입 횟수 확대, 북측 군부의 출입검사 폐지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은 시범단지 및 본단지 1차 분양 기업의 본격 가동과 개성공단에 대한 대내외의 관심의 증가로 대폭 증대되었고 반출입 규모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아파트형 공장 가동, 본단지 2차 분양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부와 관리위원회는 전자출입체계(RFID) 등을 도입하고 북측

과의 협의를 통해 입주기업 관계자, 투자를 위한 방문자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개성공단에 출입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 나. 출입 현황 <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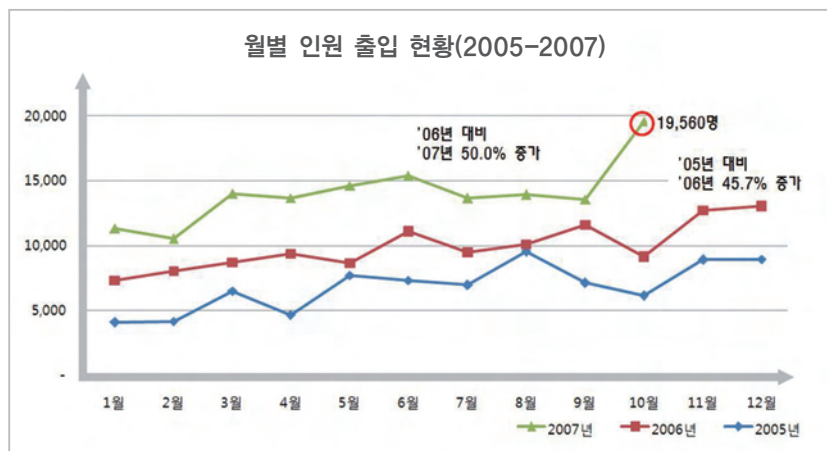
### 1) 인원 출입

개성공단 출입인원은 아래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입주기업의 본격가동 및 관심 고조에 따른 방문 증가 등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2005년도에는 연간 81,747명이 출입하였고, 2006년도에는 연간 119,105명이 출입하여 전년도 보다 45.7%의 증가율을 보였다.

2007년도 10월까지의 출입인원은 140,047명으로 2006년도 동기간의 93,364명 보다 50% 증가하였다. 2007년 10월까지의 출입인원은 2006년도 연간 출입인원 119,105명 보다도 17.6%를 초과하였는 바, 이는 개성공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증가 추세는 아파트형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본단지 2차 분양기업의 공장 착공과 가동이 시작되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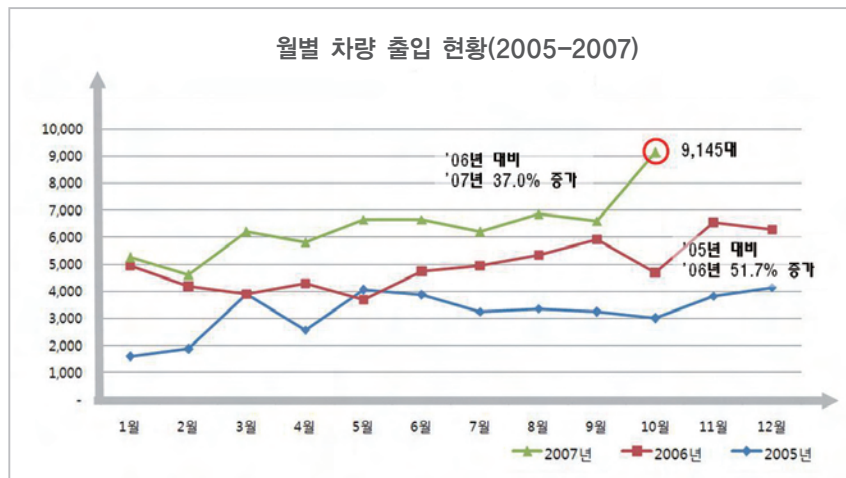
2)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은 개성공단 방문과 남측 지역 복귀를 각각 1회로 하여 산출

## 2) 차량 출입

개성공단 출입차량은 아래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출입인원과 마찬가지로 크게 늘고 있다.

2005년도에는 연간 38,825대가 출입하였고 2006년도에는 연간 59,611대가 출입하여 전년도에 비해 53.5%의 증가율을 보였다.

2007년 10월까지의 출입차량은 64,054대로 2006년도 동기간의 46,770대 보다 37% 증가하였다. 2007년 10월까지의 출입차량은 2006년도 연간 출입차량 59,611대 보다도 7.5%를 초과하였고, 인원의 왕래와 마찬가지로 개성공단의 생산활동이 확대될수록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 3) 외국인 출입

입주기업의 생산제품을 해외에 수출할 때는 상대국 바이어를 초청하여 현지 공장의 생산라인을 직접 확인토록 한 후에야 수출계약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외국인의 개성공단 현지 방문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외국기업이 개성공단 현지에 직접 투자하여 공장

을 건설하고 생산활동을 벌일 경우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 확보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성공단에 외국인이 처음 방문한 것은 2005년 6월이다. 입주기업의 생산제품 구매를 위해 바이어가 방문한 이후 투자자 및 잠재 투자자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2005년도 6월에서 12월 사이에 개성공단을 방문한 외국인은 49명이었으나 2006년에는 399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2007년에도 이어져 유럽지역 외국인을 중심으로 10월 까지 389명이 개성공단을 방문하였다.

#### 지역별 외국인 방문 현황

(단위: 명)

구분	아시아	유럽	미주 등	합계
2005년도	15	30	4	49
2006년도	126	102	171	399
2007년 10월	110	172	107	389
합계	251	304	282	837

### 다. 출입절차 개선

#### 1) 개선 내용

##### ① 초청장 신청·발급제도 일원화(2005년 4월)

초청장 신청주체가 관리위원회, 토지공사, 현대아산 등 각 기관별로 이루어져 혼란스러웠던 것을 2005년 4월부터 초청장 관련 업무를 관리위원회에서 전담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하였다.

##### ② 북측 군부의 인원검사 생략(2005년 10월)

군사분계선 출입계획에 따라 북측 군당국은 비무장지대 내 북측 통문

앞에서 출입인원에 대한 인적사항, 적재물자에 대한 세부검사를 실시하여 출입에 많은 불편을 끼쳤으나, 2005년 10월부터 북측 군부에서 세부검사를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출입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부분 단축되었다.

### ③ 출입경 횟수 확대(2006년 5월)

초기 개성공단 출입은 오전 입경 2회(09:30, 10:00), 오후 출경 2회(14:00, 16:30) 등 모두 4회로 제한되어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2006년 5월부터 입경 11회, 출경 10회 등 모두 21회, 2007년 4월부터 입경 12회, 출경 11회 등 모두 23회로 확대되어 입주기업 및 건설공사 관계자의 출입이 크게 개선되었다.

### ④ 북측 통행검사소 본격 가동(2006년 5월)

당초 북측 통행검사소 본 건물은 2005년 4월 건축을 시작하여 2005년 11월 준공되었으나 상당기간 가동을 하지 못하였다. 2006년 5월부터 통행검사소 본 건물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출입인원의 휴대물품에 대한 X-ray 검색대, 문형탐지기 운영 등이 가능해져 통관 검사시간이 상당히 단축되었다.

### ⑤ 초청장 제도 폐지(2006년 8월) 및 출입증·체류등록증 잠정 시행(2007년 3월)

당초 개성공단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서 발행한 초청장에 의해 출입이 이루어져 초청장 발급에 1개월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40여일까지 소요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2006년 8월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 및 건설공사 관계자 등에 대하여 초청장 제도를 폐지하였다.

그 대신 관리위원회의 출입증 발급업무가 시행될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출입국사업부의 포괄출입문건 제도로 전환하여 문건 발급이 10일 이내로



단축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현재는 잠정적으로 출입증, 체류등록증 및 거주 등록증(현재 체류·거주 등록증은 미시행) 신청을 통해 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건 발급은 북측과 협의를 통해 7일 안에 이루어지도록 단축하였다.

## 2) 향후 개선 방향

개성공단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통행과 통관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남과 북은 통행을 07부터 22시까지 하루 15시간 범위내에서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정부와 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정상간 합의를 기반으로 북측 관계당국,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출입국사업부, 군부, 통행검사소, 공업지구세관 등과 협의를 지속하여 출입·통관 절차를 더욱 편리하게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2. 물자 반출입 절차

개성공단의 물자 반출입은<sup>3)</sup> 남북 양측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북측은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및 ‘개성공업지구 세관규정’에 따라 ① 물자 반출입 신고 → ② 세관 검사·봉인 → ③ 통관 등 표준 3단계 통관절차를 수립·시행하고 있다.

우리측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법령 제정 없이 ‘관세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2006년 3월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및 통행차량통관에 관한 고시’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동 법규에 따라 개성공단으로 물자를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EDI<sup>4)</sup> 전

3) 남북간의 거래는 민족내부간 거래로서 국가간 거래인 ‘수출’, ‘수입’ 대신 ‘반출’, ‘반입’ 사용

산망을 통하여 세관에 반출입 신고를 하고, 세관은 신고된 물자에 대한 선택검사를 한 후 반출입이 이루어진다.

향후 입주기업 증가와 그에 따른 반출입물자 증가에 대비하여 전자출입체계(RFID)를 구축하여 광역물류망과 연계된 남북통합물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입주기업은 반출 1일 전(D-1일) 물자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위원회를 통해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반출 당일(D-day)에는 세관규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에서 출발지 현장(입주기업)을 방문하여 반출물품에 대한 물품검사를 마치고 봉인조치를 한 후, 반출제품을 적재한 차량이 통행검사소에 도착하면 세관에서는 봉인의 이상 유무만을 확인하고 통관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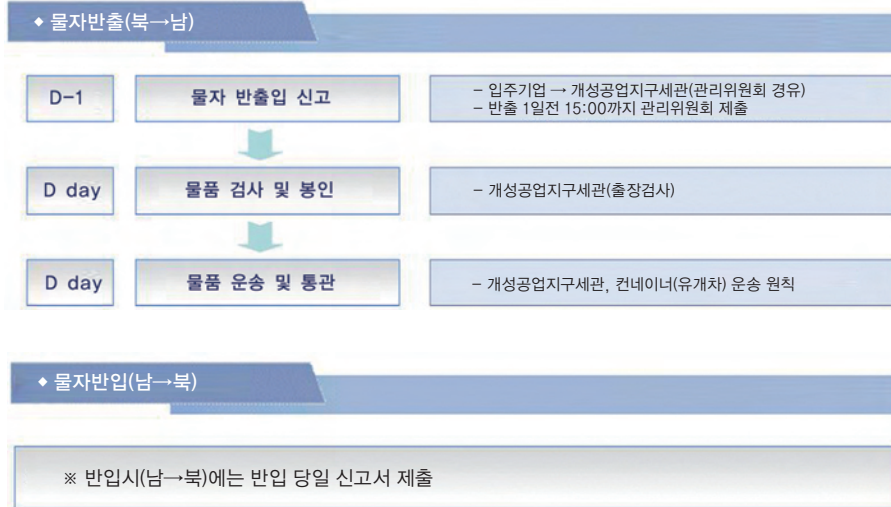
물자 반입의 경우에는 반입당시 통행검사소에서 물자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반입물품에 대한 세관검사는 도착지 현장(입주기업)에서 실시한다.

### 물자 반출입 절차(남측)



4)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 전자문서교환

## 물자 반출입 절차(북측)



개성공단 세관은 2006년 9월 관리위원회와 ‘개성공업지구 세관사업관련 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물자반출신고서 서식을 대폭 간소화하여 기존의 패키리스트(포장명세서)와 인보이스(가격신고서)를 폐지하고 ‘물자반출(입) 신고서’ 제출만으로 신고절차를 마치도록 하였다.

### 3. 전략물자관리

#### 가. 전략물자 개념

전략물자란 ‘대량살상무기 또는 무기의 제조·개발에 이용이 가능한 물자,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서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라 위험한 국가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전할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무역거래가 제한되는 물품 또는 기술’이다.

전략물자는 구체적으로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산업자원부 고시)에서 별표 3 내지 별표 7에 게시한 물품(물질, 시설과 장비 및 부품 포함),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말한다.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물품의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가 그 물품 등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도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상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미국의 수출통제체제, 즉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에 따라 미국산 제품, 기술, 소프트웨어가 10% 이상이 포함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 상무부의 재수출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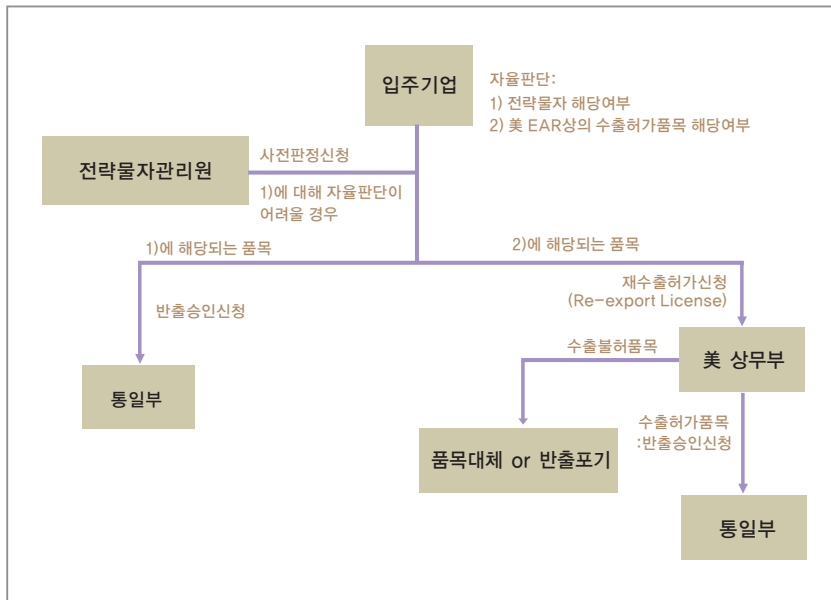
### 국제수출통제

		무기	관련 물품 및 기술
대량살상무기	핵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비확산조약 (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설립: 1970(한국가입: 1975), 회원국: 18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공급그룹 (원자력 비확산체제) (NSG: Nuclear Suppliers Group) ·설립: 1978(한국가입: 1995) ·회원국: 40개국</li> </ul>
	화학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무기금지협약 (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 ·설립: 1997(한국가입: 1998), 회원국: 15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그룹(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 (AG: Australia Group) ·설립: 1984(한국가입: 1996) ·회원국: 33개국</li> </ul>
	생물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설립: 1975(한국가입: 1987), 회원국: 146</li> </ul>	
	미사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설립: 1987(한국가입: 2001), 회원국: 33개국</li> </ul>	
재래식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세나르협정(WA: Wassenaar Arrangement) ·설립: 1996(한국가입: 1996), 회원국: 33개국</li> </ul>		

## 나. 전략물자관리

개성공단에 전략물자를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반시 제재 또한 동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 전략물자 반출심사과정



개성공단에 반입된 전략 물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서는 2004년 12월 ‘개성공업지구 주요물자 관리준칙’을 제정하여 전략물자 사후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먼저 관리위원회와 입주기업 간 유기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준칙 제5조에서는 관리담당자 지정·등록제를 규정하고 있다. 입주기업은 전략물자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된 기업의 관리담당자는 회사별 전략물자 관리대장을 비치해 수시로 전략물자의 이

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은 매월 10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전략물자 현황을 준칙에서 정하고 있는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위원회 관리담당자는 분기별 1회 이상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전략물자 관리 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관리위원회와 입주기업이 유기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개성공단에 반입된 전략 물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주요물자 관리준칙’ 과는 별도로 전략물자의 사전 확인의무, 반출승인 신청절차 및 기준, 사후관리 등을 정함으로써 전략물자 반출 및 사후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년 8월 24일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물자를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그 물자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둘째, 반출품의 기술수준과 군사적·외교적 민감성, 민간부문에서의 사용여부, 최종사용자와 최종사용자의 신뢰성 등을 반출승인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셋째, 전략물자반출 이후 10일 이내에 전략물자 반출결과보고서를 통일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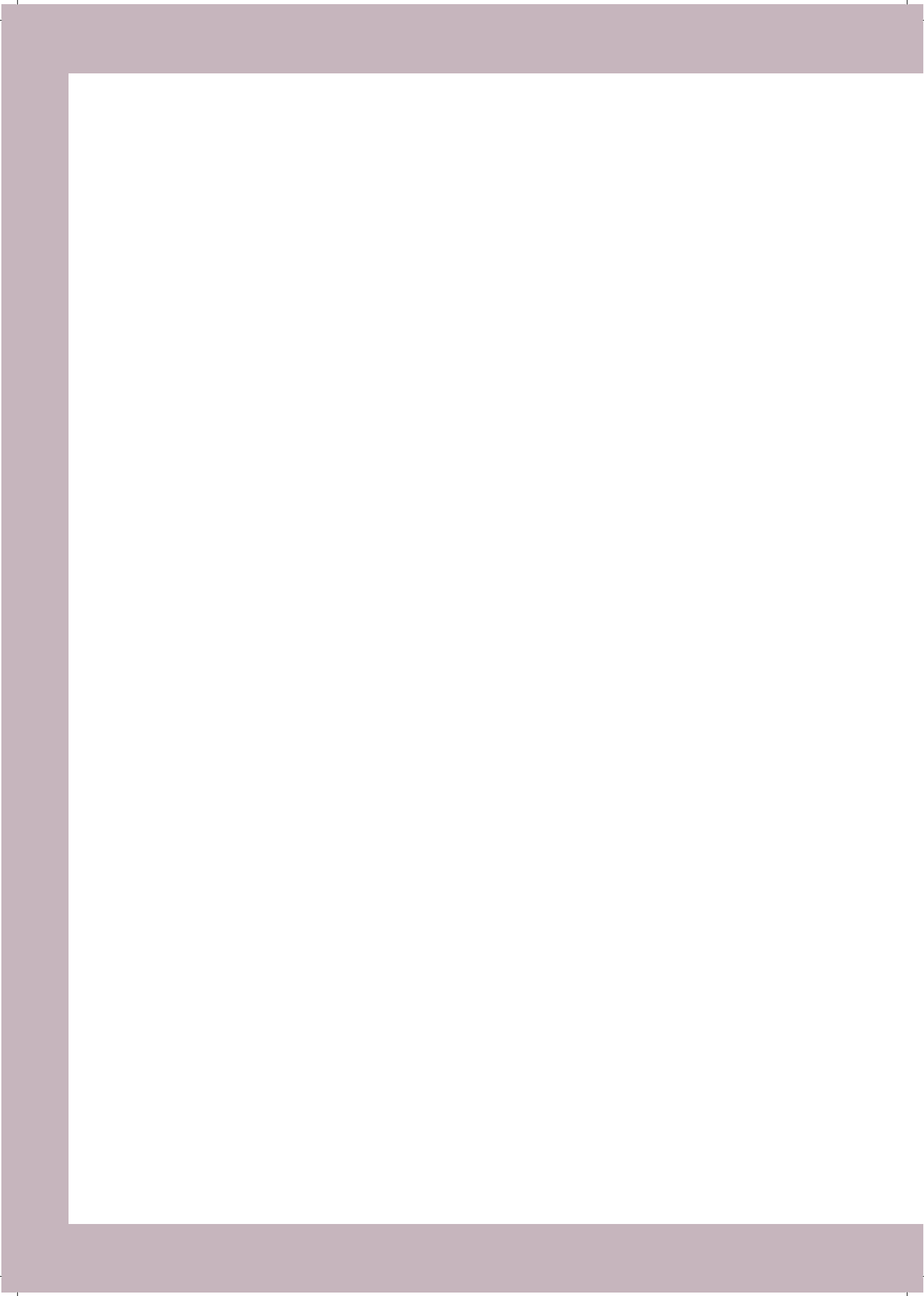


## 제5장 사업추진 및 지원 체계

- 제1절 남북 당국간 협의 체계
- 제2절 사업추진 및 지원 체계
- 제3절 관련법 지원 체계
- 제4절 홍보 및 관련 정보 지원

통일부장관 개성공단 방문  
(2007.1.24)





## 제5장 사업추진 및 지원 체계

---

### 제1절 남북 당국간 협의 체계

#### 1. 남북장관급회담

남북장관급회담은 2000년 7월 제1차 회담을 시작으로 2007년 8월말 현재까지 총 21차례 개최되었다.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사항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1년 9월 개최된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부터였다.

이후 대략 분기별로 한차례씩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은 개성공단 개발과 관련하여 큰 틀에서 협의를 하고 보다 구체적인 협의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혹은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다루었다.

남북 당국간 협의에서 남북은 2003년 6월 착공 이전에는 개성공단 착공을 위한 협의와 더불어 제도적 인프라 구축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였고, 착공 이후 2004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면서부터는 통행·통관 등 관련 제도 마련, 전력·통신 등 인프라 구축, 노무관리 등 입주기업 투자여

건 개선 문제 등에 중점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였다.

## 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제3차 및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의 합의를 기초로 남과 북 각기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남북경제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협의체이다. 2000년 12월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2007년 10월까지 총 13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협의된 개성공단 사업 관련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에서 협의해왔다.

## 3.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및 실무접촉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된 협의를 위해 각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을 책임자로 하여 3-5명으로 구성된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구성된 당국간 협의체이다. 개성공단건설실무접촉은 개성공단실무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구성한 회의체이다.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는 2002년 10월에 첫 회담을 개최한 이후 2007년 10월 현재까지 협의회 2차례, 실무접촉 3차례를 가진 바 있다.

또한 개성공단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은 주로 개발사업자와 북측간, 그리고 2004년 10월 이후에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측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게 되었다. 개발사업자 혹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간 협의·해결이 어렵거나 당국 차원에서 협의될 필요성이 있는 문제들은 남북장관급회담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당국간 회담에서 협의하였다. 특히 통행·통관 등 제도 개선 문제, 북측 근로 인력의 안정적인 충원 문제 등은 당국간 협의회가 필요한 사안들이었다.

## 제2절 사업추진 및 지원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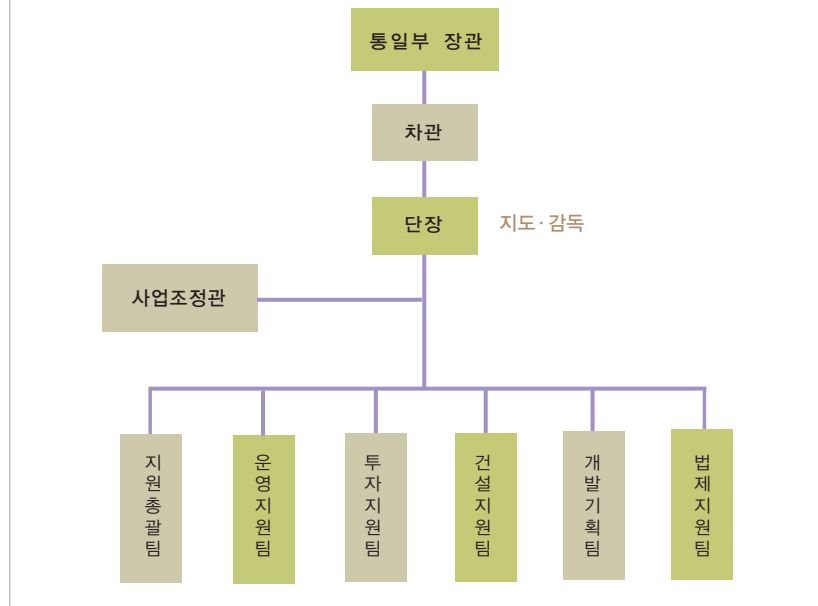
### 1. 개성공단사업지원단

2004년 10월 통일부의 산하조직으로 출범한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이하 ‘사업지원단’)은 통일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등 9개 정부부처 인원들로 구성되어 각 분야별로 개성공단 개발사업 승인·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 임무

- 개성공단 지원정책 수립 및 총괄 조정
-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
- 투자활성화 방안 강구 및 전력물자·원산지 관련 대책 수립
- 전력·통신, 용수시설 등 공단 인프라 구축

#### ▣ 조직기구



사업지원단은 개성공단 개발에 관한 행정 업무를 일원화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공단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반시설 건설 지원, 협력사업 승인 및 조정, 기업 운영 관련 각종 제도 마련, 통행·통관 등 출입제도 개선, 투자 유치 및 판로 지원 등 당면 업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개성공단 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기획 및 대책 수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필요로 함에 따라 개성공단 관련 개발사업자와 입주기업, 전문가,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전방위적 정책협의체를 형성하여 개성공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개성공단사업협의회, 입주기업지원기관협의회, 입주기업대표자간담회, 개성공단발전연구회 등이 개성공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협의체이다.

## 2.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입주기업들의 생산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10월 개성공단 현지에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가 설립되었다. 2005년 시범단지의 가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관리위원회는 기업창설 승인 및 등록, 영업허가,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토지이용권 및 건물등록, 기업 경영활동 지원, 기반시설 관리, 출입증명서 발급, 환경보호, 소방대책 등 개성공단의 종합적인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리위원회에는 2007년 10월 말 현재 위원장 1명, 감사 1명, 상근이사 1명, 기획조정실, 사업지원부, 공단관리부, 출입사업부, 협력부, 서울지사 등 1실 4부 1지사의 기구를 갖추고 모두 52명이 근무하고 있다. 협력부에는 5명의 북측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 관리위원회는 사무실로 개성공단 시범단지 인근에 부속건물을 포함 3,801㎡(1,150평) 규모의 임시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2009년 말 개성공단 중심부에 종합지원센터

가 완공되어 이 곳에 입주하게 되면 개성공단 관리기관으로서 온전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7년 12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설립하였다. 이 재단은 기존의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를 확대한 것으로 관리위원회의 남측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면 된다.

실제로 지원재단 이사장이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상근이사가 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어서 관리위원회와 지원재단은 동일한 기구라고 볼 수 있다.

### 3. 정책협의체 운영

#### 가. 개성공단사업협의회

개성공단 사업 추진과정에서 대두되는 각종 현안은 물론 중장기 발전과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한 정책협의체로 개성공단사업협의회를 2004년 10월부터 구성·운영하고 있다.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개발사업자인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 고위간부가 매월 정기적으로 개성공단의 원활한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2004년 10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07년 10월말까지 총 41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사업협의회에서는 기반시설 건설 등 개성공단 개발과 관련된 문제, 입주기업 투자여건 개선 문제, 대북 협의 사안, 각 기관간 조정이 필요한 사안 등 폭넓은 의제를 가지고 해결방향을 모색해 왔다.

협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는 그 때 그 때 각 기관간 협조를 거쳐 시행하고 사후 평가를 하는 등 개성공단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해 왔다.



## 나. 입주기업지원기관협의회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해 포괄적이고도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유관기관간에 입주기업지원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을 중심으로 재경부, 산자부, 중소기업청 등 중앙행정기관 4개, 산단공, 무역협회, 신용보증기금, 중진공 등 공공기관 14개 등 총 18개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2005년 5월 구성된 개성공단 입주기업지원기관협의회는 각 기관별 지원가능분야를 발굴하고 지원기관간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2006년 3월에는 개성공단에서 입주기업 대표자를 참여시킨 가운데 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각 기관별 지원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으며, ‘개성공단 민간금융 활성화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실시한 바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지원기관협의회 참여 기관

구분	기관명
정부(4)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유관기관(14)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KOTRA
	벤처기업협회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 다. 입주기업대표자 간담회

개성공단 사업은 분단 이후 최초로 북측 지역에 남북이 협력하여 산업 단지를 건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다. 개성공단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업 초기에는 입주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는 입주기업 대표자들과 수시로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왔다.

2004년 10월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이 창설된 이후 현재까지 입주기업과의 간담회는 약 30차례 정도 이루어졌다. 입주기업 간담회는 주로 사업지원단장이 주재하였으며, 통일부 장관과 차관이 주재하기도 하였다.

사업지원단은 입주기업들이 제기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해왔다. 또한 입주기업들이 제기하는 애로사항들은 북측의 조치도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남북간 각종 회담을 통해 북측에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전달하고 해결을 촉구해왔다.

기업들의 애로사항 중 대표적인 것은 이른바 3통 문제였다. 통행, 통관, 통신 등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여건들이 사업 초기에는 제대로 구축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는 2004년 사업 초기에 비해 여러모로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부는 입주기업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개성공단이 보다 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 라. 개성공단 포럼

개성공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각 분야 관련 전문가들의 상시적인 자문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2004년 8월 개성공단 포럼이 발족되었다. 총 33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개성공단 포럼은 학계, 각종 연구소, 개발사업자, 관리위원회 등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들과 실무

자들로 구성된 자발적인 조직으로, 정기·수시 정책자문을 통해 사업추진 전략 수립 등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후 2007년 1월 개성공단 포럼을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개성공단발전연구회로 확대 개편하고 분야별로 자문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 마.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

개성공단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와 공단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가 갖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 북측은 2002년 11월 27일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한 이후 2007년 말까지 모두 16개의 하위 규정을 제정하였다. 개성공업지구법의 위임에 따라 관리위원회도 2007년 말까지 부동산 등록준칙 등 공단 관리와 운영을 위한 37개의 사업준칙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개성공단사업은 유례없는 남북간 협력사업으로 항상 많은 법적 논쟁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법령의 제정, 개정, 해석 및 적용, 개성공단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법적인 문제에 대한 처리방향, 법적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만든 법률자문회의는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자문회의는 수시로 회의를 열어 개성공업지구법 및 하위규정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세부법령의 제정 및 개정, 각종 합의서 및 협상대책, 예상 법적분쟁의 처리방향에 대해 자문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 법제구축은 입주기업의 투자안정성 보장을 위해 기업 친화적인 법제도 마련에 초점을 두어 왔다. 향후에는 남북간 법제통합을 위한 중·장기적 차원의 법제구축 작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제3절 관련법 지원 체계

### 1. 북한 법체계

#### 가. 개성공업지구법

개성공단 기본법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이하 ‘개성공업지구법’)이다. 개성공업지구는, 사법권과 입법권을 부여받고 법률제도를 50년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북측 기관이 개입하지 않는 신의주 특별행정구와는 성격이 다르다. 개성공업지구는 오히려 자유경제무역지대인 나진·선봉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경제활동에 관하여 기존 북측법의 적용이 배제되고(제9조) 그 개발 및 운영이 사실상 남측 개발업자 및 관리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제10, 제24조 등)에서 나진·선봉과도 다소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개성공업지구는 공업지역 뿐만 아니라, 상업, 금융, 관광지역을 포함하며(제1, 제2조) 남측 및 해외동포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법인·개인·경제조직들도 투자할 수 있다(제3조). 지구의 사업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지도하에 공업지구관리기관이 담당하며(제5조), 관리기관은 개발업자가 추천하는 성원으로 구성된다(제24조). 개성공업지구법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공업지구 법규의 시행세칙 작성 권한을,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사업준칙 제정 권한을 부여하여(제22, 제25조) 일정한 범위에서 자치적인 입법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법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하여도 진전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투자재산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국유화를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수용할 경우에는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제7조), 신체·주거의 원칙적인 불가침(제8조), 외화의 자유로운 반출입(제44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나.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

2003년 4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02호로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이 제정된 이래 2007년 10월말 현재 모두 16개의 하위규정이 제정되어 기본법인 개성공업지구법을 보완하고 있다. 하위규정은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제정한다는 점에서 남측의 시행령과 같은 행정 입법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기본법인 개성공업지구법을 보완하는 법률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자유경제무역지대법, 라선경제무역지대법 등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입법형식을 채택한 바 있다.

## 다. 시행세칙과 사업준칙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성공업지구법은 중앙공업지도기관에 공업지구 법규의 시행세칙 작성 권한을, 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사업준칙 작성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기관은 2007년 10월말 현재 37개의 사업준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30여개의 사업준칙과 일부 하위규정에 대한 시행세칙을 협의 중에 있다.

관리기관의 사업준칙은 개성공단 사업 초기는 물론 현재까지도 개성공단 법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법 및 16개의 하위규정만으로는 개성공단에서 발생할 다양한 법적 문제를 규율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중국 심천의 경우에 수권입법권을 부여받은 이후 2004년 12월까지 152개의 법규, 165건의 규정이 제정된 사실과 비교하여 보면 개성공단의 법제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사업준칙은 이러한 법제도적 불비를 보완하고 북측이 제정하는 하위규정 및 시행세칙의 모델이 됨으로써 개성공단 법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준칙으로 규율되고 있는 중요 분야는 부동산등록 및 집행, 기업창설·운영, 지적·건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 및 사업준칙 목록(2007년 10월말 현재)

구분	명칭
개성공업지구법 및 하위규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 개성공업지구 출입, 체류, 거주규정 개성공업지구 세관규정 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규정 개성공업지구 광고규정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개성공업지구 기업채정규정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 개성공업지구 자동차관리규정 개성공업지구 환경보호규정
개성공업지구 사업준칙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준칙 개성공업지구 부동산등록준칙 개성공업지구 부동산집행준칙 개성공업지구 지적준칙 개성공업지구 토지계획 및 이용에 관한 준칙 개성공업지구 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 개성공업지구 건축준칙 개성공업지구 건축에 관한 세부지침 개성공업지구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세부지침 개성공업지구 건축물의 설비에 관한 세부지침 개성공업지구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에 관한 세부지침 개성공업지구 설계도서작성에 관한 세부지침 개성공업지구 가스안전관리준칙 개성공업지구 건설안전관리준칙 개성공업지구 노동안전준칙 개성공업지구 소방준칙 개성공업지구 전기안전관리준칙

구분	명칭
개성공업지구 사업준칙	개성공업지구 대기환경관리준칙
	개성공업지구 소음·진동관리준칙
	개성공업지구 수질환경관리준칙
	개성공업지구 식품위생 및 전염병예방준칙
	개성공업지구 폐기물관리준칙
	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준칙
	개성공업지구 광고준칙
	개성공업지구 야외광고물기준 세부지침
	개성공업지구 자동차등록준칙
	개성공업지구 자동차등록번호부여와 자동차등록번호판부착 및 봉인에 관한 세부지침
	개성공업지구 기업책임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준칙
	개성공업지구 석유판매업준칙
	개성공업지구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준칙
	개성공업지구 주요물자관리준칙
	개성공업지구 준칙 제·개정절차 및 공포에 관한 준칙
	개성공업지구 통계자료 등에 관한 준칙
	개성공업지구 기업회계 기준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 준칙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 기준
	개성공업지구 감정평가 기준

## 2. 남한 법체계

### 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간 경제협력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으로, 개성공단사업도 기본적으로는 이 법의 규율에 따라 추진되어 오고 있다.

교류협력법은 교역, 반출·반입, 협력사업 등을 정의하고, 남북한 왕래 절차, 물품 반출·반입의 승인,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의 승인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남



북한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거래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등 약 20개의 기존 법률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외국과의 통관·투자의 예에 따르되 이에 대한 특례를 두는 방식으로 남북간 교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및 통행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 등이 제정되어 남북간 투자 및 통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교류협력법과 같이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교류 협력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성공단 1단계 기반시설 건설 자금, 시범단지 입주기업의 운영자금, 기술교육센터·종합지원센터 건립자금 등이 이 법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되었다.

## 나.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은 제정 이래 수 차례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남북경협이 소규모 임가공 교역 위주로 진행되던 시절 제정된 법이어서 개성공단과 같이 대규모 직접 투자가 발생하고 북측 인원을 대량으로 고용하면서 상시적으로 물품·자본·인력이 이동하는 상황을 다루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원법’)이 2007년 5월 25일 제정되어 동년 8월 26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지원법은 국내공단에 준하여 개성공단에 기반시설,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제6조) 개성공단 내 현지기업에 대하여도 국내 기업지원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7조 내지 제10조). 이에 따라 개성공단 현지기업에 대하여도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자금, 산업안전·환경보전·에너지 이용합리화 등을 위한 자금·시설·기술 등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내 모기업이 받은 남북협력기금 대출금에 대해 개성공단 현지기업으로의 차주

전환이 가능하게 근거를 마련하였으며(제11조), 개성공단 투자의 경우에도 국내에 투자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자자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혜택의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령이 정하도록 하였다(제16조).

민족내부거래의 취지에 맞게 왕래 및 교역 절차 간소화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17조) 현지기업에 고용된 남측 근로자에게도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과 근로기준법 등 근로보호의 기본법률을 적용토록 하여(제13조 내지 제15조) 국내에 준하는 근로자 보호가 가능해졌다.

공단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기관을 정비하여, 정부 내 각 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두었으며(제4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신설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관리기관의 각종 증명 발급 및 민원 업무 대행,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의 시행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제19조).

#### 개성공업지구 지원법(2007.5.25) 요지

- 공단개발 지원
  - 국내공단에 준하여 개성공단 개발에 대해 기반시설, 자금 등을 지원(6조)
- 현지기업 및 투자자 지원
  - 남측 주민이 투자한 개성공단 내 현지기업에게 국내 기업지원제도 적용(7조 내지 10조)
  - 현지기업에 남북협력기금 직접 대출 허용 및 개성공단에 투자한 남측 주민에게 조세 감면 혜택 부여(11조, 16조)
- 근로자 보호
  - 현지기업에 고용된 남측 근로자에게 국내 4대 보험 적용(13조)
  - 현지기업에 고용된 남측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근로보호의 기본법률 적용(15조)
  - 개성공단 내 병원에서 남측 근로자에 대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실시(14조)

□ 공단개발사업 관련 각종 기관 등 정비

- 공단 개발과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해 정부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대책협의회 구성·운영(4조)
-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의 법인격을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공무원·민간전문가 파견 및 자금·물품 등 지원의 근거 마련(18조 및 20조)
- 민법상 사단법인인 지원협회를 공법인인 지원재단으로 변경(19조 및 부칙 2조)

### 3. 남북간 합의서

#### 가. 4대 경협 합의서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남북 당국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2000년 12월 남북 '4대 경협 합의서' 를 채택하였는데, 이 합의서는 국회의 비준동의절차를 거쳐 2003년 8월 20일 문본이 교환·발효됨으로써 남북 경협의 법제도적 기초가 되었다. 4대 경협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 투자한 자산이 법령에 따라 보호되고 상대방 당국에 의해 수용되거나 제한되지 않음을 천명하며(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쌍방이 이중과세를 하지 않기로 하고(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 경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며(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 청산결제방식의 대금결제를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 개성공단 사업과 같은 본격적인 경협에 앞서 선결되어야 할 주요한 법제도적 문제들을 해결하였다고 할 수 있다.

## 나. 개성공단 관련 합의서 및 기타 합의서

4대 경협 합의서 외에도 개성공단 사업 및 남북 경협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통신, 검역, 도로운행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남북간 합의서가 채택·발효되었다. 이 중 2004년 1월 29일 채택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는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남북간 각종 합의서에 따르면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해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출입·체류공동위원회, 남북도로운영공동위원회 등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운영되고 있지 않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 개성공업지구 관련 합의서 목록(2007년 10월말 현재)

구분	명칭
개성공업지구 관련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4대 경협 합의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기타관련 합의서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 제4절 홍보 및 관련 정보 지원

### 1. 개성공단 방문행사

개성공단 사업은 기업의 입주 등 국민 참여가 절실한 사업이었기에 개성공단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것은 공단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였다. 아울러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공단으로 발전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조를 확보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였다.

개성공단 사업은 대규모 남북경제협력사업으로서 무엇보다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한 사업이다. 국민들은 개성공단 제품의 소비자들이며 우리 기업은 개성공단의 투자자들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개성공단의 필요성과 현황을 제대로 알려 이해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국민들에게 개성공단을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개성공단 방문행사를 실시하였다.

2005년 개성공단 방문 행사를 시작한 이래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이 개성공단을 직접 시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007년 10월 말 현재까지 누적 방문자 수는 17만 832명이며 이 중 외국인은 837명이었다. 2005년은 준공식 또는 각종 행사참석 방문 위주였으나, 2006년 이후 각종 투자시찰단, 국회 각종 위원회, 국무위원 등 정관계, 학계, 문화예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전개해 왔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해외언론 기획취재를 허용한 2006년부터 정부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미국 공영방송인 PBS 등 많은 해외언론의 개성공단 방문·취재를 지원하여 국제사회에 개성공단의 가치를 널리 알렸다. 또한 미국 내 여론주도층 및 행정부 인사들을 직접 방문(2006. 4.17-21)하여 사업의 의미와 현황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2006년 하반기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어려운 상황도 있었

으나 정부는 개성공단 건설의 필요성과 현황을 국내외에 차분히 알리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2006년 12월 맥더못(Jim McDermott) 의원 등 미 하원의원 일행의 방문을 시작으로, 2007년 페리(William Perry) 전 미 국방장관,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소속 외국 기업인, 핀즈(Kinga Göncz) 헝가리 외교장관 등 외국 주요 인사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하였다.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은 2007년 2월 22일 개성공단 방문시 “개성공단 프로젝트는 한반도의 미래”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연합통신, 2월 22일자) 페리 전 국방장관은 특히 북측 관계자에게도 “당신들은 (미래의) 개척자”라고 강조한 후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고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국정브리핑, 2월 22일자)

페리 전 미 국방장관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을 방문했던 많은 외국 인사들의 방문 소감을 통해 국내외에 개성공단의 긍정적인 모습이 폭넓게 확산되었다.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미래상이며 비무장지대는 한반도의 현실”  
“시작이 반이며 개성공단은 남북의 희망적 미래다”



유럽연합 의회 의원 일행 방문(2006.10.30)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소속 기업인 방문(2007.3.14)

개성공단에 대해 반신반의했던 외국 인사들도 개성공단 방문 후 긍정적인 평가를 쏟아내고 있다. 개성공단은 사상과 제도의 장벽을 넘어 마음을 움직이고 한반도에서 희망의 미래를 보게 만드는 ‘힘’이 있다.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개성공단의 존재 자체가 많은 외국인 방문 인사들에게는 놀라움이며 한반도가 지향해 나가야 할 미래로 인식되고 있다.

개성공단 방문 외국인 수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49명, 2006년 399명, 2007년 10월 말 현재 389명의 외국인 인사가 개성공단을 방문하였다. 2005년 외국인 방문은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기업인들이 전부였는데 비해 2006년에는 연초부터 외신기자단 50여명의 방문을 비롯하여 미국 민주당 맥더못 하원의원 등 미국 의회의원 및 보좌관, 버시바우(Alexander Vershbow) 주한 미국 대사, 호이네스(Paul Hoiness) 주한 덴마크 대사, 아세안 FTA 협상단, 유럽연합 의회 및 집행위원회 등 총 399명의 외국인이 개성공단을 방문하였다. 또한 2007년에는 페리 전 미 국방장관 일행을 비롯해 무디스·피치 등 국제신용평가기관 관계자,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소속 기업인, 국제기자연맹, 미하원의원 보좌관, 퀴즈 헝가리 외교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하였다.



특히 외국 각료, 의원 등 의회 관계자, 국제신용평가기관 관계자 등 여론 주도층 및 주요 외국 인사들의 공단 방문은 홍보 파급 효과가 크므로 2007년부터 관계부처의 도움을 받아 이들의 방문을 적극적으로 주선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4월 곤쯔 헝가리 외교장관이 외국 현직 각료로는 처음으로 방문한 데 이어 6월에는 여(George Yong-Boon Yeo) 싱가포르 외교장관이 현지를 방문했다.

무디스·피치 등 국제신용평가기관 관계자의 개성공단 방문도 전략적인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대외 신인도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에는 다국적 기업 고위 관계자의 개성공단 방문도 이루어지는 등 외국 기업들도 개성공단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김벌리 클라크사의 포크(Thomas Falk) 회장이 지난 2월 개성공단을 방문한 바 있으며, 화이자 제약의 킨들러(Jeffrey B. Kindler) 회장은 지난 6월 개성공단을 방문하였다.

## 2. 미국 방문 설명회

정부는 2004년과 2005년에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미국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수차례의 실무 협의를 벌였다. 특히 2005년에는 미국 국무부, 상무부 등을 방문(2005.7.20-23)하여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른 수출통제품목의 개성공단 반출 문제를 협의하였다.

이러한 정부 및 해당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2005년 11월 KT가 개성공단 전화 개설을 위한 통신장비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는 등 전략물자 반출을 위한 미국측의 긍정적 협조를 끌어낼 수 있었다.

2006년에는 미국 내 주요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개성공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지지 확대를 위해 ‘방미 개성공단 설명회’(2006.4.17-21, 워싱턴)를 개최하였다. 오버도퍼(Don Oberdorfer) 교수, 디트라니(Joseph

Ditrani) 대사 등 150여명의 미국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 한국경제연구소(KEI)에서 개최된 개성공단 토론회에서 정부는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수준·근로 환경 등 현황, 사업의 정치·경제적 의미, 북한 경제발전에서의 기여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어 미국 의회 조사국(CRS) 및 의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현황 및 전략물자 통제체제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미국 국무부, 상무부 관계자 등과의 면담을 통해 개성공단 전자출입체제(RFID)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장비 반출 관련 협조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2006년 12월에 전자출입체제(RFID) 시스템 구축 사업시행자인 에스원도 관련 장비에 대해 미국 상무부로부터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른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정부가 추진해 온 미국과의 개성공단 실무협의 및 ‘방미 개성공단 설명회’는 미국내에서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긍정적 관심과 협조를 확보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개성공단의 발전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각종 협의 및 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3. 관련 정보 지원

정부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개성공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에 ‘오늘의 개성공단’이라는 코너를 마련하여, 개성공단 관련 주요소식, 투자정보, 통계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여론주도층 및 개성공단 방문 인사 등을 대상으로 ‘개성공단 뉴스레터’(국·영문 웹진)를 발송하여 지속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개성공단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 가. 홈페이지·블로그 홍보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의 ‘오늘의 개성공단’ 코너를 통해 개성공단 관련 주요소식, 법제도 관련 안내, 투자정보, 통계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주요소식’에는 각종 개성공단 관련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안내, 국내외 인사 개성공단 방문 결과, 입주기업 지원제도 등이 소개되고 있다. ‘법·제도’에는 개성공단 관련 법규 및 남북합의서 등이 게재되고 있다. ‘투자정보’에는 투자지원 제도, 판로 등 개성공단 투자 관련 자료 등이 소개되고 있다. ‘통계’에는 개성공단 생산 및 수출 현황, 근로자 현황에 대한 상세한 월별 통계가 제공된다.

아울러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블로그(<http://blog.naver.com/unigaeseong>)를 통해 개성공단 사업 추진경과 및 현황, 국내외 주요 인사 개성공단 방문 사진, 관련 언론 보도 등을 소개하고 있다. 기존의 딱딱한 이미지의 정부홈페이지와 달리 부담없고 친근한 형태로 국민들의 정보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자 제작된 사업지원단 블로그는 2006년 6월 개설 이후 2007년 10월말까지 총 11만 5,159명이 방문하는 등 네티즌들의 높은 관심 속에 운영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도 입주기업 대상 정보 제공 및 개성공단 홍보를 위해 2004년 11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kidmac.com](http://www.kidmac.com))를 구축했다. 관리위원회 홈페이지는 개성공업지구가 크게 홍보되지 않았던 개발 초기 단계에서 국내에 개성공업지구를 알리고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했다.

2007년 1단계 분양이 완료되고 기반시설이 완공되는 등 공업지구가 제 모습을 갖춰가면서 관리위원회 홈페이지도 2007년 9월 입주기업을 위한 온라인민원 기능 강화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개편을 실시했다. 또한 영문 홈페이지를 신규로 제작해 외국인 투자유치와 해외 홍보 기능을 강화했다.

## 통일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홈](#) | [사이트맵](#) | [연락처](#) | [언어/접근성](#) | [사이트맵](#)

통일부 소식
통일부 소개

[통일부 생생뉴스](#) | [오늘의 주요기사](#) | [장관동정](#) | [공지사항](#) | [정책소식](#) | [업무혁신](#) | [정책고객서비스](#)

[로그인](#) | [회원가입](#) | [이디\(아이디\)관리](#)

새시장을 꿈꾸는 아이는 손을  
**뜨겁게!**



국립어린이과학관, 중학교에서 바나나

**통일부 장관, 국교장래 위업**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9월 12일 17일 연임을 뒤.

**장관과의 대화**  
통일부 장관 2단계 개발 속담, 자금 조 사 학습

**통일부 장관, 국교장래 위업**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9월 12일 17일 연임을 뒤.

**장관과의 대화**  
통일부 장관 2단계 개발 속담, 자금 조 사 학습

**통일부 장관, 국교장래 위업**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9월 12일 17일 연임을 뒤.

**장관과의 대화**  
통일부 장관 2단계 개발 속담, 자금 조 사 학습

**107년 통일부 홍보영상**  
"2007 남북정상회담" 편

11일 윤상현과 박승희 장관의 사이 18.5m 구간에서 전통차를 포함한 12명의 화물열차가 매일 1회씩 정기출발을 시작한다. 2009년 7월 남북이 합의한 철도 연결에 합의한 이후 7년 5.

**통일부 생생뉴스**

**통일교육 발전에 기여한 업무유공자 통일부장관 표창**  
대상인원은 10명(내외 8, 단체 2)  
통일교육정책연구소 민간통일교육단체협의회협의회 회장 7주년(07.12.22)를 맞아 통일교육 발전에 기여한 업무유공자를 발굴하

**2007년 청소년 통일교육 실시결과**  
총 21개교 4,277명 통일교육 실시  
교육 후 설문조사 결과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83.7%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이러한 청소년 통일교육에 학생들의 인식변화에 상

**통일부 생생뉴스** 제4차 남북회담본부 정책자문회의 결과

**NGO 커뮤니티**

- 2007년 북한협 워크숍 안내. 2007-12-11
- 통대복지회, 남북 장애인 교류의 중요성 강조. 2007-12-11
- 남북나눔 - 남북장애인들의 이후의 인도적 대책지. 2007-10-29

**오늘의 주요기사** | **보도자료** | **전문보도자료**

- 2007-12-18 | 제2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등.
- 2007-12-17 | 주간 주요일정(12.17).
- 2007-12-13 | 경공업 참가자 대가 상환 실무협의 등.
- 2007-12-12 | 제7차 남북경상군사회담 개최 등.
- 2007-12-10 | 금주(12.10) 주간 주요일정.

**오늘의 개성공단** | **주요소식** | **법제도** | **투자정보** | **통계**

- ☞ 여기는 개성 출생공단 2단계 개발 학습의 계 2007-12-18
- ☞ 여기는 개성 출생공단 영문 뉴스레터 제31호 2007-12-14
- ☞ Prime Minister Han, Duck Soo Welts Gaegeong 2007-12-14

**소통과 참여**

**통일문제 전문가포럼**  
**평화변영 초석 될 남북열차.**  
1991년 5월 12일 영의선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그로부터 반 세기가 넘는 시간이 흘렀다. 두국도 그렇게 오랫동안 열차가 행선 지 없었으니 생각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허리가 굽은 영의선은 분단의 긴 세월과 함께 한 화고, 끊어진 철길을 우리에게 분단과 전쟁, 불신과 대결의 상징이었다. 2007-12-11

**백신개발기**  
**오! 배로 나왔구나, 그러곤 금강대.**  
미국 금강산에 가보지 못했는지라 이번 기회에 내금강을 볼 수 있어 이말 때 소 용 날차들 잡아 놓은 학생 마냥 가슴을 가득잡고 울음으로 보냈다. 2007-11-29

**통일부소식**  
**한반도 평화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금강산 관광사업, 재지되어서는 ..**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중단 이후 한반도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열려갔다. 그 변화기에 맞추어 일각에서는 북한 핵실험 위험을 다루는 것이나 한반도간 인 공강산 관광 사업을 중시시켜 건강 증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7-09-21

**뜨겁게는 공개뉴스!**  
일찍부터 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사이터네 검색** | **검색**

**NAVER** 부서블로그  
**대단부시**를 선택하세요

**멀티미디어 자료실**

- UN UCC
- 출판물영상
- 정책영상
- 포토갤러리

**최근 통일부에 대한 오해에 관하여**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2008 ~ 2012**

**통일정책**

- ▶ 77년 통일부 북한국 목표
- ▶ 평화양성정책
- ▶ 통일부 핵심정책

**정보공개** | **국회정보공개**

**오늘의 공강산**

- 관광산현상
- 주요소식
- 금강산통계

**북한 현황**

- 북한주요소식
- 북한변동사항
- 북한정보자료

**통일부 주간일정**

**12월 23 24 25 26 27 28 29**

**통일서포터즈**

**신문전면 방문 견학**

**Today** 68 | **Yesterday** 638  
**Total** 7,724,303

**뜨겁게는 공개뉴스!**  
 일찍부터 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개편된 국문 홈페이지는 △투자안내를 중심으로 한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업무 소개를 중심으로 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입주기업 민원을 위한 온라인민원, △개성공업지구 현지 소식과 보도자료, 자주하는 질문 등을 중심으로 한 열린마당 등을 주메뉴로 하고 있다.

2007년 10월말 현재 홈페이지 하루 평균 방문자수는 432명, 누적 방문자수는 86만 9,451명에 이르며, 개성공단과 관리위원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민원업무를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 나. 개성공단 뉴스레터

개성공단 뉴스레터는 웹진으로서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이 국내외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main page of the Kaesong Industrial District Management Committee websit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four tabs: '개성공업지구' (Kaesong Industrial District), '온라인민원' (Online Services), '열린마당' (Open Forum), and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Kaesong Industrial District Management Committee). Below the navigation bar, there is a search box and a '로그인' (Login) button.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large banner with a hand holding a globe and a plant growing on it, with the text '민족(공)동(민)영의 새희망 개성공업지구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New hope for the nation (public) and people's joint Kaesong Industrial District. Welcome to you). Below the banner, there is a '공지사항' (Notice) section with a list of news items and a 'KIDMAC GALLERY' section. The footer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ommittee and copyright notice.

여론주도층 및 개성공단 방문 인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발송하고 있다. 주로 국내외 주요 인사 개성공단 방문 소식 및 투자 관련 정보 등이 게재된다.

개성공단 국문 뉴스레터는 2006년 2월 창간 이래 국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2007년 10월말까지 총 52건의 자료가 발송되었다. 국내 정책고객은 총 711명으로서 행정부, 학계, 언론 등의 주요 인사 및 개성공단 방문 인사들이다. 개성공단 영문 뉴스레터는 2007년 1월 창간 이래 외국인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2007년 10월 말까지 총 55건의 자료가 발송되었다. 외국인 정책고객은 총 679명으로서 각국 행정부, 의회, 언론계, 학계, 언론(외신기자단 포함) 및 개성공단 방문 외국인 인사들이다.

주간 단위로 발송되고 있는 개성공단 영문 뉴스레터는 정부 부처 중에서도 선도적인 사례로서 개성공단사업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협조를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부는 해외 투자 유치 및 판로 확보 등을 위해 외국 기업인 및 재외 동포 기업인에게도 개성공단 영문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다.

#### 다. 관련 자료 발간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 개요 및 투자 환경을 널리 알리고자 2006년 10월 개성공단사업 안내책자인 ‘개성공단 길라잡이’를 발간한 바 있다. 이어 2007년 3월 개정판을 발간하고 관계 부처, 입주기업, 경제단체,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등에 배포하였다. 특히 개성공단 1단계 2차 분양 관련 각종 설명회시 투자 희망 기업들에게 배포되어 개성공단 투자 안내서로서 활용되기도 하였다. ‘개성공단 길라잡이’는 국민들이 개성공단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일부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다. 또한 정부는 ‘개성공단 관련 한-미 FTA협상 결과’ 등과 같은 현안별 설명자료를 관계 부처, 입주기업 및 투자 관심 기업들에게 배포(2007년 4월)한 바 있다.



## 라. 언론 홍보

정부는 개성공단사업 현황 및 성과를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기 위해 다양한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였다. 우선 한-미 FTA 협상 타결(2007년 4월), 개성공단 1단계 2차분양(2007년 4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2007년 5월) 등 각종 현안에 대해 기자단에게 적기에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해왔다. 보도자료는 통일부 등록 기자단에게 배포함은 물론 통일부 홈페이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블로그에도 게재되었다.

정부는 국내외 언론사의 개성공단 현지 기획 취재를 적극 추진하여 개성공단 추진 현황 및 성과를 국민들에게 자세히 전하고자 노력하였다. 북측과의 당국간 실무 협의시 개성공단 언론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언론사 개성공단 방문 취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07년에는 언론사 최초의 개성공단 숙박 취재, 방송사 최초 방문 취재 및 북측 근로자 인터뷰(MBC 주말 뉴스데스크, 5.22) 등이 이뤄진 바 있다.



미국 PBS 방송국 관계자가 개성공단을 방문(2006.6.13)하여 휴식 시간에 여가 활동을 하고 있는 북측 근로자들을 취재하는 모습



특히 2006년 이후 미국 공영방송 PBS, NBC 등 전국 네트워크 방송사의 개성공단 현지 취재를 지원하여 국제사회에 개성공단의 실상과 가능성을 알리는 데 기여한 바 있다. 이외에도 캐나다 NFB 방송국, 핀란드 공영방송 YLE TV1 등의 현지 취재를 지원하였다. 또한 외국 주요 인사 및 투자시찰단의 개성공단 방문시 워싱턴 포스트, 파이낸셜 타임즈, 로이터 통신, 르 피가로 등 세계 유수 언론의 동행 취재를 지원하였다. 향후에도 정부는 국내외 언론사들의 개성공단 취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인터뷰: 조명균 | 대통령비서실 안보정책비서관/전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단장
- 대 답: 이종현 |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사무관

| 이종현 | 초기 개성공단의 착공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고, 보람을 느낀 점은 어떤 점이었습니다니까?

| 조명균 | 개성공단은 북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바로 통행 및 신변안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북한은 자신의 영토를 열어주는데 대한 우려가 있었고, 우리는 우리대로 북한 지역 내에서의 우리 인원에 대한 출입과 신변안전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험제도실무협의회 등 여러 회담채널을 통해 많은 회의를 가졌으나, 북한은 개성공단이 북한 지역인 만큼 북한법을 적용하겠다고 고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측 인원이 북한 법규에 따라 처벌받는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자산에 대한 보호와 안전에 대한 보장이 완전하지 않다면 개성공단에 투자할 기업인이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을 성공시켜야겠다는 대원칙에 따라 남측 인원의 신변 안전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4년 1월 29일 마침내 '개성·금강산지구 출입·체류 합의서'가 채택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남북 당국 및 사업자간에 1단계 착공식 일정을 수차례 합의하였지만 여러 문제로 인해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개성공단 착공식이 2003년 6월 30일 마침내 개최되었을 때, 저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사업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큰 보람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종현 | 개성공단이 국가경제 발전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명균 | 개성공단 사업은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중소기업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국내에서의 경영여건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외투자도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선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게는 많은 모험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에서는 말이 통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근로자와 관리자가 서로 문화적으로 적응하는데에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개성공단이 개발됨으로써 우리 중소기업들은 투자위험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종현 | 개성공단이 남북관계 발전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명균 | 개성공단은 남북공동 번영을 위한 경협사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측의 중소기업에 활로를 제공해주고 북측의 경제난 해소에도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남북 상생의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7년 11월말 기준으로 우리 기업들은 북측 근

로자 약 2만 2,000명을 고용하여 2억 5,000만달러 상당의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남북 모두에 경제적 실익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성공단사업을 통해서 북한이 상대적으로 높은 남측의 기술과 경영기법을 습득한다면 이는 향후 북한의 경제 재건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개발은 경제를 통해 냉전을 뛰어넘는 평화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성은 남북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개성공단으로의 인원과 물자의 왕래는 군사적 긴장완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일평균 433명의 인원과 204대의 차량이 남북을 왕래하고 있습니다. 비무장 지대를 넘나드는데 아직 불편한 점이 남아있지만 북측도 이러한 인원, 차량, 물자의 이동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협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들을 종합해 볼 때 개성공단 개발을 통해 남북관계가 앞으로도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이종현 | 개성공단의 향후 비전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 조명균 |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10년 경에는 450여개 기업이 북측 근로자 10만 여명을 고용하여, 연간 약 10억~20억달러 상당의 제품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입주 수요와 공급 규모 등을 감안하여 2단

계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성공단 성공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남북 양측에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 사업의 모범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남측 기업에게는 새로운 투자처와 기회를 제공하고, 북측에게도 충분히 경제재건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감과 경험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해주, 남포, 안변 등의 협력단지 개발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개성공단을 통해 '평화를 위한 경제' 그리고 '경제를 위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성공단 성공이라는 작은 씨앗 하나가 자라나서 장차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이라는 큰 결실을 맺을 것이며, 더 나아가 민족의 영원인 통일을 이룩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 제6장 개성공단의 성과와 미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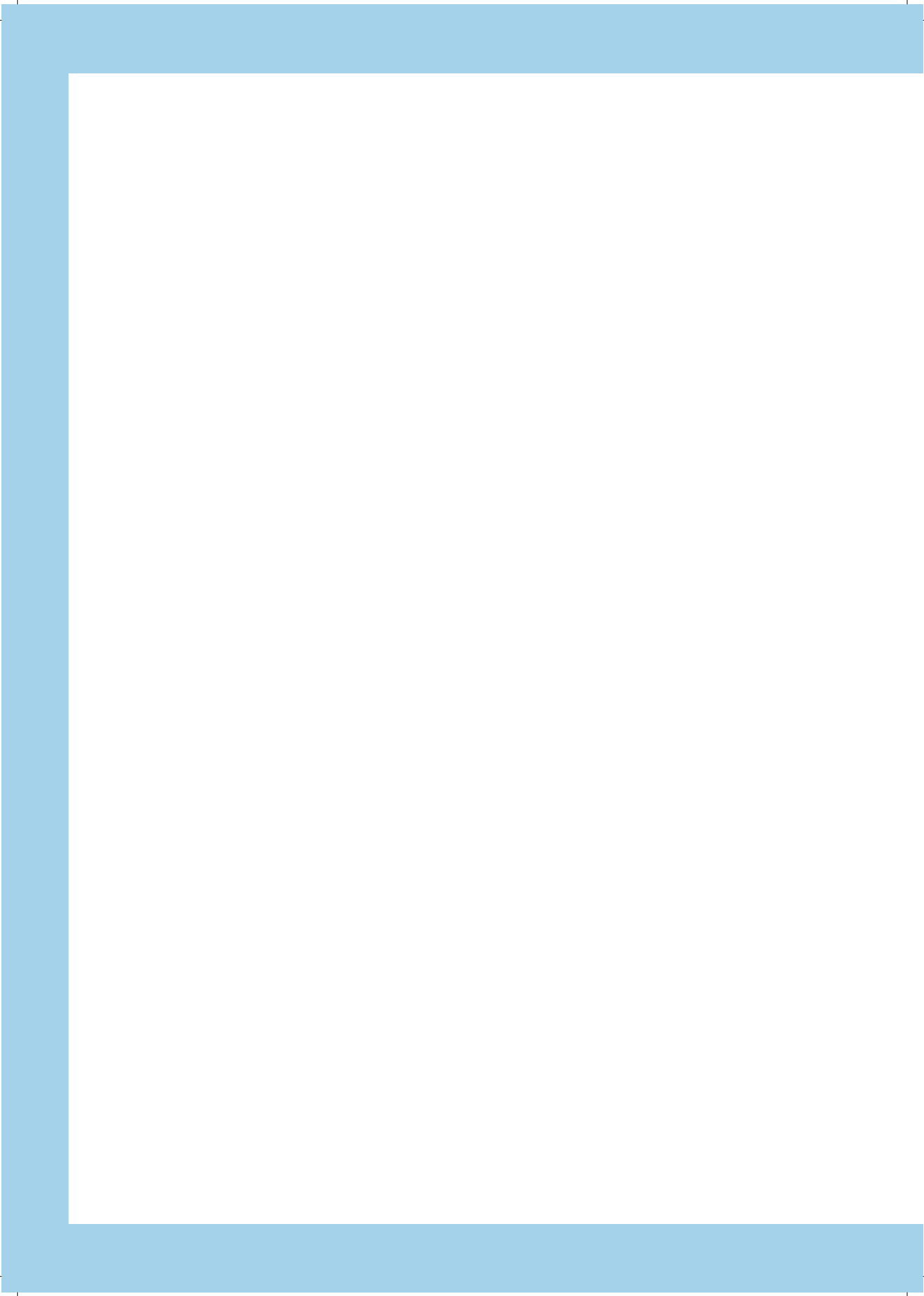
제1절 개성공단 사업의 성과

제2절 개성공단의 미래



개성공단 생산 현장





## 제6장 개성공단의 성과와 미래

---

### 제1절 개성공단 사업의 성과

#### 1. 남북 상생의 경험 모델 창출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문 가운데 가장 눈에 들어오는 내용 중의 하나는 개성공단 관련 사항이다. 그 이유는 당장 실현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일 것이다. 여타 합의사항들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남북간에 많은 논의가 필요한 반면, 개성공단 관련 사항은 이미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1단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2단계 사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 추진된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에서 개성공단 만큼 성공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2007년 11월말 현재 약 2만명 이상의 북측 근로자들이 남측 기업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다. 공단에서의 생산규모는 2억달러를 상회한다.

개성공단 사업은 처음으로 시작되는 진정한 의미의 남북 상생의 경험 모델이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의 참여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호혜적인 경제프로젝트이다. 개성공단에서는 자본과 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이 북측의 토지와 인력을 활용하여 재화를 생산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높은 임금과 공장부지 비용 등 고비용 문제에 직면한 국내 중소기업에게 경제적 활로를 제공한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첨단시설의 공단을 개발하고, 동시에 수만명의 근로자들이 기술을 익히고,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취업 기회가 마련되는 이점이 있다. 북한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세계시장에서 통용되는 수출상품을 직접 만들어 보고, 기업의 운영방식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또한 향후 북한이 여러 지역에 수출공단을 건설할 경우 남북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공단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각종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이미 남북이 함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공단 개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적합한 사례가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도 개성공단 모델을 주목할 필요도 있다.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합작공단을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가 남북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성공단은 동북아 시대의 도래를 맞이하여 한반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동북아 시대에는 중국과 일본의 경제력 확대 및 러시아의 부활이라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입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복합적인 경쟁력을 지닌 지역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금융허브로서의 서울, 물류허브로서의 인천, 생산허브로서의 개성은 삼위일체형 지역개발을 가능케 한다. 나아가 동북아지역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지역으로 발돋움하는데 개성공단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고 할 것이다.

## 2. 개성공단의 경쟁력 확보

개성공단이 지닌 으뜸 경쟁력은 노동력이다. 남북경협을 추진할 경우 남측이 상대적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자본 및 기술과 북측이 상대적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 노동 및 토지를 결합하여 남북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북측의 노동력은 인건비에 비해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질적인 측면에서 북측 노동력의 장점은 의무교육기간이 11년이며, 취학률이 98%에 달한다는 점이다.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당수 기업들은 “북측 근로자들이 오히려 남측 근로자들보다 기술습득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북측 근로자들의 교육수준과 비례하여 기술 습득 능력이 다른 경쟁 국가들에 비해 높음을 의미한다.

또 다른 이점은 남북의 근로자들이 동일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 언어소통이 원활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해외진출 기업들은 문화적 이질성 및 언어상의 차이로 인해 정확한 기술지도 및 경영활동이 힘들다는 점을 애로 사항으로 들고 있다. 현지 문화에 대한 적응 곤란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노사분규가 빈번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사업자체를 포기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에서는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 습득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아울러, 북측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개성공단이 지닌 강점 중의 하나이다. 1단계 공단에 입주한 기업에 고용된 북측 인력들의 최저 임금은 사회보협료를 포함하여 60.4달러/월<sup>5)</sup>이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베트남의 월평균 임금은 하노이 116달러, 호치민 134달러, 빈딩성(지방) 55달러 정도이다(2006년 기준). 중국의 경우 제조업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2005년 기준)은 가장 낮은 산동성이 130-140달러에 달하고 임금이 높은 상해의 경

5) 2007년 8월부터 기준 57.5달러에서 5%를 인상했다.

우 300달러를 초과하는 등 전체적으로 개성공단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지금도 계속 인상되고 있는 추세이다.<sup>6)</sup> 중국이나 베트남의 평균 임금보다 상당히 낮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지만 개성지역의 근로자들은 개성공단에서 기꺼이 일하려고 한다. 이는 실질 생계비 등을 고려할 때 북한에서는 개성공단에서 받는 임금수입은 고소득에 속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개성공단이 가진 장점은 지리적 인접성이다. 북한은 중국·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일본의 동북아지역 진출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리적으로 이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동북아경제권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도 북한 지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또한 남북 당국의 확고한 사업추진 의지와 지원은 개성공단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고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중요성·특수성 및 상징성을 감안, 정부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을 견지해 왔다. 기반시설 건설 지원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개성공단 사업을 뒷받침할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과 개성 현지에서 종합 관리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를 운영 중이다. 북측 당국도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을 통해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제공하고 있다.

### 3. 우리 경제에의 파급 효과

IMF 사태 이후 우리는 수많은 구조조정을 경험해 왔다. 지금도 기업들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국내의 고비용 생산 구조를 탈피하여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이러한 기업들에게 있어 유력한 대안이자 돌파구가 될 수 있다.

6) 2005년 기준으로 제조업 근로자 월평균임금은 산동성 135달러, 천진 220달러, 베이징 270달러, 상해 310달러 내외이다.

최근 중국은 적극적으로 외자를 유치해 왔던 입장을 바꾸어서 선별적인 외자유치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진출했던 기업들 가운데 다른 투자처를 찾아야 할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개성공단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은 2천만명의 거대한 시장인 수도권과는 1시간 거리에 위치하면서도 저렴하고도 질 높은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이 한-미 FTA 관련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한-EU FTA 협상 등 다른 나라들과의 논의에서도 한국산이나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성공단은 미국은 물론 주요 해외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곳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개성공단은 남한 전용 공단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를 이용하여 미국시장을 겨냥하는 외국기업들의 관심도 증가할 것이다.

## 제2절 개성공단의 미래

개성공단의 미래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가지 부문에서 조망해 볼 수 있다.

첫째, 개성공단은 북한 경제의 개발 모델이 될 수 있다. 북한은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외부세계와의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남한과의 협력을 통해 개성공단을 성공적으로 개발한다면 북한은 특구식 개발 모델로서 개성공단 개발방식을 향후 다른 지역의 특구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성공단은 남북경협 중심지역이 될 것이다. 개성공단은 남북의 필요에 의해 탄생했다. 남북경협은 1988년 7.7선언부터 시작됐지만 남북간에 많은 차이가 존재했고 이를 극복하기가 힘들었다. 북한의 인프라는 열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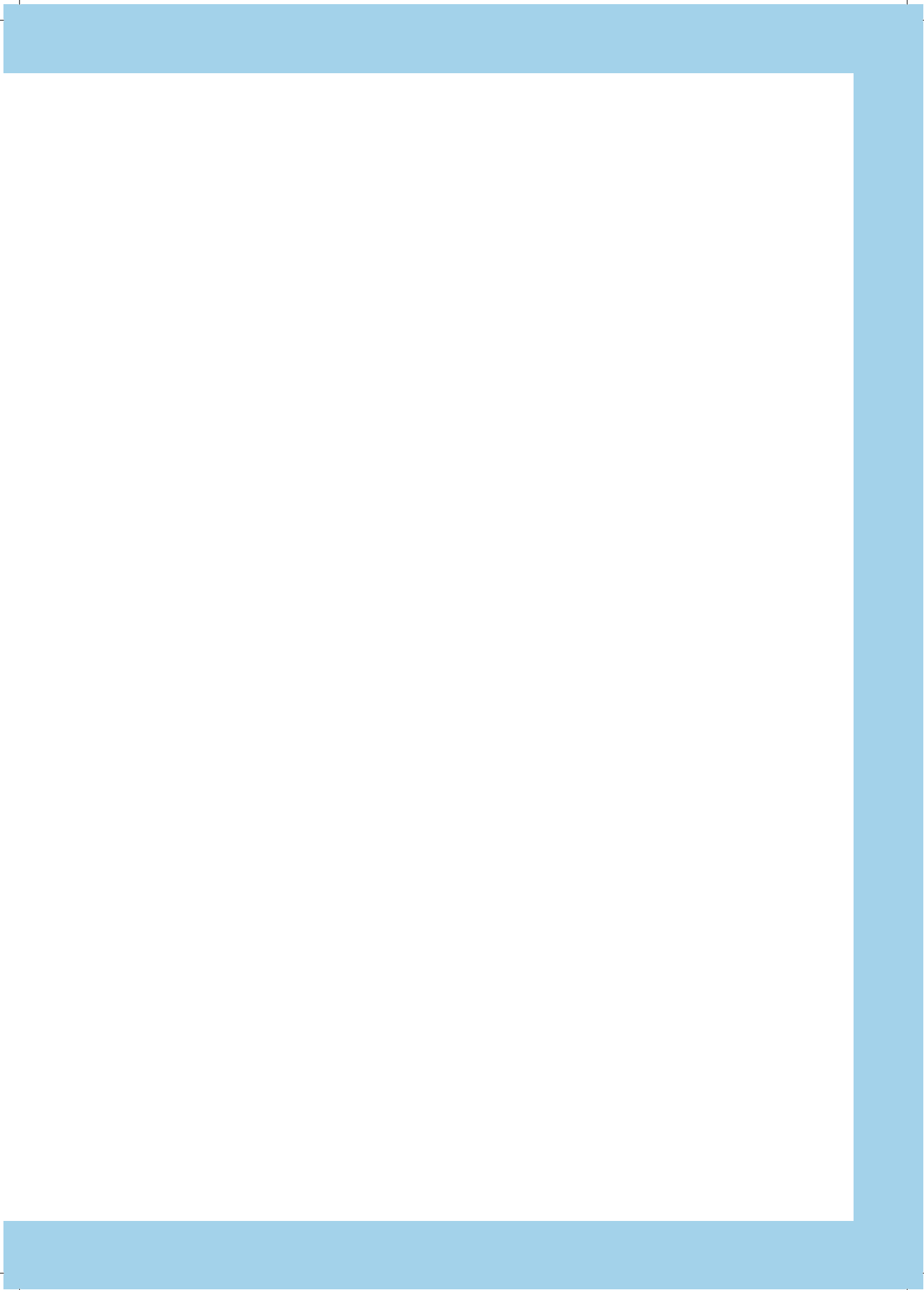
했고, 제도상의 차이도 너무 컸다. 평양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들이 진출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거듭했다. 교역의 수준 또한 제한된 품목을 생산하는 위탁가공교역에 머물렀다. 따라서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남한과 유사한 경제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인프라도 남한의 수준에 버금가도록 만들어서 남북경협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남북 모두 필요해진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경제협력사업들이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 개성공단 내에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다. 남북간 경제협력과 관련된 협의를 이제는 제3국이 아닌 개성에서 할 수 있다. 협의사무소는 북측의 적절한 사업파트너를 직접 물색, 상호 소개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개성공단 개발을 통해 남북경협을 개성지역으로 집중함으로써 향후 남북경협의 안정성과 성공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북측의 여타 지역으로의 확산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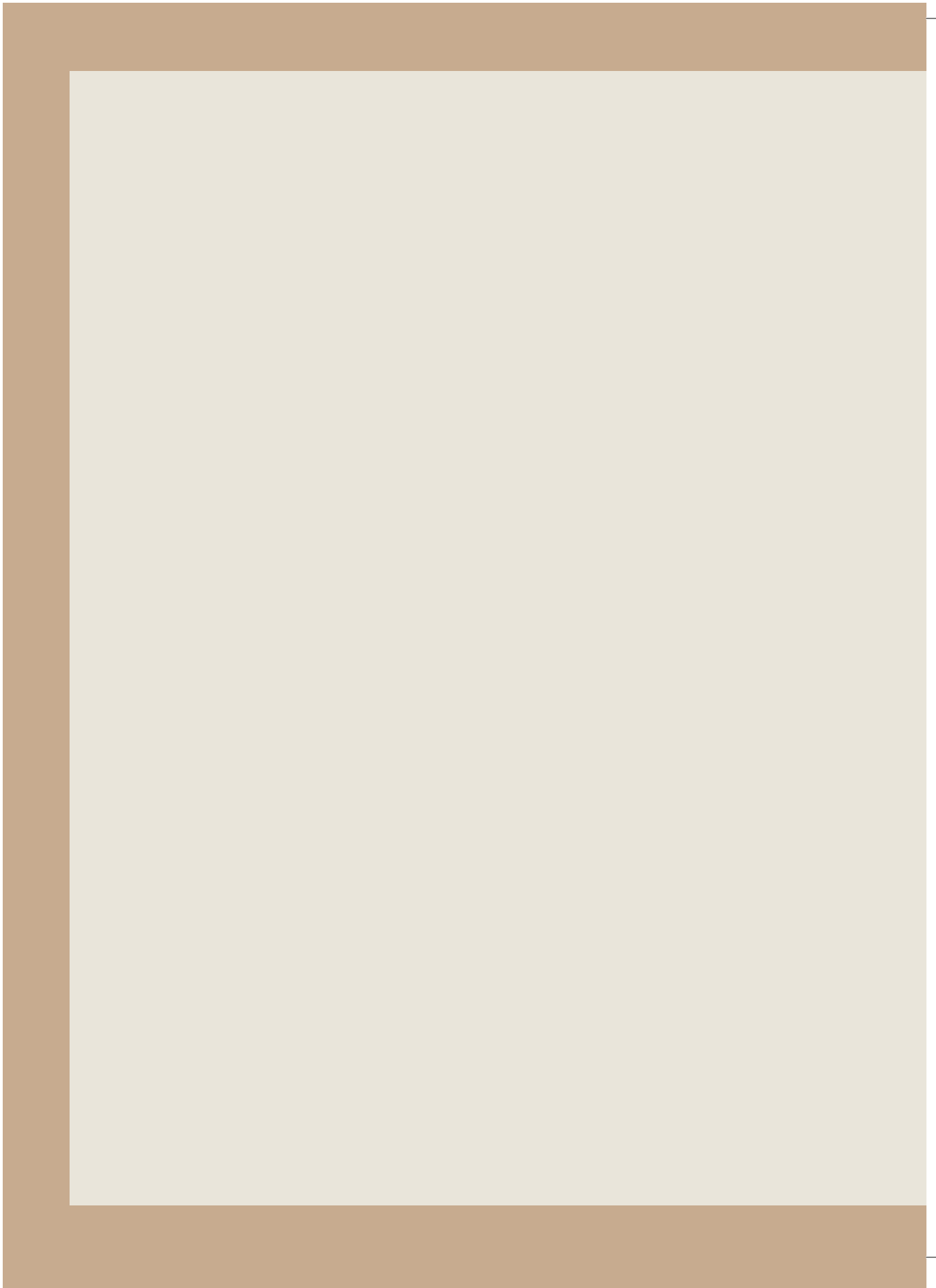
셋째, 개성공단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성공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중국대륙과 홍콩을 연결한 지역은 중국 최초의 개방지역인 심천 특구였다. 심천 특구는 홍콩의 장점을 흡수하고 홍콩 경제는 심천의 장점을 활용했다. 개성공단도 역시 남한의 장점을 북한이 받아들이고, 북한의 장점을 남한이 활용하고 있다. 개성공단에 10만여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고용되면 이들이 북한 지역내에서 고소득층이 되고 개성시는 이들의 소득을 바탕으로 소비와 생산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기에 개성관광과 철도 운행까지 연계될 경우 자연스럽게 개성지역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개성공단은 동북아 허브로서의 비전도 가지고 있다. 개성공단은 단순히 북한 지역내 경제특구 개념을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연계된 복합 통합체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지역은 금융과 소비, 인천지역은 기술과 물류, 개성지역은 생산과 개발을 담당하는 복합 클러스터가 형성됨으로써 향후 서해를 중심으로 한 환서해 경제권의 핵심 포스트로서 복합 생산 및 소비 거점인 동북아 협력의 중심마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

---

## 부 록

---

---

1. 개성공단 사업 추진경과(일지)
2. 남북 합의서
3. 주요 법규집
4. 주요 통계

---

## 1. 개성공단 사업 추진경과(일지)

---

- 2000.8.22 현대아산-북측간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 채택
- 2000.11.10 현대-토공간 1단계 개발 공동사업 시행 협약 체결
- 2000.11.11-12.5 제1차 1단계 부지 현지 측량 및 지질조사
- 2000.12.2 현대, 북측에 『국제자유경제지대기본법(안)』 전달
- 2001.9.15-18 제5차 남북장관급 회담  
개성공단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갖기로 합의
- 2002.4.3-6 대통령 특사 방북  
개성공단 건설 등을 토의하기 위한 남북경추위 아래 실무협의회 가동에 합의
- 2002.8.12-14 제7차 남북장관급 회담  
제2차 남북경추위를 개최, 개성공단 문제를 토의하기로 합의
- 2002.8.27-30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협의회  
개성공단 건설이 연내 착공되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
- 2002.9.24-10.1 현대·토공 및 북측간 제1차 실무접촉  
개성공업지구법 내용에 대해 협의
- 2002.10.19-23 제8차 남북장관급 회담  
12월 착공 및 실무 문제들을 개성공단실무협의회에서 토의, 개성공단 건설 시 남측의 해당부문 사무소 설치에 합의

- 2002.10.30-11.2 제1차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1단계 330만㎡ 개발을 2003년까지 끝내도록 적극 협력 및 실무자간  
접촉을 통한 기반시설 건설문제 협의 등에 합의
- 2002.11.6-9 제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12월 하순 개성공단 착공식, 11월 중순 개성공업지구법 공포, 12월초  
실무접촉 개최에 합의
- 2002.11.20 북측,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 2002.11.26-30 현대·토공 및 북측간 제2차 실무접촉  
착공식 및 하위규정 제정방향 협의
- 2002.12.4 현대·토공, 북측 아태 및 민경련과 4자합의서 체결
- 2002.12.6-8 제1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개성공단 통신, 통관, 검역 합의서 체결
- 2002.12.21-24 현대·토공 및 북측간 제3차 실무접촉  
착공식 계획 및 하위규정 협의
- 2002.12.26 현대·토공, 변경협약서 체결  
1단계 사업을 토공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개정
- 2002.12.27 통일부, 현대아산·토공 협력사업자 승인  
개성공업지구 공장구역 1단계 330만㎡ 조성사업
- 2002.12.30 착공식 예정일  
군사분계선 통과 문제 미해결로 착공식 연기
- 2003.2.21 정부 관계자 및 현대·토공 관계자, 개성공단 사전 육로답사
- 2003.4.2-4 현대·토공 및 북측간 제4차 실무접촉

- 2003.4.21-24 현대·토공 및 북측간 제5차 실무접촉  
착공식 일정 협의 및 5개 하위규정 내용 확정
- 2003.4월-2006.11월 『개성공업지구 개발 규정』 등 16개 하위규정 제정
- 2003.6.30 개성공단 1단계 개발 착공식
- 2003.7.21-8.8 제2차 1단계 부지 현지 측량 및 지질조사
- 2004.1.27-29 제1차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접촉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체결
- 2004.4.13 현대·토공-북측간 1단계 330만㎡ 토지임차료, 지장물 보  
상비 관련 계약 체결
- 2004.4.23 1단계 330만㎡ 협력사업 승인
- 2004.5.18 시범단지(9만 3천㎡) 분양 공고
- 2004.6.14 시범단지(9만 3천㎡) 15개 입주기업 계약 체결
- 2004.6.24-25 제2차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 2004.10.5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출범
- 2004.10.20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개소
- 2004.12.1 에스제이테크 기업창설 승인
- 2004.12.7 우리은행 개성지점 입점
- 2004.12.9 리빙아트 기업창설 승인
- 2004.12.15 개성공단 첫 제품 생산
- 2004.12.22 신원 기업창설 승인
- 2005.2.2 대화연료펌프 기업창설 승인



- 2005.3.16 시범단지 1.5만kW 전력 공급
- 2005.5.11 태성산업 기업창설 승인
- 2005.5.26 삼덕통상 기업창설 승인
- 2005.6.3 개성공단내 외국인 바이어 방문 시작
- 2005.7.6 문창기업, 매직마이크로 기업창설 승인
- 2005.7.21 로만손 협동화 공장 기업창설 승인
- 2005.8.1 본단지 1차단지(16만 9천㎡) 분양 공고
- 2005.8.1 개성공단 통신, 통관, 검역 합의서 및 개성공단·금강산 출입 및 체류합의서 발효
- 2005.8.19 부천공업 기업창설 승인
- 2005.9.21 본단지 1차단지(16만 9천㎡) 24개 입주기업 선정
- 2005.9.23 호산에이스 기업창설 승인
- 2005.10.7 재영솔루텍 기업창설 승인
- 2005.11.2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개성 방문
- 2005.11.22 관리위원회 북측 협력부 근무 개시
- 2005.11.23 코튼클럽 기업창설 승인
- 2005.12.2 평안 기업창설 승인
- 2005.12.5 본단지 1차 입주기업 공장건축 개시
- 2005.12.22 용인전자 기업창설 승인
- 2005.12.28 시범단지 통신 303회선 공급

- 2005.12.30 티에스 정밀 기업창설 승인
- 2006.1.2 좋은사람들 기업창설 승인
- 2006.1.11 한국마이크로필터 기업창설 승인
- 2006.1.26 만선, 성화물산 기업창설 승인
- 2006.2.7 제일상품 기업창설 승인
- 2006.2.8 평화 기업창설 승인
- 2006.2.10 아트랑 기업창설 승인
- 2006.2.27 외신기자단 방문
- 2006.3.9 진글라이더 기업창설 승인
- 2006.5.22 북측 통행검사소(CIQ) 신축건물 개소
- 2006.6.12 버시바우 미국 대사 등 주한 외교단 방문
- 2006.6.14 밀리온스 기업창설 승인
- 2006.6.20-21 제2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 2006.6.29 1단계 330만㎡ 토지조성공사 완료
- 2006.11.21 북측 근로자 1만명 고용
- 2006.12.1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일행 방문
- 2006.12.21 10만kW 남북 송전선 연결
- 2007.1.31 개성공단 총생산액 1억불 달성
- 2007.2.22 페리 전 미 국방장관 방문
- 2007.2.28 한국산업단지공단 아파트형 공장 임대사업자 모집 공고

- 2007.3.16 국제기자연맹 방문
- 2007.4.12 한국산업단지공단 아파트형 공장(31개 기업 및 1개 기관) 임대사업자 선정
- 2007.4.30 1단계 본단지 2차단지 분양 공고
- 2007.5.25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2007.6.12-13 제3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집축
- 2007.6.21 본단지 전력(10만kW)공급용 변전소 준공
- 2007.6.25 1단계 본단지 2차단지(170만㎡) 183개 입주기업 선정
- 2007.6.27 폐기물 처리시설 준공
- 2007.6.28 폐수종말처리장 준공
- 2007.7.4 통신 350회선 추가 공급
- 2007.8.26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발효
- 2007.9.30 개성공단 총생산액 2억불 달성
- 2007.10.4 남북정상회담 선언 발표 및 노무현 대통령 개성공단 방문
- 2007.10.16 1단계 기반시설 준공
- 2007.10.19 종합지원센터 착공
- 2007.10.23 한국산업단지공단 아파트형 공장 준공
- 2007.11.5 북측 근로자 2만명 고용
- 2007.11.14-16 제1차 남북총리회담
- 2007.12.4-6 제1차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 2007.12.11 문산역-판문역간 화물열차 정기운행 개시
- 2007.12.12 한덕수 국무총리 방문
- 2007.12.17 2단계 측량·지질 조사 착수
- 2007.12.20-21 제1차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 2007.12.31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출범

---

---

## 2. 남북 합의서

---

---

###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이하 '쌍방' 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 라 한다)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제조 정의

1. “우편물”이란 일반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 가. “일반우편물”이란 편지, 엽서, 서류, 신문, 잡지, 서적 등 우편으로 보내는 물건을 의미한다.
  - 나. “소포우편물”이란 편지, 화폐와 같이 금지된 이외의 것을 지정된 크기로 포장하여 우편으로 보내는 물건을 의미한다.
2. “전기통신”이란 전자기적 방식을 이용하여 음성, 문자, 부호,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유선 또는 무선의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자료, 영상 및 비디오통신, 위성통신 같은 것을 의미한다.
3. “인원”이란 공업지구개발과 관리운영, 기업 창설과 경영활동, 공업지구의 시찰, 관광 등을 목적으로 상주하거나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과 그 가족들을 의미한다.

## 제2조 기본원칙

1. 남측지역과 공업지구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는 국가간의 교류가 아닌 민족내부간의 교류이다.
2. 쌍방은 공업지구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 사이의 자유로운 우편과 전기통신을 보장한다.
3. 남측지역과 공업지구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은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교환 및 연결한다.
4. 쌍방은 공업지구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한다.
5. 쌍방은 공업지구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과 그 시설을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 제3조 우편물의 교환

1. 쌍방은 우편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한다.
2. 쌍방은 공업지구의 우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기구 설치와 우편물 교환에 대한 질서를 협의하여 정한다.

## 제4조 전기통신망의 설치 및 운용

1. 쌍방은 공업지구의 전기통신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정된 사업자가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2. 통신사업자는 남북이 합의한 장소를 통하여 전기통신망을 직접 연결한다.
3. 쌍방은 전기통신망 장애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통신보장체계를 세우며 통신망을 신속히 복구하는데 협조한다.

## 제5조 상대방의 법률제도와 국제관례의 존중

쌍방은 우편 및 전기통신과 관련한 상대측의 법률제도를 존중하며 국제

협약 및 국제관례를 존중한다.

#### 제6조 정보제공

쌍방은 통신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하는 법규를 통보하며 상대방의 자료협조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응한다.

#### 제7조 해석 및 적용

본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그가 위임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 제8조 수정 및 보충

쌍방은 필요한 경우 합의서의 조항을 협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9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걸쳐 효력을 가진다.

#### 제9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쌍방이 수표하고, 각기 효력발생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건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2. 이 합의서는 쌍방의 관련법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이 합의서는 상대방에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후에 효력을 가진다.

이 합의서는 2002년 12월 8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 정 경 제 부 차 관  
윤 진 식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가 계 획 위 원 회 1부위원장  
박 창 련



##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이하 '쌍방' 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 라 한다)에서의 반출입 물자와 우편물, 통행차량 및 인원의 휴대품에 대한 통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제1조 정의

1. “물자” 라 함은 공업지구 건설과 관리운영, 공업지구내 투자기업(이하 ‘기업’ 이라 한다)의 생산과 경영, 상주 인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2. “반입” 이라 함은 물자를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출입통로를 따라 공업지구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며, “반출” 이라 함은 공업지구에서 내어가는 것을 말한다.
3. “통행차량” 이라 함은 공업지구의 반출입물자, 인원 등을 수송하거나 공업지구의 건설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출입하는 각종 차량을 말한다.

### 제2조 출입통로의 지정

쌍방은 공업지구 개발사업 착공전까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공업지구를 연결하는 도로 및 철도의 출입통로를 협의하여 지정한다.

### 제3조 공업지구세관의 설치

북측은 공업지구에 세관(이하 ‘공업지구세관’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 제4조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확인

1. 쌍방은 남과 북을 왕래하는 차량(철도차량 제외)에 대하여 쌍방의 세관당국이 지정하는 세관에 사전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차량에 대

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통행차량증명서를 발급한다.

- 가. 차량등록번호·차종·차형·생산년도 및 배기량 등
- 나. 적재량 또는 정원
- 다. 운행목적, 운행구간 및 유효기간
- 라. 기타 쌍방이 필요하다고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2. 쌍방은 통행차량 등록명부를 상호 통보한다. 이 경우 등록명부에 등록된 차량은 쌍방 세관에 등록된 차량으로 본다.
3. 통행차량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 통행차량증명서를 제시하고 출입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 통행차량의 세금 등 면제

쌍방은 통행차량에 대하여 모든 세금을 면제하고, 통행차량에 대한 세관수속은 따로 하지 않는다.

#### 제6조 반출입물자 등에 대한 통관절차

1.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와 우편물에 대한 통관절차는 공업지구 세관에서 담당한다.
2. 공업지구에 출입하는 인원의 휴대품 및 통행차량에 대한 세관검사는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 실시한다.
3. 공업지구세관은 기업의 요청에 따라 반출입물자에 대한 검사를 물자의 도착지 또는 출발지에서 실시한다.
4. 공업지구에 반출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절차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5. 공업지구세관은 반출입 물자에 대하여 모든 세금과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제7조 반출입 절차

1. 남측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는 반입물자에 대하여 사전에 제출받은 세관 신고서류에 공업지구 반입물자임을 확인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한다.
2. 공업지구세관에서는 반출물자에 대하여 사전에 제출받은 세관 신고서류에 공업지구 반출물자임을 확인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한다.
3. 세관 신고서류에는 반출입물자의 송하인·수하인·품명·수량·가격·운송기간·출발지·도착지 및 운송인 등을 기재한다.

#### 제8조 반출입 물자의 운송

1.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컨테이너로 운송하며, 컨테이너는 출발하기 전에 공업지구 반출입물자임을 확인한 세관에서 봉인한다.
2. 쌍방 세관은 컨테이너에 봉인을 한 경우 봉인번호를 세관에서 확인한 신고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쌍방 세관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세관 신고서류와 세관봉인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운송물자의 세관통과를 허용한다.
4. 쌍방 세관은 세관봉인에 이상이 있거나 컨테이너 개장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상호 통보한다.

#### 제9조 정보제공

쌍방은 통관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하는 법규를 제공하며, 상

대측의 자료협조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지체없이 응한다.

#### 제10조 세관당국간 교류협력

쌍방의 세관당국은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의 통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호 교류협력한다.

#### 제11조 해석 및 적용

쌍방은 본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가 위임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 제12조 수정 및 보충

쌍방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3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 제13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쌍방의 관련법규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합의서는 2002년 12월 8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 정 경 제 부 차 관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윤 진 식	박 창 련

##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측	북측
통관	세관통과
물품	물건
말한다	의미한다
열차·차량운행사무소	련운, 차량운행사무소
명부	명단
상호	호상
통관절차	세관수속과 검사
송하인	송화인
수하인	수화인
운송	수송
운송인	수송자
컨테이너	짐함
봉인의 이상유무	봉인의 상태
개장	개봉
서명	수표
발효	효력발생
문본	문건
효력을 발생한다	효력을 가진다
통행차량, 차량	운수수단

##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이하 '쌍방' 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 라 한다)에 출입하는 인원·물자 및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제1조 정의

1. “인원”이란 공업지구개발과 관리운영, 공업지구내 투자기업(이하 ‘기업’ 이라 한다)의 창설과 경영활동, 공업지구의 시찰 및 관광 등을 목적으로 상주하거나 출입하는 남측주민, 해외동포, 외국인과 그 가족 등을 말한다.
2. “물자”란 공업지구 건설과 관리운영, 기업의 생산과 경영, 상주한 인원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3. “출입”이란 인원이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출입통로를 따라 공업지구에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4. “반입”이란 물자를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출입통로를 따라 공업지구에 들어오는 것을, “반출”이라 함은 공업지구에서 내어가는 것을 말한다.
5. “운송수단”이란 공업지구에 출입하는 물자, 인원들을 수송하거나 공업지구의 건설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들어오는 기차 및 각종 차량을 말한다.

### 제2조 출입통로의 지정

쌍방은 공업지구의 개발사업 착수전까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공업지구를 연결하는 철도·도로의 출입통로를 협의하여 정한다.

### 제3조 검역대상과 기준·방법

1. 쌍방은 지정된 통로를 통하여 공업지구내에 반출입되는 물자 가운데서 검역대상과 기준, 방법은 공업지구개발사업 착수전까지 합의하여 정한다.
2. 전염병 발생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통로를 통하여 직접 출입하는 인원·운송수단·장비에 대해서는 검역을 하지 않는다.

### 제4조 공업지구 검역소 설치

북측은 공업지구내에 반입·반출되는 물자에 대한 검역을 전담 실시하기 위한 검역소(이하 '공업지구검역소'라 한다)를 공업지구내에 둔다.

### 제5조 검역원칙

1. 공업지구검역소에서는 검역절차를 간소화하여 물자를 신속히 통과시키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필요한 인원을 파견하여 검역을 협조할 수도 있다.
2. 검역대상이 아닌 인원, 운송수단, 물자를 특별히 검역하여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남측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협의하고, 검역을 하며 위생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가 있을 경우에는 검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공업지구검역소는 검역을 실시한 대상에 대해 검역요금을 받으며, 검역요금의 기준은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6조 반입물자에 대한 검역

1. 검역대상물자를 공업지구내에 반입하는 자는 검역대상물이 도착하는 즉시 공업지구검역소에 입고시키고 검역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공업지구검역소에서는 검역을 하고 검역기준에 합격된 대상에 대하여 검역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공업지구검역소는 검역에서 불합격된 대상에 대하여 소독, 반송, 사

용중지 같은 처분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하여 남측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 통보한다.

#### 제7조 반출물자에 대한 검역

1. 검역대상 물자를 반출하고자 하려는 자는 검역대상 물자를 공업지구 검역소에 입고시키고 검역신청을 해야 한다.
2. 공업지구검역소는 검역을 하고 검역기준에 합격된 대상에 대하여 검역증을 발급하여 주어야 하며, 검역에서 합격된 물자만을 반출할 수 있다.
3. 남측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않는 반출물자에 대하여서는 검역을 하지 않고 반출할 수 있다.

#### 제8조 정보제공

쌍방은 검역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보충하는 법규를 제공하며, 상대방의 자료협조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지체없이 응한다.

#### 제9조 검역 당국간 교류협력

쌍방의 검역당국은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의 검역을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호 교류협력한다.

#### 제10조 해석 및 적용

쌍방은 본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가 위임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 제11조 수정 및 보충

쌍방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협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2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 제12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관련법규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합의서는 2002년 12월 8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 정 경 제 부 차 관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윤 진 식	박 창 련

##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측	북측
서명	수표
발효	효력발생
문본	문건
효력을 발생한다	효력을 가진다
말한다	의미한다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사업을 발전시키고,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이 아래부터는 '지구' 라고 한다)의 출입 및 체류를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1조 정의

1. “인원”이란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 및 체류하는 남측의 주민과 해외동포, 외국인을 의미한다.
2. “통행차량 등”이란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하는 자동차, 열차, 선박 등 각종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3. “출입”이란 인원 또는 통행차량 등이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드나드는 것을 의미한다.
4. “체류”란 인원이 지구에서 일정한 기간 머무르는 것을 의미한다.
5. “출입통로”란 인원 또는 통행차량 등이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할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합의하여 정한 통로를 의미한다.

### 제2조 기본원칙

1. 남과 북은 인원과 통행차량 등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입과 체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2. 북측은 인원의 신변안전과 출입 및 체류 목적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보장한다.

3. 인원은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존중하고 준수한다.

### 제3조 출입통로

남과 북은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할 수 있는 철도, 도로, 해상로의 출입통로를 합의하여 정한다. 이미 남측 지역과 지구 사이에 개설되어 있는 출입통로는 이 합의서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한다.

### 제4조 인원의 출입절차

1. 인원은 남측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와 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고 통행차량등을 이용하여 출입하며, 북측은 해당 증명서를 소지한 인원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출입을 보장한다.
2. 지구에 체류 또는 거주하는 인원은 체류 또는 거주를 확인하는 해당 증명서의 유효기간 안에서 여러번 출입할 수 있다.
3. 14세에 이르지 못한 인원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해당 증명서에 동반자로 기재하고 출입할 수 있다.
4.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인원은 해당 나라의 여권과 함께 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 제5조 통행차량등의 출입절차

1. 자동차는 자동차 통행과 관련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고 정해진 출입통로로 출입한다.
2. 선박은 선원과 승객명단을 비롯한 선박자료와 입출항시간을 북측의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 출입한다.
3. 열차는 남과 북 사이에 합의한 시간표에 따라 출입한다.

### 제6조 출입심사

1. 북측은 인원과 통행차량 등에 대하여 출입장소에서 정해진 질서에 따라 필요한 출입심사, 세관검사와 검역을 한다.
2. 북측은 지구의 안전과 인원, 통행차량 등의 출입상 편의를 보장하며, 남과 북은 지구의 안전과 간편하고 신속·정확한 심사와 검역을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3. 북측은 통행차량 등에 승차 또는 승선하여 심사와 검역을 할 수 있다.

### 제7조 체류

1. 인원은 해당 증명서의 유효기간 안에서 체류하여야 하며, 출입 및 체류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2. 인원은 지구에 도착한 날부터 48시간 내에 지구출입사업기관에 체류등록을 하고, 해당 증명서에 체류등록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인원이 해당 증명서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지구에 체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3일전에 남측 당국 및 지구관리기관에 신청하여 체류기간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인원이 해당 증명서의 체류기간 내에서 이미 등록한 체류기일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구출입사업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은 체류등록을 하지 않는다.
  - 가. 지구에 도착한 날부터 7일까지 체류하는 인원
  - 나. 지구에 장기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인원
  - 다. 남과 북이 체류등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인원
6. 인원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 제정된 질서에 따라 장기체류 또는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8조 제한대상

북측은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출입 및 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1. 국제테러범
2. 마약중독자, 정신병자
3. 전염병환자, 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
4. 위조하였거나 심히 훼손되어 확인할 수 없게 된 해당 증명서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한 자
5. 남과 북이 출입 및 체류를 금지하기로 합의한 자

#### 제9조 긴급구조조치

북측은 자연재해, 불의의 사고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인원과 통행차량등에 대한 구조조치를 취하며 남측은 이에 협력한다.

#### 제10조 신변안전보장

1. 북측은 인원의 신체, 주거, 개인재산의 불가침권을 보장한다.
2. 북측은 인원이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 다만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
3. 북측은 인원이 조사를 받는 동안 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4. 남측은 법질서를 위반하고 남측 지역으로 추방된 인원에 대하여 북

측의 의견을 고려하여 조사,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북측에 통보하며, 법질서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

5. 남과 북은 인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및 물질적 피해의 보상문제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 해결한다.
6. 외국인이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북측과 해당 국가 사이에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 제11조 지구와 지구밖 북측지역 사이의 출입

인원과 통행차량 등이 지구에서 지구 밖의 북측 지역을 출입하거나 지구 밖의 북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북측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른다.

#### 제12조 정보교환과 협력

1.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상호 통보하며, 상대측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력한다.
2. 남과 북은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과 북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 제13조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해결

이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그가 위임하는 기관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 제14조 합의서의 적용범위

인원과 통행차량등의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한 문제는 이 합의서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 제15조 수정 및 보충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수정·보충되는 내용은 이 합의서 제16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가진다.

### 제16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효력발생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2.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측에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지며,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가진다.

이 합의서는 2004년 1월 29일에 2부씩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4년 1월 29일

남 북 장 관 급 회 담	북 남 상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 일 부 장 관	내 각 책 임 참 사
정 세 현	김 령 성

---

### 3. 주요 법규집

---

#### 〈남한 법규〉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07.5.25 법률 제8484호]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 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체류하는 남한주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성공업지구”란 남한과 북한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북한의 개성지역 일대에서 개발·구성된 공업지구를 말한다.
2.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개발업자로 지정된 남한주민을 말한다.
3.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이란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지사·영업소·사무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출입” 또는 “체류”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6. 이 법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부의 시책 등)**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를 국제적인 공업지구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기업의 경영활동이 경제원리와 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정부는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남북한 주민의 복리증진과 산업안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환경친화적인 공업지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남북경제교류·협력을 민족내부거래의 원칙과 관행에 맞게 정착·발전시키고 이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의 구성)** ①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기관·단체의 민간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

③ 협의회의 업무·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지원, 왕래와 교역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제2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제6조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용수, 철도, 통신, 전기 등 기반시설은 정부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에게 위탁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함에 있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 및 제46조에 따른 비용부담, 시설지원 및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성공업지구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본다.

④ 통일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한 산업단지 개발 사업 이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제2항의 기반시설에 지원된 비용을 시설부담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개발사업내용, 지

원규모, 지원방법 등에 관한 주요사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지원, 시설부담금 납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의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의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의 사업을 위한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금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제6조에 따른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권한과 업무의 일부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의 사업자로 본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환경관리공단 등으로 하여금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1조, 「집단에너지

지사업법」 제8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8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또는 응자)**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또는 응자할 수 있다.

**제12조 (기타 정부지원제도의 적용)** 이 법에 정한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이외에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인력·기술개발, 교육훈련, 경영혁신 및 안정, 수출촉진 등을 위한 기업지원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적용할 수 있다.

### 제3장 출입·체류자의 보호

**제13조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의 적용)** 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이에 고용된 남한주민(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남한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고용보험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②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는 제1항 각 호의 법률로 정하는 사용자(사업주) 및 근로자로 본다.

③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남한 근로자가 개성

공업지구에서 근로하거나 체류하는 것은 국내에서 근로하거나 체류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노동부장관·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의료기관 등)** ① 「의료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남한주민을 주된 대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으로 본다.

② 개성공업지구에 출입·체류하는 남한주민이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에서 의료행위를 받은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은 개성공업지구에 출입·체류하는 남한주민 중 「의료급여법」 제3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료급여법」 제7조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의 인정,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의 적용)** 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임금채권보장법」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②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노동부장관·근로감독관 등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조세·왕래 및 교역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 (조세 감면)**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남한주민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 (왕래와 교역의 특례)** ① 개성공업지구의 교역물품 및 통행차량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6장제3절, 제9장제1절 및 제2절을 준용하되, 민족내부거래의 원칙을 반영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② 개성공업지구의 왕래를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신고의 면제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개성공업지구를 왕래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출입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간소화를 위한 특례의 범위와 적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간소화에 관한 특례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 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제18조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①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은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인으로서의 능력이 있다.

②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자금, 인력, 물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은 남한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9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2.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지도·감독
3.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4.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의 각종 증명 발급 및 민원 업무의 대행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무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차입금
3. 수익사업의 이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⑤ 재단이 해산한 때에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 ⑥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 그 밖에 재단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공무원 등의 파견)**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을 지원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일정 기간 복한에 파견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무원의 파견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제8484호, 2007.5.25>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의 청산)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사단법인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는 이 법 시행과 더불어 청산되며, 청산법인의 권리·의무는 제19조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7.9.20 대통령령 제20281호]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의 업무)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개성공업지구 개발계획(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가 작성하는 개성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주요 사항
2.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원과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주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관계 부처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주요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재정경제부·통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국가정보원·국무조정

- 실·관세청·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명
2. 남북관계와 개성공업지구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협의회에 출석하는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위원장의 요청으로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 제2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제5조 (자금지원)**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수공급시설의 건설비

2.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의 건설비
3. 그 밖에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것

**제6조 (기반시설의 지원)**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및 철도
2.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3. 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개성공업지구 안의 공동구(공동구)
5.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6. 그 밖에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②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개성공업지구 개발계획에서 정하여진 도로 까지의 전기시설은 한국 전력공사가 미리 설치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공급하는 자에게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의 절차)**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남북협력기금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8조 (사전 협의)**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 및 제46조에 따른 비용부담, 시설 및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투자의 지원)** ① 정부는 법 제12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

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3.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6.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7. 「중소기업기본법」
8.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9.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10.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1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② 정부는 제1항과 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이 남한기업에 대한 지원기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성공업지구의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제2항의 지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한 남한주민을 통하여 할 수 있다.

### 제3장 출입 체류자의 보호

제10조 (분사무소의 설치·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

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은 각각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분사무소를 개성공업지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제1항의 각 공단은 분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 분사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개성공업지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각 공단은 접경지(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분사무소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관할)**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적용과 관련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는 접경지를 관할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의 장이 수행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적용과 관련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업무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접경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한다.

③ 법 제1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의료법」 제33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5조, 제48조, 제61조 및 제67조 등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권한 또는 업무는 경기도지사 또는 파주시장이 행사 또는 수행한다.

④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접경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행사한다.

1. 「근로기준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2. 「최저임금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4.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⑤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 또는 업무는 접경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가 행사하거나 수행한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

⑥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접경지를 관할하는 근로감독관이 행사한다.

1. 「근로기준법」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권한
2. 「최저임금법」 제26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권한

⑦ 법 제1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행정관청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노동조합 및 단위노동조합 : 노동부장관
  - 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 나. 개성공업지구와 다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걸쳐있는 단위노동조합
2. 개성공업지구와 다른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단위노동조합 : 경기도지사
3. 개성공업지구 내의 단위노동조합 : 파주시장

제12조 (그 밖에 적용에 필요한 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상시근로자의 수는 남한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임금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받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사용자가 위 각 호의 각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투자한 남한주민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조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14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의료법」,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제2항에 정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4장 조세·왕래 및 교역에 관한 특례

제13조 (통행차량의 등록 신청) 도로차량으로 남한과 개성공업지구 간을 통행하려는 자는 통행차량 등록신청서를 접경지세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차량등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송장비운행승인서를 접경지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수송장비운행승인 신청을 통행차량등록 신청으로 본다.

**제14조 (통행차량증명서의 발급)** ① 통행차량의 등록 신청을 받은 접경지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차량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행차량증명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접경지세관장은 증명서의 발급업무를 통일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통행차량증명서의 발급 절차,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5조 (출입확인 및 출발·도착의 보고)** ① 도로차량으로 개성공업지구를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할 때에 통행차량증명서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출입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자식 카드 등으로 통행차량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입확인은 전자식 판독기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같음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확인을 거친 차량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에 따른 첨부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 (반출·반입의 신고 및 검사)** ① 개성공업지구로 물품을 반출하려는 자와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출·반입 신고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출·반입 신고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 자료를 통관 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 제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 자료를 통관 시스템에 전송한 후 반출·반입 신고서 및 관련 구비 서류를 세관장에 제출한다.



-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개성공업지구 개발과 투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구비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④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개성공업지구에서 반입되거나 개성공업지구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선별(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경우에도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관리 또는 감시단속상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할 서류의 종류와 양식, 서류제출대상 선정의 기준 및 제4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7조 (방문신고의 면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로 출입하는 남한주민 중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된 방문기간 내에서 방문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 (출입심사)**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개성공업지구를 출입하는 남한 주민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출입신고서 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제19조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자금, 인력 및 물품 등을 지원하려면 통일부장관과 지원의 대상 및 방법 등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 (정관) ①** 법 제19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설립등기사항)**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22조 (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및 이사장을 제외한 3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는 상근(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이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⑥ 이사의 수와 상근으로 하는 이사의 대상 및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23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상근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분장(분장)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근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24조 (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5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26조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① 법 제19조제4항에

다른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재단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국유재산 관리청은 재단이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은 국유재산(이하 “자산”이라고 한다)을 그 양여·대부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면 그 양여·대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27조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의 관리)** ① 통일부장관은 재단의 자산이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관리되고 있는지 관리한다.

② 재단은 매년 자산의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재단에 자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재단이 무상대부 받은 개성공업지구 내 자산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및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라 재단의 명의로 등록을 하면 해당 국유재산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른 관리청의 권리보전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양여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통일부장관을 거쳐 관계 부처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무원·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임직원 등의 파견)** 재단은 그 임직원을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매 사업연도의 사업 실적
3.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계산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지도·감독 등) ①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 (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 절차) ① 법 제20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공무원이 아닌 자를 북한에 파견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에 근무하게 할 경우 그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근무 중의 복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공무원이 아닌 자의 소속 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을 지원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북한에 공무원이 아닌 자를 파견할 필요가 있으면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직무 내용, 인원 및 직급 등을 명시하여 파견할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20281호, 2007.9.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단의 설립준비) ① 통일부장관은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 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 해촉된 것으로 본다.

## 〈북한 법규〉

###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2002.11.20)

1차 개정: 2003.4.24, 정령 3715호

#### 제1장 개성공업지구법의 기본

제1조 개성공업지구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관리 운영하는 국제적인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역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은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 공업지구 개발은 지구의 토지를 개발업자가 임대 받아 부지정리와 하부구조 건설을 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한다. 공업지구는 공장구역, 상업구역, 생활구역, 관광구역 같은 것으로 나눈다.

제3조 공업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들이 투자할 수 있다. 투자가는 공업지구에 기업을 창설하거나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같은 것을 설치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공업지구에서는 노력채용, 토지이용, 세금납부 같은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한다.

제4조 공업지구에서는 사회의 안전과 민족경제의 건전한 발전,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문의 투자와 영업활동은 할 수 없다. 하부구조 건설부문,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 부문의 투자는 특별히 장려한다.

**제5조** 공업지구의 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공업지구의 사업을 지도한다.

**제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업지구의 사업에 관여할 수 없다. 필요에 따라 공업지구의 사업에 관여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공업지구에서는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투자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투자자의 재산은 국유화하지 않는다. 사회공동의 이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투자자의 재산을 거두어 들이려 할 경우에는 투자자와 사전협의를 하며 그 가치를 보상하여 준다.

**제8조**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을 구속, 체포하거나 몸, 살림집을 수색하지 않는다. 신변안전 및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북남 사이의 합의 또는 공화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 공업지구에서 경제활동은 이 법과 그 시행을 위한 규정에 따라 한다.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 제2장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제10조 공업지구의 개발은 정해진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제11조 개발업자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토지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토지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발업자에게 해당기관이 발급한 토지이용증을 주어야 한다.

제12조 공업지구의 토지임대 기간은 토지이용증을 발급한 날부터 50년으로 한다. 토지임대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기업의 신청에 따라 임대 받은 토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 개발업자는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정확히 작성하여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심의결과를 개발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 공업지구의 개발은 승인된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 따라 한다.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변경시키려 할 경우에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는다.

제15조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개발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과 부착물을 제때에 철거, 이설하고 주민을 이주시켜야 한다. 개발구역 안에 있는 건물, 부착물의 철거와 이설, 주민이주에 드는 비용은 개발업자가 부담한다.

제16조 개발업자는 개발구역 안에 있는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 사업이 끝나는 차제로 개발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공업지구 개발은 단계별로 나누어 할 수 있다.

제17조 공업지구의 하부구조 건설은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는 필요에 따라 전력, 통신, 용수보장 시설 같은 하부구조 대상을 다른 투자자와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양도, 위탁의 방법으로 건설할 수도 있다.

제18조 개발업자는 하부구조 대상 건설이 끝나는 차제로 공업지구개발 총계획에 따라 기업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업지구의 토지이용권과 건물을 기업에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 있다.

제19조 개발업자는 공업지구에서 살림집 건설업, 관광오락업, 광고업 같은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제20조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업지구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 조건을보장하여야 한다.

### 제3장 개성공업지구의 관리

제21조 공업지구에 대한 관리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지도 밑에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공업지구 관리운영사업 정형을 분기별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개발업자의 지정
2.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업에 대한 지도
3. 공업지구 법규의 시행세칙 작성
4. 기업이 요구하는 노력, 용수, 물자의 보장

5. 대상건설 설계문건의 접수, 보관
6. 공업지구에서 생산된 제품의 북측지역 판매 실현
7. 공업지구의 세무관리
8. 이밖에 국가로부터 위임 받은 사업

**제23조**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업지구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해당기관과 정상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해당기관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4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개발업자가 추천하는 성원들로 구성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라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파견하는 성원들도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성원으로 될 수 있다.

**제25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투자조건의 조성과 투자유치
2. 기업의 창설 승인, 등록, 영업허가
3.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4. 토지이용권, 건물, 운전기재의 등록
5.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
6. 하부구조 시설의 관리
7. 공업지구의 환경보호, 소방대책
8. 남측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인원과 수송수단의 출입증 명서 발급
9.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업준칙 작성
10. 이밖에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위임하는 사업

**제26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책임자는 이사장이다. 이사장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업전반을 조직하고 지도한다.

**제27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운영자금을 가진다. 운영자금은 수수료 같

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8조** 남측 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과 수송수단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출입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통로로 사증 없이 출입할 수 있다. 공화국의 다른 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질서, 공업지구에서 공화국의 다른 지역으로 출입하는 질서는 따로 정한다.

**제29조** 공업지구에서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은 문화, 보건, 체육, 교육분야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받으며 우편, 전화, 팩스 같은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30조** 공업지구에 출입, 체류, 거주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은 정해진 데 따라 개성시의 혁명사적지와 역사유적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 같은 것을 관광할 수 있다. 개성시 인민위원회는 개성시의 관광대상과 시설을 잘 꾸리고 보존, 관리하며 필요한 봉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 공업지구에서 광고는 장소, 종류, 내용, 방법, 기간 같은 것을 제한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야외에 광고물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32조** 공업지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한다. 물자를 반출입하려는 자는 반출입 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반출입 지점의 세관에 내야 한다.

**제33조** 공업지구에 들여오거나 공업지구에서 남측 또는 다른 나라로 내가는 물자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탁 가공하는 물자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물자를 그대로 공화국의 다른 지역에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34조 검사 검역 기관은 공업지구의 출입검사, 세관검사, 위생 및 동식물 검역사업을 공업지구의 안전과 투자유치에 지장이 없도록 과학기술적 방법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 제4장 개성공업지구의 기업 창설 운영

제35조 투자가는 공업지구에 기업을 창설하려 할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창설 신청서를 내야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기업창설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6조 기업창설 승인을 받은 투자가는 정해진 출자를 하고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등록을 한 다음 20일안으로 해당기관에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문건을 내야 한다.

제37조 기업은 종업원을 공화국의 노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알리고 남측 또는 다른 나라 로력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기업은 승인 받은 업종범위 안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리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기업은 공업지구 밖의 공화국 영역에서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 영역에 판매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원료, 자재, 부분품의

가공을 위탁할 수도 있다.

**제40조** 공업지구에서 상품의 가격과 봉사요금, 기업과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에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은 국제시장 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41조** 공업지구에서 유통화폐는 전환성 외화로 하며 신용카드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유통화폐의 종류와 기준화폐는 공업지구 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합의하여 정한다.

**제42조** 기업은 공업지구에 설립된 은행에 돈자리(계좌)를 두어야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알리고 공업지구 밖의 남측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도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제43조** 기업은 회계업무를 정확히 하며 기업소득세, 거래세, 영업세, 지방세 같은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공업지구에서 기업 소득세율은 결산이윤의 14%로 하며 하부구조 건설부문과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은 10%로 한다.

**제44조** 공업지구에서는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입할 수 있다. 경영활동을 하여 얻은 이윤과 그밖의 소득금은 남측지역 또는 다른 나라로 세금 없이 송금하거나 가지고 갈 수 있다.

**제45조** 공업지구에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같은 것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해당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다. 지사, 영업소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 제5장 분쟁해결

제46조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활동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북남 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 해결절차 또는 중재, 재판절차로 해결한다.

## 부 칙

제1조 이 법은 채택한 날부터 실시한다.

제2조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하여 북남 사이에 맺은 합의서의 내용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이 법의 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02호(2003.4.24)로 채택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공업지구개발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공업지구를 효과적으로 개발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개발업자선정) 개발업자 선정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북남사이에 맺은 합의서에 따라 개발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3조 (개발총계획의 작성)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의 작성은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는 토지측량과 지질조사를 하고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하부구조건설계획, 구역별개발계획, 단계별 투자 및 사업추진계획 같은 것을 반영한다.
- 제4조 (개발총계획작성에 필요한 자료보장)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하부구조실태자료와 기상수문자료 같은 것을 제때에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 제5조 (개발총계획의 심의승인) 개발업자는 작성한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내각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개발업자에게 알려 주어야한다. 내각은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 대한 수정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 (계획적 개발 및 변경) 공업지구의 개발은 승인된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 따라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는 공업지구개발을 공업지구개발총계획과 다르게 하려 할 경우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제기하여야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20일안으로 제기된 내용의 처리 결과를 개발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제7조 (건물, 부착물의 철거, 이설) 개발업자는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 이설과 관련한 사업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개발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과 부착물을 제때에 철거, 이설하고 주민을



이주시켜야 한다.

**제8조 (철거, 이설, 주민 이주비용)**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과 부속물의 철거, 이설, 주민이주에 드는 비용은 개발업자가 부담한다. 개발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액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개발업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9조 (개발공사착수)** 공업지구의 개발은 단계별로 나누어 할 수 있다. 개발업자는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과 부속물의 철거사업이 끝나는 차제로 개발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0조 (하부구조건설)** 공업지구의 하부구조건설은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는 필요에 따라 전력, 통신, 용수보장시설 같은 하부구조대상을 다른 투자자와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양도, 위탁하여 건설할 수도 있다.

**제11조 (하부구조시설물의 사용료)** 하부구조건설부문의 투자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등록을 하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으며 도로, 전기, 가스, 용수 같은 것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업지구 밖의 하부구조건설)** 공업지구 밖에서 공업지구까지 연결되는 하부구조건설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이 경우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하부구조건설에 필요한 설비, 자재를 개발업자가 상업적 방법으로 보장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개발업자와 협의하여 다른 투자자가 하부구조건설을 하고 운영하게 할 수도 있다.

**제13조 (기업배치)** 개발업자는 기업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업지구의 토지이용권과 건물을 용도별로 기업 또는 투자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도 있다. 개발업자는 기업의 배

치, 토지이용권과 건물의 양도, 임대같은 사업을 공업지구관리 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제14조 (건설허가)** 공업지구에서 건설허가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대상건설을 하려는 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대상건설 설계문을 내고 건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과제설계문건의 보관)**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건설허가를 한 대상의 과제설계문건사본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과제설계문건사본을 접수·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역사유적유물의 처리)** 공업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 역사유적 유물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알려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역사유적유물을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 (개발사업조건보장)**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업 지구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의 출입과 생활상 편의보장, 물자의 반출입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 (노력, 용수, 물자의 보장)**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개발업자가 요구하는 공화국의 노력, 물자, 용수 같은것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공화국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발업자사이에 계약을 맺고 보장하게 할 수도 있다.

**제19조 (개발업자의 사업권)** 개발업자는 공업지구의 하부구조건설사업, 에너지(에너지)공급사업, 수송사업, 물자보관사업, 광고사업 같은 분야의 사업권을 가진다. 필요에 따라 개발업자는 사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 위탁할 수 있다.

##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03호(2003.4.24)로 채택

-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공업지구에서 기업의 창설, 등록, 운영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업활동의 편의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투자당사자, 투자부문) 공업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 수 있다. 투자는 공업, 건설, 운수, 체신, 과학기술, 상업, 금융, 관광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 할 수 있다.
- 제3조 (투자장려) 공업지구에서는 하부구조건설부문,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의 기업창설을 특별히 장려한다. 장려부문의 기업은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이용조건의 보장 같은 우대를 받는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장려, 제한, 금지하는 업종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합의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 제4조 (기업창설형식) 공업지구에서 투자가는 단독 또는 다른 투자가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여러가지 형식의 기업을 창설할 수 있다.
- 제5조 (기업의 규약) 기업은 규약을 가져야 한다. 규약에는 기업의 명칭 및 주소, 창설목적, 업종 및 규모,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기업책임자, 재정검열원의 임무와 권한, 주식, 채권의 발행사항, 이윤분배, 해산 및 청산, 규약의 수정보충 같은 내용을 밝힌다.

- 제6조 (기업의 경영조건과 등록자본) 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관리 성원과 종업원, 고정된 영업장소 같은 것을 두어야 한다. 등록 자본은 총투자액의 10%이상 되어야 한다.
- 제7조 (기업의 창설승인, 등록기관) 공업지구에서 기업의 창설승인, 등록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기업의 창설승인, 등록과 관련한 준칙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 (기업의 창설신청) 투자가는 공업지구에 기업을 창설하려 할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창설신청서를 내야 한다. 기업창설 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 투자가의 이름과 주소, 기업책임자의 이름,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업종 및 규모, 투자기간, 연간수입액과 이윤액, 관리기구, 종업원수 같은 것을 밝히며 기업의 규약, 자본신용확인서, 경제기술타산서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9조 (기업창설신청의 처리)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기업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기업창설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기업의 명칭,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업종 및 규모, 투자기간, 관리성원 및 종업원수 같은 것을 밝힌 기업창설승인서를,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부결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 제10조 (투자기간)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투자가는 기업창설승인서에 정해진 기간안에 투자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간안에 투자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투자기일 연장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투자기일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 (투자형태) 투자는 화폐재산이나 현물재산, 재산권 같은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재산과 재산권의 가치평가는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한다.

**제12조 (기업등록신청)** 투자가는 등록자본 또는 그 이상 액수의 투자를 한 다음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기업등록신청은 개발업자가 공업지구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한다.

**제13조 (기업등록신청내용)** 기업등록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 투자가의 이름과 주소,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업종 및 규모, 조업예정일, 관리성원 및 종업원수 같은것을 밝히며 기업창설승인서 사본, 토지이용권등록증사본, 투자실적확인문건 같은것을 첨부한다.

**제14조 (기업등록신청의 처리, 기업창설일)**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기업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기업등록증을 발급하여 주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부결이유를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기업등록증을 발급한 날을 기업의 창설일로 한다.

**제15조 (세관, 세무등록)** 기업은 기업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안으로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세관등록은 공업지구세관에, 세무등록은 공업지구세무소에 한다.

**제16조 (경영활동범위 및 업종변경)** 기업은 승인받은 업종의 범위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주식, 채권발행)** 기업은 규약에서 정한데 따라 주식, 채권 같은 것을 발행할 수 있다. 주식, 채권 같은 것을 양도하거나 유통시킬 수 있다.

제18조 (경영물자, 제품반출입) 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제한 없이 공업지구에 들여오거나 공업지구에서 생산한 제품과 구입한 물자를 공업지구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제19조 (반출입 신고) 공업지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한다. 물자를 반출입하려는 기업은 물자반출입 지점의 세관에 신고를 하고 검사를 받아야한다.

제20조 (공화국기관, 기업소, 단체와의 연계) 기업은 중앙공업지구지도 기관을 통하여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계약을 맺고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원료, 자재, 부분품을 위탁·가공할 수 있다.

제21조 (회계결산) 기업은 반년, 연간을 주기로 회계결산을 하여야 한다. 연간회계결산서는 회계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예비기금조성) 기업은 결산이윤에서 정해진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다음 예비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등록자본의 10%가 될 때까지 해마다 결산이윤의 5%로 조성하며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경영손실을 메꾸는데만 쓸 수 있다.

제23조 (기타 기금조성) 기업은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 같은 기금을 자체로 조성하고 쓸 수 있다.

제24조 (이윤배당) 기업은 연간결산 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가들에게 배당할 수 있다. 이윤배당은 결산이윤에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예비기금을 조성한 다음 남은 순소득금으로 한다.

제25조 (기업의 해산신고) 해산하려는 기업은 이사회 또는 출자가총회

에서 토의결정하고 해산신고서를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해산신고서를 낸 날을 기업의 해산일로 한다.

**제26조 (청산위원회조직)** 기업은 해산신고서를 낸 날부터 10일안으로 해산을 공개하고 기업책임자, 채권자대표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지정하는 법률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 5~9명으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 성원명단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청산사업착수)** 청산위원회는 성원명단을 승인 받은 날부터 15일안으로 청산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의 사업비용은 해산되는 기업의 남은 재산에서 먼저 지출한다.

**제28조 (청산위원회의 사업내용)** 청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채권자, 채무자에게 기업의 해산을 통보한다.
2. 채권자회의를 소집한다.
3. 기업의 재산을 넘겨받아 관리한다.
4. 채권채무관계를 확정하고 재정상태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한다.
5. 기업의 재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한다.
6. 청산안을 작성한다.
7. 세금을 납부하고 채권채무를 청산한다.
8. 청산하고 남은 재산을 확정한다.
9. 이밖에 청산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를 처리한다.

**제29조 (청산하고 남은 재산에 대한 세금납부)** 청산위원회는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재산총액이 등록자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에 해당하는 몫을 기업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5년이상 운영한 기업에 대하여서는 초과분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면제하여 준다.

제30조 (해산신고를 한 기업의 재산처리) 해산신고를 한 기업의 재산은 청산사업이 끝나기 전에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재산은 공업지구안에서 처리하거나 공화국령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제31조 (청산사업의 결속내용)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났을 경우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업등록증과 함께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제출하며 기업등록,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취소하고 거래은행의 돈을 자리를 막아야 한다.

제32조 (지사, 영업소, 개인의 영업등록) 공업지구에서 지사, 영업소, 개인이 영리활동을 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해당 등록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호(2003.9.18)로 채택

###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세무질서를 엄격히 세워 세금의 부과와 납부를 정확히 하는데 이바지 한다.



-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업지구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은 기업과 개인에게 적용한다. 기업에는 공업지구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과 지사, 영업소, 개인업자가, 개인에는 납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이 속한다.
- 제3조 (세무사업단위와 지도단위) 세금의 부과와 징수는 공업지구 세무소가 한다. 공업지구 세무소의 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 제4조 (기업의 세무등록) 공업지구에서 세무등록은 세무소에 한다. 이 경우 세무등록 신청서와 기업등록증 사본을 낸다. 세무등록은 기업등록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20일안으로 한다.
- 제5조 (기업의 세무변경 및 취소) 기업의 세무변경 등록은 통합 분류되었거나 등록자본 업종같은 것을 변경 등록한 날부터 20일안으로 한다. 해산되는 기업의 세무등록 취소는 해산 20일전까지 한다.
- 제6조 (개인의 세무등록) 공업지구에 182일 이상 체류하면서 소득을 얻은 개인의 세무등록은 20일안으로 한다. 이 경우 세무등록신청서를 낸다. 종업원의 세무등록 수속을 기업이 할 수도 있다.
- 제7조 (세무등록증발급) 세무등록증의 발급은 세무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안으로 한다. 세무변경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세무등록증을 다시 발급한다.
- 제8조 (세무문건의 작성언어) 공업지구에서 세무문건은 조선말로 작성한다. 필요에 따라 세무문건을 다른 나라말로 작성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조선말로 된 번역문을 첨부한다.

- 제9조 (세무문건의 종류와 양식) 세무문건의 종류와 양식은 공업지구세무소가 공업지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10조 (세무문건의 보존기간) 세무문건은 5년간 보존한다. 그러나 연간회계결산서, 고정자산계산장부는 기업이 운영되는 기간까지 보존한다.
- 제11조 (세금의 계산과 납부화폐) 공업지구에서 세금의 계산과 납부는 미국 US\$로 한다.
- 제12조 (세금의 납부절차) 세금의 납부는 세금납부신고서를 공업지구세무소에 내고 확인을 받은 다음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지정한 은행에 한다. 이 경우 은행은 세금 납부자에게 세금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고 공업지구세무소에는 세금납부통지서를 보낸다.
- 제13조 (잘못 납부한 세금의 처리)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지 못한 기업과 개인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 소득세는 다음년도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기 30일 전까지 개인소득세, 상속세, 거래세, 영업세, 도시경영세는 납부하여야 할 날부터 60일 안으로 한다.
- 제14조 (과납액, 미납액 처리) 수정신고로 추가납부할 경우에는 세금납부의무자가 미납액의 5%를 가산한 금액을 계산 납부하며 과납액은 공업지구세무소가 검토했고 30일안으로 돌려준다.
- 제15조 (세무등록 세금납부 기간) 세무등록 세금납부는 정해진 기간에 한다.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 세무등록, 세금납부를 정해진 시간에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로 없어진 날부터 10일안으로 한다.

제16조 (합의서 정부간 협정의 적용) 세금과 관련하여 북남사이에 맺은 합의서 또는 공화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맺은 협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7조 (세금의 부과, 면제조건) 공업지구에서는 이 규정이 정한 세금만을 부과한다. 개발업자의 재산 개발과 관련한 경제활동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제2장 기업소득세

제18조 (기업의 소득에 대한 세금) 기업은 공업지구에서 경영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기타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경영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에는 생산물판매소득, 건설물인도소득, 운임 및 요금소득 같은 것이, 기타소득에는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 재산판매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봉사소득, 징여소득 같은 것이 속한다.

제19조 (기업소득세의 세률) 공업지구에서 기업소득세의 세율은 결산리윤의 14%로 한다. 그러나 하부구조건설부문과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의 기업소득세의 세율은 결산리윤의 10%로 한다.

제20조 (결산리윤의 확정방법) 결산리윤은 기업의 총 수입금에서 그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과 거래세 또는 영업세를 덜고 확정한다. 결산리윤의 확정에 필요한 수입항목, 비용지출항목, 계산시점과 가치평가방법은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1조 (기업소득세의 계산기간)** 기업소득세의 계산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새로 창설된 기업은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 해산되는 기업은 해산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해산 선포일까지를 기업소득세의 계산기간으로 한다.

**제22조 (기업소득세의 계산방법)** 기업소득세의 계산은 결산리윤에 이 규정 제19조의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한다. 결산리윤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기업과 연간 판매 및 봉사 수입액이 300만 US\$ 아래인 기업은 연간 판매 및 수입 봉사 수입액의 2% 또는 1.5%를 기업소득세로 납부할 수도 있다.

**제23조 (계산방법의 선택)** 기업은 선택한 기업소득세의 계산방법을 3년간 변경할 수 없다. 기업소득세의 계산방법을 변경하려는 기업은 회계연도가 끝나기 1개월전에 공업지구세무소에 변경신청서를 내야 한다.

**제24조 (경영손실금의 총당기간)** 경영손실을 낸 기업은 다음해의 결산리윤으로 메꿀 수 있다. 경영손실을 메꾸는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다.

**제25조 (예정납부, 확정납부기간과 방법)**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게된 기업은 6개월이 지난 다음 2개월안으로 예정납부하고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 3개월안으로 확정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납액은 반환받고 미납액은 추가 납부한다. 6개월기간의 리윤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의 2분의 1을 예정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 (회계검증)** 기업은 기업소득세를 확정납부하기 전에 연간회계결산서에 대한 회계검증을 받아야 한다. 연간판매 및 봉사수입액이

300만 US\$ 아래인 기업은 회계검증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제27조 (기업소득세의 납부기간과 방법)** 기업은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안으로 연간 회계결산서와 연간기업소득세납부신고서를 공업지구세무소에 내고 확인을 받은 다음 세금을 해당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 (해산, 통합, 분리시 세금납부기간)** 해산, 통합, 분리되는 기업은 그 선포일부터 2개월안으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 (기업소득세의 면제, 감면)**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덜어주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장려부문과 생산부문에 투자하여 15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리윤이 나는 해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 50%를 덜어준다.
2. 봉사부문에 투자하여 10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리윤이 나는 해부터 2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1년간 50%를 덜어준다.
3. 리윤을 재투자하여 3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의 70%를 다음 연도에 바쳐야 할 세금에서 덜어준다.

**제30조 (기업소득세 감면기간의 계산방법)** 기업소득세의 감면기간은 리윤이 나는 해부터 련속하여 계산한다. 이 기간 경영손실이 난 해에 대해서도 기업소득세의 감면기간에 포함시킨다.

**제31조 (감면신청서의 제출)** 기업소득세를 감면 받으려는 기업은 공업지구세무소에 신청서와 경영기간, 재투자액을 증명하는 확인문

건을 내야한다. 신청서에는 명칭과 소재지, 업종, 리윤이 생긴 연도, 총 투자액, 거래은행, 돈자리 번호 같은 것을 밝힌다.

**제32조 (감면해주었던 기업소득세의 회수조건)** 이 규정 제29조에 정한 기간전에 철수, 해산하거나 재투자한 자본을 거두어들인 기업에 대하여서는 이미 감면하여 주었던 기업소득세를 회수한다.

**제33조 (비영리지사 등의 세률)** 영리활동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지사, 영업소, 사무소와 공업지구밖의 기업, 경제조직, 단체가 공업지구안에서 얻은 기타 소득에 대한 세률은 다음과 같다.

1. 리자소득은 소득액의 10%
2.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은 소득액에서 7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0%
3. 재산판매소득, 지적재산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봉사소득은 소득액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0%

**제34조 (비영리지사 등의 세금납부 기간 및 방법)** 영리활동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지사, 영업소, 사무소가 기타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수익단위가 다음 달 10일안으로 신고 납부한다. 공업지구밖의 기업, 경제조직, 단체가 공업지구안에서 기타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소득지불단위가 소득을 지불하기 전에 공제하여 다음달 10일안으로 납부한다.

### 제3장 개인소득세

**제35조 (개인소득세의 납부의무)** 공업지구에서 소득을 얻은 개인은 개

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소득세에는 로동보수, 리자 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 재산판매소득, 지적재산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기술고문, 기능공 양성, 상담 같은 경영봉사 소득, 증여 소득이 속한다.

**제36조 (개인소득세의 세률)** 개인소득세의 세률은 다음과 같다.

1. 로동보수에 대한 세률은 월 로동보수액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500US\$ 이상일 경우 이 규정 부록 1에 따른다.
2. 증여소득에 대한 세률은 소득액이 1만 US\$ 이상일 경우 이 규정 부록 2에 따른다.
3. 리자 소득에 대한 세률은 소득액의 10%로 한다.
4.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에 대한 세률은 소득액에서 7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0%로 한다.
5. 재산판매소득, 지적재산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봉사 소득에 대한 세율은 소득액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0%로 한다.

**제37조 (개인 소득세의 계산방법)** 개인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로동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계산은 월 로동 보수액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이 규정 부록 1의 세률을 적용하여 한다.
2.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계산은 소득액의 이 규정 부록 2의 세률을 적용하여 한다.
3. 리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계산은 소득액에 10%의 세률을 적용하여 한다.
4.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의 계산은 소득액에서 7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10%의 세률을 적용하여 한다.

5. 재산판매소득, 지적재산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봉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계산은 소득액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10%의 세률을 적용하여 한다.

**제38조 (현금이 아닌 개인소득의 가격계산)** 물품, 유가증권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그것을 취득할 당시의 현지가격으로 계산한다.

**제39조 (개인소득세의 납부기간과 방법)** 개인소득세의 납부기간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로동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다음달 10일안으로 로동보수를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하거나 수익인이 신고납부하며 공업지구안에 있는 기업 또는 비영리지사, 영업소, 사무소를 대신하여 공업지구밖에 있는 기업, 경제조직, 단체가 로동보수를 지불할 경우에는 지구안에 있는 기업 또는 비영리지사, 영업소, 사무소가 공제 납부한다.
2. 재산판매소득,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날부터 30일안으로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
3.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 지적재산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봉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다음달 10일안으로 소득을 지불하는 기업이 공제납부하거나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

**제40조 (개인소득세의 면제대상)** 개인소득세의 면제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북남 사이에 맺은 합의서 또는 공화국과 다른 나라사이에 맺은 협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로 한 소득
2. 공화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저축성 예금리자와 보험



- 금 또는 보험보상금소득
3. 공업지구에 설립된 은행에 비거주자들이 예금한 돈에 대한  
이자소득

## 제4장 재산세

제41조 (재산세의 납부의무) 기업과 개인은 공업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영구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 (재산세의 납부당사자) 재산세의 납부는 매해 1월1일 현재로  
건물 소유자가 한다. 건물 소유자는 건물을 임대하였거나 저장  
하였을 경우에도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 (건물의 등록방법) 건물소유자는 건물을 취득한 다음달 20일  
안으로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건물등록신청서를 내고 건물등록  
을 하여야 한다. 건물등록신청서에는 건물소유자의 이름, 주소,  
건물명, 단위, 수량, 건평, 내용년한, 건설연도, 취득가격 같은  
것을, 양도받은 건물은 양도자의 이름, 주소 같은 것을 밝힌다.

제44조 (건물의 등록가격) 건물의 등록가격은 해당건물을 취득할 당시  
의 현지가격으로 한다.

제45조 (건물의 재등록) 건물소유자는 등록된 건물의 가격이 달라졌을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재등록을 할 수 있다. 재등록하려는  
건물소유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변경된 건물의 가격확인문  
건을 내야 한다.

제46조 (재산세의 부과대상) 재산세는 등록된 건물가격에 대하여 부과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건물을 등록하였을 경우 건물등록증을 건물소유자에게 주고 그 사본을 공업지구세무소에 보내야 한다.

제47조 (재산세의 세률) 재산세의 세률은 이 규정 부록 3에 따른다.

제48조 (재산세의 계산방법) 재산세의 계산은 등록된 건물가격에 이 규정 부록 3의 세율을 적용하여 한다.

제49조 (재산세의 납부기간과 방법) 공업지구세무소는 매해 2월안으로 재산세납부통지서를 건물 소유자에게 발급하며 건물 소유자는 재산세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새로 건설한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을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다음 30일안으로 12월 31일까지의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0조 (건물폐기시 과납세금의 반환) 건물을 폐기한 자는 건물폐기확인서와 함께 이름, 주소, 건물명, 폐기날짜, 납부한 재산세, 반환 받을 재산세 같은 것을 밝힌 재산세반환신청서를 공업지구세무소에 내야 한다. 공업지구세무소는 신청내용을 10일안으로 검토하고 건물을 폐기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세를 돌려주어야 한다.

제51조 (새 건물에 대한 재산세의 면제) 새로 건설한 건물을 소유하였을 경우에는 등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 제5장 상속세

제52조 (상속세의 납부의무) 공업지구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은 자는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화폐재산, 현물재산, 유가증권, 지적재산권, 보험청구권 같은 재산과 재산권이 속한다.

제53조 (상속세의 부과대상)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에서 다음의 지출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부과한다.

1. 상속시키는 자의 채무액
2. 상속받은 자가 부담한 장례비용
3. 상속기간에 상속재산을 보존관리하는 데 든 비용
4. 재산상속과 관련한 공증료 같은 지출
5. 가족들의 부양료 30만 US\$

제54조 (상속재산의 가격) 상속재산의 가격은 재산을 상속받을 당시의 현지가격으로 한다.

제55조 (상속세의 세률) 상속세의 세률은 상속받은 재산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상속 재산액이 10만 US\$ 이상일 경우에는 이 규정 부록 4에 따른다.

제56조 (상속세의 계산방법) 상속세의 계산은 상속받은 재산액에서 해당 공제액을 뺀 후 남은 상속 재산액에 이 규정 부록 4의 세률을 적용한다.

제57조 (상속세의 납부재산) 상속세는 화폐재산으로 납부한다. 부득이

한 사정으로 상속세를 화폐재산으로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 가격, 수량, 품질, 현물재산으로 납부하는 리유 같은 것을 밝힌 신청서를 공업지구세무소에 내고 승인 받은 다음 현물재산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제58조 (상속세의 납부기간과 방법)** 재산을 상속받은 자는 6개월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액, 공제액, 상속세금액 같은 것을 밝힌 상속세 납부서와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상속세공제신청서를 함께 내야 한다. 재산을 상속받은 자가 2명이상일 경우에는 상속자별로 자기 몫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9조 (상속세의 분할납부)** 상속세가 3만 US\$ 이상일 경우에는 공업지구세무소의 승인을 받아 그것을 3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 제6장 거래세

**제60조 (거래세의 납부의무)** 생산부문의 기업은 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1조 (거래세의 부과대상)** 거래세는 생산물의 판매수익금에 부과한다.

**제62조 (거래세의 세율)** 거래세의 세율은 이 규정 부록 5에 따른다.

**제63조 (거래세의 계산방법)** 거래세의 계산은 생산물판매액에 이 규정 부록 5의 세율을 적용하여 한다. 생산업과 봉사업을 함께 하는 기업의 거래세와 영업세의 계산은 따로 한다.

제64조 (거래세의 납부기간과 방법) 생산물판매자는 분기가 지난 다음 달 20일안으로 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농업부문같이 계절성을 띠는 생산부문 기업의 거래세납부방법은 공업지구 세무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5조 (거래세의 특혜)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남측지역에 내가거나 다른 나라에 수출할 경우에는 거래세를 면제한다.

## 제7장 영업세

제66조 (영업세의 납부의무) 봉사부문의 기업은 영업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7조 (영업세 부과대상) 영업세는 교통운수, 체신, 상업, 금융, 관광, 광고, 려관, 급양, 오락, 위생편의 같은 부문의 봉사수익금과 건설부문의 건설물 인도 수익금에 부과한다.

제68조 (영업세의 세률) 영업세의 세률은 이 규정 부록 6에 따른다.

제69조 (영업세의 계산방법) 영업세의 재산은 업종별 수익금의 이 규정 부록 6의 세률을 적용하여 한다. 여러 업종의 영업을 하는 기업의 영업세 계산은 업종별로 한다.

제70조 (영업세의 납부기간과 방법) 기업은 영업세를 분기마다 계산하여 다음달 20일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1조 (하부구조부문기업의 영업세 면제) 전기, 가스, 난방같은 에네

르기의 생산 및 공급부문과 상하수도, 용수, 도로부문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영업세를 면제한다.

## 제8장 지방세

- 제72조 (지방세의 납부의무) 기업과 개인은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에는 도시경영세, 자동차리용세가 속한다.
- 제73조 (도시경영세의 부과대상) 도시경영세는 기업의 월노임 총액 또는 개인의 로동보수, 이자소득, 배상소득, 재산판매소득 같은 월수입 총액에 부과한다.
- 제74조 (도시경영세의 세률) 도시경영세의 세율은 이 규정 부록 7에 따른다.
- 제75조 (도시경영세의 계산방법) 도시경영세의 계산은 기업의 월로임 총액 또는 개인의 월수입 총액에 이 규정 부록 7의 세률을 적용하여 한다.
- 제76조 (도시경영세의 납부방법) 기업은 도시경영세를 달마다 계산하여 다음달 10일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의 도시경영세는 소득을 얻은 다음달 10일안으로 소득을 지불하는 기업이 공제 납부하거나 수익인이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제77조 (자동차리용세의 납부의무) 자동차리용세는 매해 1월 1일 현재로 자동차를 소유한 기업 또는 개인이 납부한다. 자동차에는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자동자전차와 특수차가 속한다. 특수차에는 기중기차, 유조차, 지게차, 세멘트운반차, 굴착기, 불도젤, 랭동차 같은 것이 속한다.

**제78조 (자동차의 등록)** 공업지구에서 자동차를 리용하려는 자는 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자동차 소유자의 이름, 거주지 또는 체류지, 자동차 번호, 종류, 좌석수, 적재중량, 소유날자 같은 것을 밝힌 자동차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자동차를 등록하였을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내주고 그 사본을 공업지구세무소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79조 (자동차리용세의 세금액)** 자동차시용세의 세금액은 이 규정 부록 8에 따른다.

**제80조 (자동차리용세의 계산방법)** 자동차리용세의 계산은 종류별 자동차대수에 이 규정 부록 8의 세금액을 적용하여 한다.

**제81조 (자동차리용세의 납부기간 및 방법)** 공업지구세무소는 매년 2월안으로 자동차리용세 납부 통지서를 발급하며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리용세 납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자동차리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업지구에서 자동차를 새로 소유한 자는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안으로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리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2조 (자동차 폐기시 과납 세금의 반환)** 자동차를 폐기한 자는 자동차 폐기확인서와 함께 이름, 주소, 자동차명, 폐기날짜, 납부한 자동차리용세, 반환받을 자동차리용세 같은 것을 밝힌 자동차리용세 반환 신청서를 공업지구세무소에 내야 한다. 공업지구세무소는 신청 내용을 10일안으로 검토하고 자동차를 폐기

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리용세를 돌려주어야 한다.

**제83조 (자동차를 리용하지 않은 기간의 세금면제)** 자동차를 60일 이상 연속 리용하지 않은 자는 공업지구 세무서에 신청서를 내고 리용하지 않은 기간의 자동차리용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제9장 제재 및 신소

**제84조 (연체료)** 기업 또는 개인이 세금납부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일이 지난 날부터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하여 매일 0.05%의 연체료를 물린다. 연체료는 세금 미납액의 15%를 넘을 수 없다.

**제85조 (제재대상과 벌금)** 기업 또는 개인에게 벌금을 물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세무등록, 건물등록, 자동차등록을 제때에 하지 않았거나 세금납부신고서, 연간 회계결산서 같은 세무 문건을 제 때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1,000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2. 세금을 적게 공제하였거나 공제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하여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3.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하여 3배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제86조 (신소 및 처리)** 세금부과 및 납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업



과 개인은 공업지구세무소에 의견을 제기하거나 신소할 수 있다.  
공업지구 세무소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의견 또는 신소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부록 1〉

#### 월로동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세률표

(금액단위 : US\$)

NO	월로동보수	세 률
1	500이상~1,000	500을 초과하는 금액의 4%
2	1,000이상~3,000	20+1,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7%
3	3,000이상~6,000	160+3,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1%
4	6,000이상~1만	490+6,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5	1만이상	1,090+1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부록 2〉

####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세률표

(금액단위 : US\$)

NO	증여소득액	세 률
1	1만이상~10만	1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2%
2	10만이상~50만	1,800+1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5%
3	50만이상~100만	2만 1,800+5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8%
4	100만이상~300만	6만 1,800+1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1%
5	300만이상	28만 1,800+3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4%

### 〈부록 3〉

#### 건물에 대한 재산세

NO	건물용도	세 률(%)
1	생산용건물	0.1
2	주택용건물	0.2
3	상업용건물	0.5
4	오락용건물	1

<부록 4>

상속재산에 대한 세률표

(금액단위 : US\$)

NO	상속재산액	세 률
1	10만이상~100만	1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6%
2	100만이상~500만	5만 4,000+1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3	500만이상~1,500만	45만 4,000+5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	1,500만이상~3,000만	195만 4,000+1,5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	3,000만이상	495만 4,000+3,0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부록 5>

거래세의 세률표

NO	구 분	세 률(%)
1	전기, 전자, 금속, 기계제품	1
2	연료, 광물, 화학, 건재, 고무제품	1
3	섬유, 신발, 일용, 가죽, 기타 공업제품	1
4	식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2
5	술, 담배, 기타 기호품	15

<부록 6>

영업세의 세률표

NO	구 분	세 률(%)
1	건설, 교통운수부문	1
2	금융부문	1
3	상업부문	2
4	급양, 려관, 관광, 광고, 위생편의부문	1
5	교육, 문화, 체육, 기타 봉사부문	1
6	부동산거래부문	2
7	오락부문	7

〈부록 7〉

도시경영세의 세률표

NO	납부의무자	세률(%)
1	기업	0.5
2	개인	0.5

〈부록 8〉

자동차리용세의 금액표

NO	구분	세액(US\$)
1	승용차 대당/년	40
2	버스 12석까지 대당/년	40
	13~30석까지 대당/년	50
	31석이상 대당/년	60
3	화물자동차 제톤당/년	3
4	자동차전차 대당/년	10
5	특수차 대당/년	20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2호(2003.9.18)로 채택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의 기업에 필요한 로력의 채용과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업의 경영활동과 종업

원의 노동생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업지구에 창설된 기업(지사, 영업소, 사무소 포함)과 종업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로력의 채용원칙) 기업에 필요한 로력은 공화국의 로력으로 채한다. 필요에 따라 기업은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 로력을 채용할 수도 있다.

제4조 (노동조건의 보장) 기업은 종업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

제5조 (로임의 제정) 종업원의 로임은 종업원 월 최저 로임에 기초하여 기업이 정한다.

제6조 (로력동원의 금지)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이 없는 일에는 종업원을 동원시킬 수 없다. 자연재해 같은 어찌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종업원을 동원시킬 수 있다.

제7조 (감독통제기관) 공업지구에서 기업의 로력채용과 관리사업에 대한 감독 통제사업은 공업지구 관리기관이 한다.

## 제2장 로력의 채용과 해고

제8조 (로력의 보장자) 공업지구의 기업에 필요한 로력을 보장하는 사

업은 로력알선기업이 한다. 기업은 필요한 로력을 로력알선 기업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로력알선 계약의 체결)** 기업과 로력알선 기업은 로력알선 계약을 맺고 그것을 어김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은 기능시험, 인물심사 같은 것을 통하여 필요한 로력을 선발할 수 있다. 로력알선 계약에는 채용할 로력자 수, 성별, 연령, 업종, 기능, 채용기간, 로임수준 같은 것을 밝힌다.

**제10조 (로력의 채용 계약)** 기업은 선발된 로력자와 월 로임액, 채용기간 노동시간 같은 것을 확정하고 로력채용 계약을 맺어야 한다. 로력채용 계약을 맺은 로력자는 기업의 종업원으로 된다.

**제11조 (로력알선료)** 로력알선기업은 기업으로부터 로력알선료를 받을 수 있다. 로력알선료는 로력알선기업이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의 채용)**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을 채용한 기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이름, 성별, 생년월일, 거주지, 지식정도, 기술자격, 직종 같은 것을 밝힌 로력채용문건을 내야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로력채용문건사본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13조 (노동규칙의 작성과 실시)** 기업은 종업원 대표와 협의하고 모든 종업원에게 적용하는 노동규칙을 작성하고 실시할 수 있다. 노동규칙에는 노동시간과 휴식시간, 노동보호규정, 노동생활질서, 상벌기준 같은 것을 밝힌다.

**제14조 (종업원의 해고조건)** 로력채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종업원을 내보낼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직업병이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자기 직종 또는 다른 직종에서 일할 수 없을 경우
2. 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조건의 변동으로 종업원이 남을 경우
3. 기술과 기능의 부족으로 자기 직종에서 일할 수 없을 경우
4. 기업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거나 노동생활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

**제15조 (종업원의 해고)** 종업원을 내보내려는 기업은 그 사실을 3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내보낸 종업원의 명단은 로력알선기업에 내야 한다.

**제16조 (종업원을 해고할 수 없는 조건)** 종업원을 내보낼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직업병을 앓거나 작업과정에 부상당하여 치료받고 있는 기간이 1년이 되지 못하였을 경우
2. 병으로 치료받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3. 임신, 산전산후 휴가, 어린이에게 젖먹이는 기간인 경우

**제17조 (종업원의 사직 조건)** 종업원이 사직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적으로 일을 그만 두거나 다른 일을 해야할 사정이 생겼을 경우
2. 직종이 맞지 않아 기술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을 경우
3. 학교에 입학하였을 경우

**제18조 (종업원의 사직 절차)** 사직하려는 종업원은 7일전까지 기업에 사직서를 내야 한다. 기업은 사직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에

서 사직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업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업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퇴직 보조금의 지불)** 기업의 사정으로 1년이상 일한 종업원을 내보내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준다. 보조금의 계산은 3개월 평균 월 로임에 일한 횟수를 적용하여 한다.

### 제3장 노동시간과 휴식

**제20조 (노동시간)** 공업지구에서 기업의 종업원 노동시간은 주 48시간으로 한다. 기업은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종업원의 주 노동시간을 48시간 보다 짧게 할 수 있다. 계절적 제한을 받는 부문의 기업은 연간 노동시간 범위에서 종업원의 주 노동시간을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제21조 (노동시간의 준수)** 기업은 종업원에게 로력채용계약 또는 노동규칙에 정해진 노동시간 안에서 노동을 시켜야 한다. 연장작업이 필요한 기업은 종업원대표 또는 해당 종업원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22조 (명절과 공휴일의 휴식보장)** 기업은 종업원에게 공화국의 명절일과 공휴일 휴식을 보장하여야 한다. 명절일과 공휴일에 노동을 시켰을 경우에는 15일 안으로 대휴를 주거나 해당한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23조 (휴가보장)** 기업은 종업원에게 해마다 14일간의 정기휴가를 주며

중로동, 유해로동을 하는 종업원에게는 2~7일간의 보충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신한 여성종업원에게는 60일간의 산전, 90일간의 산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 제4장 노동보수

제24조 (노동보수의 내용) 노동보수에는 로임, 가급금, 장려금, 상금이 속한다. 기업은 종업원의 노동보수를 일한 실적에 따라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제25조 (종업원의 월 최저로임) 기업의 종업원 월 최저로임은 50US\$로 한다. 종업원 월 최저로임은 전년도 종업원 월 최저로임의 5%를 초과하여 높일 수 없다. 종업원 월 최저로임을 높이는 사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합의하여 한다.

제26조 (종업원월로임의 제정) 종업원의 월로임은 종업원 월최저로임보다 낮게 정할 수 없다. 그러나 조업 준비기간에 있는 기업의 종업원과 견습공, 무기능공의 로임은 종업원 월최저로임의 70%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제27조 (휴가기간의 로임지불) 기업은 정기 및 보충휴가를 받은 종업원에게 휴가일수에 따르는 휴가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산중 산후휴가를 받은 녀성종업원에게는 60일에 해당하는 휴가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28조 (휴가비의 계산방법) 휴가비의 계산은 휴가받기 전 3개월간의



로임을 실 가동일수에 따라 평균한 하루 로임에 휴가일수를 적용하여 한다.

**제29조 (생활보조금)** 기업은 자기의 책임으로 또는 양성기간에 일하지 못한다에 대하여 종업원에게 일당 또는 시간당 로임의 60%이상 에 해당하는 생활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생활보조금을 주는 기간 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생활보조금에는 사회보험료, 도시 경영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30조 (연장 야간작업의 가급금)** 기업은 노동시간밖의 연장작업 또 는 야간작업을 한 종업원에게 일당 또는 시간당 로임액의 50% 에 해당하는 가급금을 주어야 한다. 명절일, 공휴일에 로동을 시 키고 대휴를 주지 않았거나 노동시간 밖의 야간작업을 시켰을 경우에는 로임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급금을 주어야 한다. 야 간작업에는 22시부터 다음달 6시까지의 사이에 진행된 로동이 속한다.

**제31조 (상금의 지불)** 기업은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리윤의 일부로 상금지 금을 조성하고 일을 잘한 종업원에게 상금 또는 상품을 줄 수 있다.

**제32조 (노동보수의 지불)** 기업은 노동보수를 화폐로 종업원에게 직접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상금은 상품으로 줄 수도 있다. 노동보수 를 주는 날이 되기 전에 사직하였거나 기업에서 내보낸 자에게 는 그 수속이 끝난 다음 노동보수를 주어야 한다.

## 제5장 로동보호

제33조 (산업위생조건의 보장) 기업은 고열, 가스, 먼지, 소음을 막고 채광, 조명, 통풍같은 사업위생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4조 (여성노력의 보호) 임신 6개월이 지난 여성종업원에게는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일을 시킬 수 없다. 기업은 여성종업원을 위한 로동위생보호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제35조 (탁아소, 유치원의 운영) 기업은 실정에 맞게 종업원의 자녀를 위한 탁아소, 유치원을 꾸리고 운영할 수 있다.

제36조 (로동안전기술교육) 기업은 종업원에게 로동안전기술교육을 준 다음 일을 시켜야 한다. 로동안전기술교육기간과 내용은 업종과 직종에 따라 기업이 정한다.

제37조 (로동보호물자의 공급) 기업은 종업원에게 로동보호용구, 작업필수품 같은 로동보호물자를 제때에 공급하여야 한다. 로동보호물자의 공급기준은 기업이 정한다.

제38조 (로동재해위험 제거) 로동재해 위험이 생긴 기업은 즉시 영업을 중지하고 그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기업은 로동안전 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제39조 (사고 발생시의 조치) 기업은 작업과정에 종업원이 사망하였거나 부상, 중독같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즉시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업지

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사고 심의를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 제6장 사회문화시책

제40조 (사회문화시책의 실시) 공업지구의 기업에서 일하는 공화국의 종업원과 그 가족은 국가가 실시하는 사회문화시책의 혜택을 받는다. 사회문화시책에는 무료교육, 무상치료, 사회보험, 사회보장 같은 것이 속한다.

제41조 (사회문화시책기금의 조성) 사회문화시책비는 사회문화시책기금으로 보장한다. 사회문화시책기금은 기업으로부터 받는 사회보험료와 종업원으로부터 받는 사회문화시책기금으로 조성한다.

제42조 (기업의 사회보험료 납부) 기업은 공화국국민인 종업원에게 지불하는 월로임 총액의 15%를 사회보험료로 달마다 계산하여 다음 달 10일안으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사회문화시책과 관련하여 기업은 사회보험료 밖의 다른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제43조 (사회문화시책기금의 납부) 공화국국민인 종업원은 월로임액의 일정한 몫을 사회문화시책기금으로 계산하여 다음달 10일안으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 (사회문화시책기금의 리용) 사회문화 시책기금의 리용질서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5조 (문화후생기금의 리용) 기업은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리윤의 일

부로 종업원을 위한 문화후생기금을 조성하고 쓸 수 있다. 문화후생기금은 종업원의 기술문화수준의 향상과 체육사업, 후생시설운영 같은데 쓴다.

## 제7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46조 (벌금 및 영업중지)**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이 규정을 어기고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업에 100~2,000US\$까지의 벌금을 물리거나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벌금 및 영업중지는 사전에 경고하였으나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한다.

**제47조 (사회보험연체료)** 사회보험료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기일이 지난 날부터 매일 0.05%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물린다. 연체료는 미납액의 15%를 넘을 수 없다.

**제48조 (분쟁해결방법)** 노동과 관련하여 생긴 의견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노동중재절차로 해결한다.

**제49조 (신소 및 처리)** 이 규정을 어긴 것과 관련하여 준 제재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업과 종업원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의견을 제기하거나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신소할 수 있다. 공업지구관리기관과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의견 또는 신소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1호(2003.12.11)로 채택

-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설립과 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공업지구관리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설립자와 지위)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설립은 개발업자가 한다. 설립된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투자 및 경영 활동과 관련한 사업을 직접 맡아하는 법인으로 된다.
- 제3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설립시점)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설립시점은 개발업자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 제4조 (리사장의 지위) 공업지구관리기관에는 리사장 1명을 둔다. 리사장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을 대표하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업 전반을 관할한다.
- 제5조 (리사장의 임명과 해임) 리사장의 임명 또는 해임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의 해당 사업준칙에 따른다. 그러나 초대 리사장의 임명은 개발업자가 한다.
- 제6조 (기구와 정원수의 제정) 공업지구관리기관의 기구와 정원수는 리사장이 정한다. 리사장은 공업지구의 개발계획과 그 실행정

도에 맞게 기구와 정원수를 바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기관 성원의 자격과 조건)**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성원으로  
는 전문지식과 해당 부문의 사업경험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다.  
공업지구 안에 설립된 기업 또는 경제조직에 종사하는 자는 공  
업지구 관리기관 성원으로 사업할 수 없다.

**제8조 (관리기관 성원의 임명과 해임)** 공업지구관리기관 성원의 임명  
과 해임은 리사장이 한다. 리사장은 공업지구관리기관 성원을  
임명 또는 해임한 날부터 3일 안으로 그 명단을 중앙공업지구지  
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9조 (필요한 관리기관 성원의 요청)** 리사장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을  
꾸리는데 필요한 성원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요구할수 있  
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리사장이 요구하는 성원을 제때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10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공인, 명판)**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공인과  
명판을 가진다. 공인, 명판의 규격과 형식은 공업지구관리기관  
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등록신청)** 개발업자는 공업지구관리기관  
의 설립준비사업을 끝내고 기관명칭, 기구와 정원수 같은것을  
밝힌 기관등록신청서를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12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등록, 설립일)**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기  
관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안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기관  
등록을 한 날을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설립일로 한다.

제13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임무)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투자조건의 조성 및 투자유치
2. 기업의 창설승인, 등록
3.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4. 토지이용권, 건물, 료전기재의 등록
5.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
6. 하부구조시설의 관리
7. 공업지구의 환경보호, 소방대책
8. 남측 지역으로 출입하는 인원과 수송수단에 대한 증명서 발급
9.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업준칙작성
10. 이밖에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위임하는 사업

제14조 (년간지구개발계획) 공업지구관리기관은 년간지구개발계획을 자체로 작성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년간지구개발계획은 공업지구개발총계획과 단계별계획에 기초하여야 한다.

제15조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의 사업연계)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지구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사업하려 할 경우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16조 (기업책임자회의 조직운영)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기업의 대표들로 기업책임자회의를 조직 운영할 수 있다. 기업책임자회의에서는 지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요문제를 토의하고 대책한다.

제17조 (의견처리)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지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견을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업협의 및 보고)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지구의 개발 및 관리 운영에서 제기되는 중요문제를 정상적으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총화자료는 분기별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운영자금)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운영자금은 수수료 같은 수입으로 한다. 수수료를 정하는 사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제20조 (부족되는 운영자금의 보충) 부족되는 운영자금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기업(지사, 영업소, 사무소, 개인업자 포함)으로부터 받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의 월 로임총액의 0.5%로 한다.

제21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예산편성과 집행)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예산을 자체로 편성하고 집행한다. 년간회계결산서는 다음해 3월 안으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낸다.

## 개성공업지구 출입, 체류, 거주규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2호(2003.12.11)로 채택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의 출입, 체류, 거주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원 및 수송수단의 출입과 체류자, 거주



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남측지역에서 개성공업지구(이 아래부터 공업지구라 한다)로 출입하는 남측인원, 수송수단에 적용한다. 남측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해외동포, 외국인과 그들의 수송수단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출입사업기관)** 공업지구의 출입, 체류, 거주와 관련한 사업은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이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에는 출입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부서를 둔다.

**제4조 (수속의 당사자)** 출입, 체류, 거주수속은 당사자가 한다.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공업지구관리기관이나 초청단위, 대리인도 출입, 체류, 거주수속을 할 수 있다. 17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의 출입, 체류, 거주수속은 부모나 후견인이 한다.

**제5조 (출입통로와 그 지정)** 인원, 수송수단은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이 정한 통로로 출입하여야 한다.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은 출입통로를 정하고 공포하여야 한다.

**제6조 (출입통로의 변경질서)**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은 출입통로를 변경하려 할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출입, 체류, 거주할 수 없는 자)** 공업지구로 출입, 체류, 거주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테러범
2. 마약중독자, 정신병자
3. 전염병환자,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오는 자

4. 위조하였거나 심히 오손되어 확인할수 없게 된 증명서를 가진 자
5.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를 가진 자
6. 출입, 체류, 거주를 금지시키기로 합의한 자

**제8조 (출입관련증명서의 발급)** 출입증, 사업자증, 관광증과 자동차통행증의 발급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해당 증명서발급준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9조 (출입관련증명서의 발급정형통보)**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인원, 수송수단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증명서의 발급정형을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제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원의 출입)** 인원은 려권(합의한 대상에 한함) 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를 가지고 자동차, 열차 같은 수송수단을 리용하여 공업지구에 출입하여야 한다. 14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은 동반자로 기재한 증명서를 소유한 부모 또는 후견인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 장기체류자, 거주자는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을 가지고도 출입할 수 있다.

**제11조 (수송수단의 출입)** 공업지구에서 자동차는 이 규정 제8조에 따라 발급 받은 자동차통행증을 가지고 지정된 통로로 출입하여야 한다. 열차는 당국사이에 합의한 시간표에 따라 출입하여야 한다.

**제12조 (검사, 검역)** 인원, 수송수단은 공업지구출입통로에서 출입검사, 세관검사와 위생검역, 동식물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사, 검역기관은 공업지구의 안전과 출입자의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검사·검역을 과학기술적방법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13조 (체류분류 및 체류기간) 인원은 공업지구에 단기 또는 장기로 체류할 수 있다. 단기체류는 공업지구에 도착한 날부터 90일까지, 장기체류는 91일이상으로 한다. 체류는 해당 증명서의 유효기간안에 하여야 한다.

제14조 (체류기일연장) 공업지구에 들어 온 자는 체류기일을 연장할수 있다. 이 경우 체류기일이 끝나기 3일전에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신청하여 체류기일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체류등록) 공업지구에 도착한 자는 48시간안으로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체류등록을 하고 해당 증명서에 체류등록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직업, 거주지, 체류목적, 기간 같은 것을 밝힌 체류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제16조 (체류등록제외대상) 체류등록을 하지 않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공업지구에 도착한 날부터 7일안으로 돌아 가는 자
2. 남측에 주재하는 국제기구, 다른 나라 대표기관의 성원
3. 관광객
4. 체류등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인원

제17조 (거주등록) 공업지구에 1년 이상 체류하려는 자는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발급신청) 장기체류, 거주하려는 자는 체류등록을 한 날부터 30일 안으로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발급신청서를 내야 한다.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발급신청서에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직업, 체류 또는 거주하려는 곳과 기간, 리유같은것을 밝

히고 최근 6개월 안에 찍은 천연색 상반신사진(3X4cm) 4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발급)**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은 17살이상의 성인에게 발급한다. 미성인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에 동반자로 기재한다.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은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을 해당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7일안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 체류등록증의 유효기간은 1년,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연장할수 있다.

**제21조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 연장)** 체류등록증 또는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7일전에 공업지구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은 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내야 한다.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은 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안으로 해당등록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

**제22조 (거주지변경과 그 등록)** 공업지구에 거주한 자는 필요에 따라 거주지를 옮길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지를 옮긴 날부터 14일안으로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거주지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출생, 사망, 결혼등록)** 공업지구에서 출생, 사망, 결혼 같은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는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등록신청서와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문건을 내고 해당한 등록을 한다. 당사자는 해당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안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증명서의 재발급) 거주등록증, 체류등록증, 출입증, 사업자증, 관광증, 자동차통행증 같은 증명서를 오손시켰거나 분실한 자는 제때에 해당 기관에 신고하고 증명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한다.

제25조 (공업지구밖의 출입) 공업지구에서 공업지구밖의 공화국령역으로 가려는 자는 사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증의 발급신청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하여야 한다.

제26조 (수수료)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발급과 재발급, 유효기간 연장, 거주지변경등록수속 같은 것을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이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7조 (증명서의 소지) 공업지구에서 체류, 거주하는 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28조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권, 서신의 비밀보장) 공업지구에 체류, 거주하는 자는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권, 서신의 비밀을 보장 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체류자, 거주자를 구속, 체포할 수 없으며 몸이나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제29조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반환) 장기체류, 거주하던 자는 사업을 끝마치고 돌아가려 할 경우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을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30조 (규정하지 않은 사항의 협의처리) 출입, 체류, 거주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 개성공업지구 세관규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3호(2003.12.11)로 채택

### 제1장 일반규정

-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의 세관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물자의 반출입과 출입하는 인원, 운수수단의 편의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이 아래부터는 공업지구라 한다)에 창설된 기업(개발업자 포함)과 지사, 영업소, 사무소(이 아래부터는 지사라 한다)가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생산과 경영을 위하여 반출입하는 물자와 우편물, 출입하는 운수수단에 적용한다. 남측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이 아래부터는 개인이라 한다)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 제3조 (세관의 설치) 공업지구의 세관은 공업지구의 출입통로에 설치한다. 기업활동 또는 세관검사, 감독에 편리한 장소에도 세관을 설치할 수 있다. 공업지구로 나드는 개인과 운수수단, 물자와 우편물은 세관이 설치된 곳으로만 통과할 수 있다.
- 제4조 (반출입신고제) 공업지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한다.

- 제5조 (세관등록원칙) 공업지구에서 기업, 지사는 세관등록을 하여야 생산 및 경영활동과 관련한 물자를 반출입할 수 있다.
- 제6조 (반출입금지물품) 공업지구에서는 사회의 안전과 민족경제의 발전,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반출입할수 없다. 반출입금지물품은 이 규정의 부록으로 정한다.
- 제7조 (관세면제 및 부과원칙) 공업지구에서 반출입물자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탁가공하는 물자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물자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공업지구밖의 공화국 영역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제8조 (협의처리사항) 세관사업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관이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제9조 (해당 법규의 적용) 공업지구에서 공업지구밖의 공화국 지역으로 나드는 세관사업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2장 세관등록 및 수속

- 제10조 (세관등록 및 수속의 당사자) 세관등록 및 수속은 해당 기업 또는 지사가 한다. 경우에 따라 대리인도 세관등록 및 수속을 할 수 있다.
- 제11조 (세관등록기일) 기업, 지사는 기업창설 또는 지사설립승인을 받

은 날부터 20일안으로 세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 (세관등록신청서의 제출)** 세관등록을 하려는 기업, 지사는 세관등록신청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세관등록신청서에는 기업 또는 지사등록증의 사본, 공인, 명판의 도안, 세관이 요구하는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세관등록증의 발급)** 세관은 세관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안으로 해당 기업 또는 지사에 세관등록증을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제14조 (업종변경통지)**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기업의 업종변경을 승인하였을 경우 그 정형을 세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15조 (운수수단의 등록)** 공업지구와 남측지역사이를 자주 오가는 운수수단(철도차량제외)은 세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세관에 등록된 운수수단은 세관수속을 하지 않는다.

**제16조 (운수수단등록신청서)** 운수수단을 등록하려는 기업, 지사와 개인은 운수수단등록신청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운수수단신청서에는 운수수단의 번호, 차종, 차형과 소속, 생산년도, 배기량, 적재량 또는 정원수, 운행목적, 운행구간, 유효기간을 밝혀야 한다.

**제17조 (운수수단등록증의 발급, 유효기간연장)** 세관은 운수수단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안으로 해당 운수수단을 등록하고 운수수단등록증을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운수수단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연장할수 있다.



제18조 (반출입신고서의 제출) 물자를 반출입하려는 기업, 지사와 개인은 품명, 수량, 규격, 가격과 출발지, 도착지, 송화인, 수화인 같은 것을 밝힌 물자반출입신고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물자반출입신고서는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낼 수도 있다.

제19조 (위탁가공물자의 신고) 기업, 지사는 공업지구 밖의 공화국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탁가공을 하려할 경우 가공물자반출입신고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가공물자반출입신고서에는 품명, 수량, 규격, 가공비와 위탁자, 수탁자, 가공기간, 가공장소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20조 (렬차로 수송하는 통과물자의 신고) 렬차로 수송하는 통과물자에 대한 세관신고는 공업지구안의 해당 철도역이 한다. 철도역은 렬차가 도착하는 즉시 세관에 짐부침표, 차무이표, 짐나름표, 출하명세서 같은 문건을 내야 한다.

제21조 (우편물의 신고) 남측 또는 다른 나라에서 보내 온 우편물에 대한 세관신고는 공업지구 우편국이 한다. 남측 또는 다른 나라로 보내려는 우편물에 대한 세관신고는 해당 기업, 지사,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한다.

제22조 (휴대품의 신고) 개인은 휴대품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휴대품에 대한 세관신고는 말로 한다.

제23조 (외화, 귀금속 및 보석의 신고) 공업지구에서는 외화를 세관신고없이 반출입한다. 그러나 귀금속과 보석은 세관에 신고하여야 반출입할수 있다.

### 제3장 세관검사 및 감독

제24조 (세관검사 및 감독기관) 공업지구에서 반출입물자와 우편물, 개인의 휴대품, 운수수단에 대한 세관검사와 감독은 공업지구 세관이 한다.

제25조 (반출입물자의 검사지점) 반출입물자에 대한 세관검사는 물자의 도착지점 또는 출발지점에서 한다. 적은량의 산적짐이나 짐 칸봉인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세관통로에서 검사할 수 있다.

제26조 (반출입물자의 검사방법) 반출입물자에 대한 세관검사는 해당 물자를 운수수단에 싣거나 부릴때 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신고서와 대조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7조 (우편물의 검사) 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는 정해진 장소에서 우편국의 해당 일군 또는 우편물임자, 대리인의 립회밀에 한다. 우편국은 세관검사를 받지 않은 우편물을 내주거나 공업지구 밖으로 발송하지 말아야 한다. 소포속에는 돈, 유가증권 같은 것을 넣을 수 없다.

제28조 (휴대품의 검사) 개인의 휴대품(따로 붙여 오는 짐 포함)에 대한 세관검사는 기계로 한다. 기계로 검사할 수 없거나 검사과정 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헤쳐 보는 방법으로도 검사할 수 있다. 세관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라 개인의 휴대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29조 (운수수단의 검사지점) 운수수단에 대한 세관검사는 해당 도로 또는 철도의 세관통로에서 한다. 세관통로에 도착한 운수수

단은 세관의 승인이 없이 세관통제구역을 벗어 날수 없다.

**제30조 (물자수송의 감독)** 세관은 세관통로와 도착지 사이 또는 출발지와 세관통로 사이의 물자수송에 대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31조 (중계수송물자, 통과물자의 검사)** 중계수송물자, 통과물자에 대하여서는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금지품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물자에 대한 세관검사를 할 수 있다.

**제32조 (반출입물자의 수송수단)** 기업, 지사 또는 개인은 반출입물자를 짐함, 유개차와 같은 운수수단으로 수송하여야 한다. 산적으로 수송하는 물자, 적은량의 물자는 짐함 또는 유개차가 아닌 운수수단으로도 수송할 수 있다.

**제33조 (검사 및 감독협조)**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해당 기업, 지사, 개인은 세관의 검사 및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4조 (보세구역, 보세창고설치)** 공업지구에는 보세전시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같은 것을 설치, 운영할수 있다. 해당 기업, 지사는 보세전시장, 보세창고, 보세공장에 대한 세관의 감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5조 (보세구역, 보세창고운영)** 보세전시장, 보세창고에는 보세물자가 아닌 물자를 보관할 수 없다. 보세물자의 반출입과 보세공장에서 보세물자포장의 기호표식을 고치는 작업, 선별, 재포장 작업 같은 것은 세관의 감독밑에 한다.

## 제4장 관세 및 세관료금

제36조 (관세납부통지서발급) 세관은 관세를 부과하려는 기업 또는 지사에 관세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7조 (관세기준가격과 계산) 공업지구에서 관세의 기준가격은 해당 물자의 공업지구도착가격으로 한다. 관세의 계산은 해당 시기의 관세률에 따라 한다.

제38조 (관세납부) 관세납부통지서를 받은 기업, 지사는 지정된 은행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관세납부증을 받아 세관에 내야 한다.

제39조 (관세의 반환, 추가부과) 관세를 초과하여 납부한 기업, 지사 또는 개인은 관세를 납부한 날부터 1년안에 초과분에 해당하는 관세를 돌려줄 것을 세관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은 1개월안으로 검토하고 돌려주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세관은 관세를 적게 부과한 물자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통과시킨 날부터 1년안에 해당한 관세를 추가로 부과시킬 수 있다.

제40조 (세관료금) 세관등록증, 운수수단등록증을 발급 받은 기업, 지사 또는 개인은 해당한 요금을 세관에 내야 한다. 세관료금은 세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 제5장 제재 및 신소

제41조 (억류 및 벌금적용) 세관은 이 규정을 어긴 반출입물자와 운수 수단, 개인의 휴대품을 억류할 수 있다. 고의적으로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제42조 (몰수) 금지품, 밀수품은 몰수한다. 밀수행위에 리용한 운수수단도 몰수할 수 있다.

제43조 (신소 및 그 처리기일) 공업지구의 세관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세관에 신소할 수 있다. 세관은 신소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부록 1. 공업지구에 들여 올 수 없는 물품

- 1) 무기, 총탄, 폭발물(공업지구 공사용으로 허가된 폭약, 퇴관, 남포심지, 도폭선 같은것은 제외), 군수용품, 흉기
- 2) 배럴이 10배이상 되는 쌍안경, 망원경, 160mm이상의 고정된 렌즈가 달린 사진기
- 3) 무전기와 그 부속품
- 4) 독약, 극약, 마약 및 방사성물질, 유독성화학물질
- 5) 사회질서와 민족의 미풍양속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출판인쇄물(사본한 것 포함) 또는 그 원고, 필립, 사진, 록음록화테이프, 소리판, 자기원판, 미술작품, 수공예품, 조각품
- 6)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들여오는 정해진 물품
- 7) 반입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물품

## 부록 2. 공업지구에 내갈 수 없는 물품

- 1) 무기, 총탄, 폭발물, 군수용품, 흉기
- 2) 무전기와 그 부속품
- 3) 독약, 극약, 마약 및 방사성물질, 유독성화학물질
- 4) 역사유물
- 5) 기밀에 속하는 문건, 출판인쇄물(사본한 것 포함)과 그 원고, 필립, 사진, 녹음록화테이프, 소리판, 자기원판
- 6) 반출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물품

## 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규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6호(2004.2.25)로 채택

-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외화관리질서를 엄격히 세워 외화의 원활한 류통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업지구에서 외화를 리용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적용한다. 기업에는 공업지구의 기업과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개인업자가, 개인에는 공업지구에 체류, 거주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이 속한다.

제3조 (외화관리당사자) 공업지구에서 외화관리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그러나 공화국의 외화수입금에 대한 관리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제4조 (외화의 범위) 외화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한다.

1. 전환성외화현금
2. 전환성외화로 표시된 채권, 주식 같은 유가증권
3. 전환성외화로 표시된 수형, 행표, 양도성예금증서 같은 지불수단
4. 장식품이 아닌 금, 은, 백금, 오스미움, 이리디움 같은 귀금속

제5조 (류통화폐의 종류와 기준화폐) 공업지구에서는 전환성외화현금을 류통시킨다. 류통화폐의 종류와 기준화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환자시세) 류통화폐의 환자시세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국제금융시장의 환자시세에 따른다.

제7조 (기업의 외화돈자리개설) 기업은 공업지구에 설립된 은행에 외화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외화돈자리를 둘 은행은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제8조 (투자은행의 업무내용) 공업지구에 설립된 투자은행은 외국환자업무와 그 밖의 금융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은행은 조선원과 관련한 환자업무를 할 수 없다.

제9조 (외화입출금변동보고서 제출) 공업지구에 설립된 투자은행은

반년마다 돈자리별로 외화입출금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30일안으로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10조 (공화국 외국환자은행의 업무내용)** 세금, 토지사용료, 사회보험료 같은 납부금의 관리,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 종업원과 관련한 외화결제 또는 외화자금거래업무는 공업지구에 설립된 공화국 외국환자은행이 한다.

**제11조 (예금의 비밀보장과 리자계산)** 은행은 외화예금의 비밀을 보장하며 리자를 예금자에게 정확히 계산지불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업지구밖의 돈자리개설)** 남측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외화돈자리를 두려는 기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신고서를 내야 한다. 신고서에는 해당 은행의 명칭, 소재지, 돈자리를 개설할 날자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3조 (외화수입지출문건제출)** 공업지구밖의 은행에 돈자리를 둔 기업은 반년마다 돈자리별로 외화수입지출문건을 작성하여 다음 달 30일안으로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14조 (지불 및 결제방식)** 기업과 개인은 외화현금이나 신용카드, 외화돈자리를 리용하여 거래에 따르는 지불 및 결제를 할 수 있다. 결제는 송금결제, 신용장결제, 현금결제, 청산결제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결제방식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5조 (개인의 외화보유)** 개인은 번 외화 또는 공업지구에 가지고 들어 온 외화를 한없이 소지하거나 은행에 예금할 수 있다.

**제16조 (외화반출입)** 공업지구에서 기업과 개인은 외화를 제한없이 들



여오거나 납축 또는 다른 나라로 내갈 수 있다. 이 경우 귀금속 밖의 외화는 세관신고를 하지 않는다.

**제17조 (외화송금)** 기업과 개인은 리운, 로임 같은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를 공업지구 밖으로 송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18조 (제재)**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은행거래를 중지시키거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 개성공업지구 광고규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7호(2004.2.25)로 채택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에서 광고사업질서를 엄격히 세워 경제활동의 편의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표기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고》란 생산, 판매, 봉사, 로력채용 같은 경제활동과 관련한 사실을 광고물을 리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이다.
2. 《광고물》이란 광고의 내용을 담은 수단 또는 그것을 전시하

- 기 위한 시설이다.
3. 《광고주》란 광고를 하려는 기업, 개인, 경제조직이다.
  4. 《광고업》이란 광고물을 설계, 제작, 설치, 관리하는 것 같은 광고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영업이다.
  5. 《광고업자》란 광고업을 하는 기업, 지사, 영업소 같은 것이다.

**제3조 (광고와 광고업의 당사자)** 공업지구에서 기업, 개인, 경제조직은 광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광고업도 할 수 있다.

**제4조 (광고사업관리기관)** 공업지구에서 광고사업에 대한 관리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제5조 (광고업 합의, 승인)** 공업지구에서 광고업을 하려는 자는 개발업자와 합의한 다음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고업의 승인절차를 정하는 사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제6조 (광고업자의 자격)** 광고업자는 광고의 계획, 설계, 제작, 설치, 관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원과 설비를 갖추고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7조 (광고의 수단)** 광고는 광고판, 전기광고판, 봉사간판, 소책자를 리용하여 한다. 필요에 따라 인터넷 같은 것을 리용하여 광고를 할 수도 있다.

**제8조 (광고계약)** 광고업자에게 의뢰하여 광고를 하려는 광고주는 그와 광고계약을 맺어야 한다. 광고계약서에는 광고주명, 광고업자명, 광고물의 형식, 규격, 수량, 설치장소, 설치기간, 광고비, 위약책임 같은 것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제9조 (광고금지대상) 다음의 광고는 할 수 없다.

1. 북남관계발전에 저해를 주는 광고
2. 퇴폐적인 광고
3. 허위적인 광고
4. 생산, 판매, 제공이 금지된 상품 또는 봉사에 대한 광고
5. 다른 기업, 상품 또는 봉사를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헐뜯는 광고

제10조 (광고내용의 정확성담보) 상품 또는 봉사에 대하여 광고하려는 광고주는 광고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광고물의 문자표기) 광고물의 문자표기는 조선어로 한다. 필요에 따라 광고물의 문자표기를 국제공용어나 그 밖의 언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조선어로 된 번역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제3자의 명칭과 건물, 시설물, 부지의 리용동의) 제3자의 명칭같은 것을 광고에 리용하려는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른 기업이나 개인, 경제조직의 건물, 시설물, 부지에 광고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야외광고물의 설치승인) 야외광고물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다.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는 야외광고물을 설치하려 할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광고물의 형식, 규격, 내용, 설치장소, 설치기간 같은 것을 밝힌 야외광고물설치신청서를 내야 한다.

제14조 (야외광고물설치신청의 승인 또는 부결) 야외광고물설치신청서를 접수한 공업지구관리기관은 7일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승인을 받지않고 설치할 수 있는 야외광고물) 승인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야외광고물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앞항에 해당되는 야외광고물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신고를 하고 설치한다.

제16조 (야외광고물의 설치금지구역) 야외광고물은 혁명사적지구역, 력사유적보호구역, 명승지보호구역, 자연환경보호구, 특별보호구와 도시공공시설, 운수수단, 교통시설의 리용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 설치할 수 없다.

제17조 (야외광고물의 변경) 승인을 받고 설치하였던 야외광고물의 형식, 규격, 내용, 설치장소, 설치기간 같은 것을 변경하려는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유를 밝힌 야외광고물변경신청서를 내야 한다.

제18조 (야외광고물의 문화성보장)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는 야외광고물을 문화성있게 설치하고 유지, 보수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 (야외광고물의 철수, 정리) 야외광고물의 설치기간이 끝났을 경우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는 그것을 7일안으로 철수하고 광고물을 설치하였던 장소를 원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수수료)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광고업승인, 야외광고물의 설치승

인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수수료를 정하는 사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제21조 (규정을 어긴 광고의 처리)**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이 규정을 어  
기고 한 광고에 대하여 제때에 결함을 시정시키거나 해당 야외  
광고물을 철수시켜야 한다. 결함의 시정, 야외광고물의 철수와  
관련한 비용은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가 부담한다.

**제22조 (제재)**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광  
고중지, 광고업승인취소, 벌금부과 같은 제재를 줄 수 있다.

##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33호(2004.7.29)로 채택

###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에서 부동산의 취득과 거래질서  
를 엄격히 세워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이 아래부터는 공업지구라 한다)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 임대, 저당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적용한다. 공업지구 밖에서 공업지구까지 연결되는 하부구조건설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공업지구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과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같은 것이다.
2. 《개인》이란 공업지구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생활하는 납득 및 해외동포, 외국인이다.
3. 《부동산》이란 토지이용권과 건물, 거기에 달린 물건이다.
4. 《토지임대기간》이란 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이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다.
5. 《분양》이란 부동산을 용도별로 분할하여 기업 또는 개인에게 양도하는 행위이다.
6. 《양도》란 부동산을 매매, 교환, 증여, 상속의 형태로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이다.
7. 《매매》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상으로 넘기는 행위이다.
8. 《교환》이란 부동산을 서로 맞바꾸고 차이나는 금액을 청산하는 행위이다.
9. 《증여》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행위이다.
10. 《상속》이란 부동산을 가진 자 또는 임차한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지위가 무상으로 상속자에게 넘어가는 행위이다.
11. 《임대》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일정한 기간 빌려주는 행위이다.
12. 《등록임차권》이란 임대등록이 되어있는 임차자의 권리이다.
13. 《저당》이란 부동산이나 등록임차권을 제3자에게 채무의

담보로 세우는 행위이다.

제4조 (토지이용권 및 건물소유권의 범위) 공업지구에서 기업과 개인 토지이용권을 취득하거나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 토지이용권에는 토지에 있는 천연자원과 매장물이 속하지 않는다.

제5조 (관리기관) 공업지구에서 부동산의 등록과 취득, 양도, 임대, 저당에 대한 관리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 제2장 부동산의 취득

제6조 (토지임대차계약의 체결) 개발업자는 개발단계별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토지임대차계약서에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용도, 임대기간, 임대료, 계약취소 사유 같은 것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제7조 (토지이용증의 발급과 토지이용권의 취득일)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14일 안으로 개발업자에게 해당 기관이 발급한 토지이용증을 주어야 한다. 토지이용증을 받은 날을 개발업자의 토지이용권소유일로 한다.

제8조 (토지임대기간의 계산) 토지임대기간은 개발업자가 해당 토지이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그러나 토지임대차계약을 맺기 전에 토지이용증을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맺은 날부터 계산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승인된 단계별 공업지구개발계획에 반영된 공사기간만큼 토지임대기간을 늘여줄 수 있다.

제9조 (부동산등록)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토지리용권, 건물별로 개발업자와 기업, 개인의 부동산관계를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등록준칙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작성하여 시행한다.

제10조 (부동산의 분양, 임대 및 가격, 요금) 부동산의 분양, 임대는 승인된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 따라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는 개발원가에 기초하여 분양가격과 임대료를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제3자의 토지리용권 소유와 효력) 공업지구에서 토지리용권은 분양, 양도받는 방법으로 소유한다. 이 경우 토지리용권은 공업지구의 토지임대 기간 안에서 분양 또는 양도 받은 날부터 남은 기간만큼 효력을 가진다.

제12조 (토지리용권등록신청서의 제출) 토지리용권을 취득한 자는 계약을 맺은 날 또는 계약에서 정한 날부터 14일 안으로 공업지구관리기관에 토지리용권 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토지리용권등록신청서에는 취득자의 이름과 주소, 토지의 위치와 면적, 분양 또는 양도날자 같은 것을 밝히고 분양 또는 양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토지리용권 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안으로 검토하고 토지리용권등록증을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제13조 (분양할 수 없는 토지의 명의변경등록) 개발업자는 분양할수 없는 도로, 공원 같은 토지에 대하여서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명의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명의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해당 토지의 리용권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소유한다.

제14조 (토지리용권소유자의 임무) 토지리용권을 소유한 자는 토지를



용도에 맞게 리용하며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제15조 (토지사용료의 부과 및 면제)** 토지리용권을 소유한 자에게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개발업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다음 해부터 토지사용료를 부과한다. 토지사용료의 기준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발업자에게는 토지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6조 (토지리용권의 취소조건)** 합법적으로 소유한 토지리용권은 토지임대기간안에 취소되지 않는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공의 이익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리용권을 취소하려 할 경우 1년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리용권의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상을 하거나 같은 조건의 토지를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토지에 있는 건물이나 그 밖의 부착물에 대하여서도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토지리용권의 반환)** 토지리용권을 소유한 자는 토지임대기간이 끝났을 경우 10일 안으로 토지리용증 또는 토지리용권등록증을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토지리용증 또는 토지리용권등록증을 반환한 자는 6개월안으로 해당 토지를 원상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토지에 있는 건물이나 그 밖의 부착물이 공화국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관되거나 공공의 이익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리용권이 취소되었거나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토지리용기간의 연장신청을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정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 (토지리용기간의 연장)** 토지리용권을 소유한 자는 필요에 따라

토지임대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토지를 계속 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고 토지리용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공의 리익 같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리용권을 가진 자의 신청에 따라 토지리용기간을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 토지리용기간연장신청을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에 달린 건물이나 그 밖의 부착물에 대하여 해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건물소유조건)** 건물은 그 부지에 해당한 토지리용권이나 등록임차권을 가진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다.

**제20조 (건물의 소유방법)** 건물은 건물을 새로 건설하거나 이미 있던 건물을 분양 또는 양도받는 방법으로 소유한다. 건물소유권의 소유일은 건물을 새로 건설하였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날로, 건물을 분양 또는 양도받았을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건물을 등록한 날로 한다.

**제21조 (건물의 건설조건)** 건물을 건설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의 리용권이나 등록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임차권을 가진 자는 토지리용권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제22조 (건물소유권의 등록)** 건물을 새로 건설한 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으로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건물소유권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준공검사증, 토지리용권등록증 또는 임차권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건물을 분양, 양도받은 자는 계약을 맺은 날 또는 계약에서 정한 날부터 14일 안으로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건물소유권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사본, 토지리용권등록증 또는 임차권등록증을 첨부

하여야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건물소유권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으로 검토하고 건물소유권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3장 부동산의 양도, 임대, 저당

제23조 (양도, 임대, 저당의 방법) 공업지구관리기관에 토지이용권, 건물소유권을 등록한 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리용기간 안에 제한없이 양도, 임대, 저당할 수 있다. 부동산의 등록임차권을 가진자는 그것을 저당할수 있다.

제24조 (양도, 임대, 저당에서 지켜야 할 원칙) 공업지구에서 부동산의 양도, 임대, 저당관계자는 공정성, 성실성, 신용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사기, 투기 같은 공공의 리익을 해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25조 (양도, 임대, 저당의 등록) 부동산의 양도, 임대, 저당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효력을 가진다. 부동산의 양수자, 임차자, 저당권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안으로 양도,저당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양도자, 임대자, 저당자는 등록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대등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차권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제26조 (양도, 임대, 저당의 변경등록) 양도, 임대, 저당사유가 없어진 것과관련한 수속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안에 양

수자, 임차자, 저당권자가 한다. 양도자, 임대자, 저당자도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안에 양수자, 임차자, 저당권자의 동의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제27조 (같이 소유한 토지리용권과 건물의 양도, 임대, 저당)** 토지리용권과 건물소유권을 같이 소유한 자가 토지리용권 또는 건물을 양도, 임대, 저당할 경우에는 건물소유권 또는 토지리용권도 함께 양도, 임대, 저당된다. 이 경우 토지리용권, 건물소유권의 등록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양도, 임대, 저당등록을 할 때 함께 한다. 건물에 달린 토지의 리용권을 소유하지 못한 건물소유자는 건물을 양도, 임대, 저당하려 할 경우 토지리용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사기, 강박으로 이루어진 양도, 임대, 저당의 취소)** 양도자, 임대자, 저당자는 양수자, 임차자, 저당권자의 사기, 강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 임대하였거나 부동산 또는 등록임차권을 저당한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으로 양도, 임대, 저당을 취소할 수 있다. 양수자, 임차자, 저당권자는 제3자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 임대, 저당하였을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으로 양도, 임대, 저당을 취소할 수 있다.

**제29조 (양도, 임대, 저당의 취소금지사유)** 양도자, 임대자, 저당자는 양도, 임대, 저당한 날부터 3년이 지났거나 양수자, 임차자, 저당권자가 사기 또는 강박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였거나 등록임차권을 주었거나 저당권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 임대, 저당을 취소할 수 없다.

**제30조 (부동산의 양도)**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그것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매매, 교환, 증여에 의한 양도는 계약을 맺고 하

여야 한다.

**제31조 (부동산의 매매)** 부동산의 매매는 협상, 입찰, 경매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부동산을 입찰, 경매의 방법으로 매매하려는 자는 입찰 또는 경매절차와 방법을 사전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32조 (부동산의 상속)**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부동산과 관련한 재산상 권리의무는 상속자에게 넘어간다. 이 경우 의무는 부동산의 가치를 한도로 상속자에게 넘어간다. 상속자 판정, 상속재산 분배비를 같은 것은 사망당시 피상속자가 속한 나라 또는 지역의 법에 따라 정한다.

**제33조 (상속의 등록)** 상속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상속받은 부동산은 등록을 하여야 양도, 임대, 저당할 수 있다.

**제34조 (임차자에 대한 통지)** 임대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려는 자는 임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통지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35조 (양수자의 권리의무)** 부동산의 양수자는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아도 양도자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넘겨 받는다. 양도받은 부동산의 리용기간은 양도자의 토지리용기간에서 남은 기간을 넘을 수 없다.

**제36조 (부동산의 임대기간)** 부동산의 임차자는 임대자의 토지리용기간에서 계약으로 정한 기간까지 해당토지 또는 건물을 리용할 수 있다.

**제37조 (임차자의 임무)** 임차자는 계약에서 정한 데 따라 부동산을 리

용하며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것을 임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등록임차권을 소유한 자는 임대차계약에서 밝히지 않은 한 제3자에게 임대받은 부동산을 재임대 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임차권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임대자의 동의없이 임대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다.

**제38조 (임대건물의 보수 의무)** 임대한 건물의 보수는 임대자가 한다. 임대자는 임차자의 잘못으로 건물을 보수하는 경우 임차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임차자는 건물의 보수가 필요할 경우 임대자에게 알리고 손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자기의 책임이 없이 한 건물보수비용을 임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9조 (임대자의 계약취소권리)** 임대자는 계약에서 임대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자에게 통지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의 취소효력은 임차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

**제40조 (임대자의 계약취소사유)** 임대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의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
2. 정한 기간 안에 임대료를 3회이상 물지 않았을 경우
3.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41조 (임차자의 계약취소사유)** 임대기간 안에 계약을 취소하려는 임차자는 3개월 전에 임대자에게 계약취소 의향을 알리고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임차자는 앞항의 경우를 제외한 계약의 취소로 임대자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42조 (임대차계약의 즉시 취소사유)** 임차자가 즉시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자의 잘못으로 부동산을 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없을 경우
2. 임차자의 책임이 없이 임차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3. 계약에서 정한 임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그밖의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43조 (임대보증금의 등록, 반환)** 계약에 따라 임대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문 임차자는 임차권과 함께 임대보증금도 등록할 수 있다. 임대자는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계약이 취소되어 부동산을 반환받으면 임대보증금을 돌려 주어야 한다.

**제44조 (임차자에 대한 보호)** 등록임차권을 소유한 자는 임대자가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부동산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부동산을 경매한 자금으로 등록임차권을 소유한 자에게 해당 임대보증금을 지불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매신청 당시 해당 부동산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경매를 하여 얻은 자금은 임차자와 저당권자에게 등록순위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

**제45조 (저당권의 설정, 처분)** 부동산 또는 등록임차권을 가진 자는 자거나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또는 등록임차권을 저당할 수 있다. 저당권을 소유하려는 자는 저당권과 함께 채무자,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상환시기, 리자 및 그 지불시기, 기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사항도 등록하여야 한다.

제46조 (덧저당) 저당자는 저당물을 다시 저당할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의 순위는 저당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제47조 (저당의 통지) 임대자는 임대한 부동산을 저당할 경우 임차자에게 그 사유를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48조 (저당물의 리용, 양도통지의무) 저당자는 저당물을 그대로 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물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저당물을 양도하려 할 경우에는 저당권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49조 (저당권자의 권리)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을 경우 저당자에게 추가적인 담보를 제공하거나 떨어진 가치에 해당하는 채무액을 즉시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0조 (저당권의 행사범위) 저당권은 저당물의 가치감소 또는 소멸 같은 사유로 저당자가 받을 보험보상금, 손해보상금 같은 금액에 대하여서도 행사된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보상금 같은 것이 지불되기 전에 지불자에게 공업지구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 해당 권리 및 저당계약의 내용을 알리고 그로부터 보상금 같은 것을 받아야 한다.

제51조 (저당권의 소멸) 저당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저당채무가 저당계약에 맞게 상환되었을 경우
2. 저당권자와 저당자가 합의하여 채무를 다른 재산으로 상환하였을 경우
3.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스스로 포기하였을 경우



제52조 (저당물의 처분) 저당권자는 채무자가 채무상환기간에 채무상환을 하지 못하였거나 저당자가 채무상환기간 전에 사망하여 상속자가 없을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저당물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저당물을 공정하게 처분하여야 한다.

제53조 (저당물처분액의 분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저당물을 처분하였을 경우 세금, 수수료, 저당물의 처분비용 같은 정해진 우선공제대상금을 납부하며 남은 자금을 임대 또는 저당 등록순위에 따라 임차자, 저당권자에게 분배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저당자에게 주어야 한다. 임차자에게 주는 분배금에는 선불임대보증금 같은 것이, 저당권자에게 주는 분배금에는 원금, 리자, 위약금, 채무불리행에 따르는 1년간까지의 지연손해보상금이 속한다.

제54조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소유)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소유하였을 경우에는 대금을 전부 지불한 때부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진다.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록을 하여야 양도, 임대, 저당할수 있다.

제55조 (부동산의 등록수수료)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거래당사자로부터 부동산의 등록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수수료를 정하는 사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 제4장 제 재

제56조 (천연자원, 매장물의 채취에 대한 제재) 토지에 있는 천연자원

과 매장물을 비법적으로 채취하였거나 그것으로 부당한 수입을 얻었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제57조 (토지리용질서위반에 대한 제재)** 승인없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정해진 토지면적을 초과하여 리용하였거나 또는 토지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토지를 리용권등록증이 없이 리용하였거나 혹은 등록을 하지 않고 토지리용권을 양도, 저당하였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제58조 (건물등록 및 양도, 임대, 저당질서위반에 대한 제재)** 건물등록을 하지 않고 양도, 임대, 저당하였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릴 수 있다.

##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35호(2004.9.21)로 채택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의 보험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업활동과 거주자, 체류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이 아래부터는 공업지구라

한다)에 창설한 기업과 지사, 영업소, 사무소(이 아래부터는 법인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공업지구에 체류, 거주하는 납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이 아래부터는 개인이라 한다)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공업지구보험회사)** 공업지구에서 보험사업은 공업지구보험회사가 한다. 공업지구보험회사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공업지지도기관이 한다.

**제4조 (지사, 사무소의 설치)** 공업지구보험회사는 공업지구안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 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보험사업원칙)** 보험에 들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공업지구보험회사(이 아래부터는 보험자라 한다)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6조 (의무보험대상)** 법인 또는 개인은 다음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1. 화재 및 폭발, 자연재해로 인하여 건물 및 기계장치에 생긴 물질적 손해
2. 가스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생긴 손해
3.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 부상당하게 하였거나 제3자의 재산에 입힌 손해
4. 종업원이 로동과정에서 재해로 입은 손해(기업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있는 종업원은 제외)

**제7조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에 들려는 법인 또는 개인(이 아래부터는 피보험자라 한다)사이에서 맺는다. 보험자는 보험대리인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보험계약

은 서면으로 맺는다.

**제8조 (보험계약의 신청)** 보험에 들려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신청서를 보험자에게 내야 한다. 보험계약신청서에는 보험대상, 보험가격 또는 보험금액, 보험기간, 책임범위 같은 사항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제9조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신청에 동의하고 피보험자에게 보험증권을 발행하면 성립된다.

**제10조 (보험계약의 효력발생)** 보험계약의 효력은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발생한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제11조 (보험료의 납부)**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계약조건에 따라 한번에 납부할 수도 있고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할 수도 있다.

**제12조 (보험료 납부지체와 계약의 효력상실, 취소)** 피보험자가 정해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계약의 효력은 없어진다. 보험료의 일부만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정한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자는 다시 기간을 정하여 주며 그 기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자를 위한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지체할 경우 보험자는 다시 기간을 정하여 주며 그 기간이 지나도록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 (보험증권의 양도)** 보험증권을 양도하려는 피보험자는 서면으로 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험증권이 양도되면 피보험

자의 계약상 권리의무는 보험증권을 양도받은 자에게 넘어간다.

**제14조 (보험위험의 변경통지)**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안에 보험위험이 변경되면 제때에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험자는 보험위험 또는 보험금액이 증가되었을 경우 해당한 보험료를 더 받으며 보험위험 또는 보험금액이 감소되었을 경우 해당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제15조 (보험대상의 관리상태조사)**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보험대상관리 상태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견한 결함의 퇴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보험사고통지)**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48시간 안으로 보험자에게 알리고 손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고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 (피보험자의 손해경감의무)**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손해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들인 합리적인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제18조 (보험사고감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그에 대한 감정을 조직할 수 있다. 감정은 전문감정기관 또는 해당 자격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제19조 (보험보상청구서의 제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30일안으로 보험보상청구서를 보험자에게 내야 한다. 이 경우 사고의 원인과 손해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한다. 정해진 기간까지 보험보상청구서를 낼 수 없을 경우

는 그 사유를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 (보험보상금지불기일)** 보험보상은 보험자가 보험보상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보상을 거절할 수 없다.

**제21조 (배상책임보험에서의 손해보상금지불)**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제3자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보상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다.

**제22조 (보상청구권의 확보)**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3조 (보험자의 보험계약취소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보험기간 안에 보험대상이 없어졌을 경우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안에 보험위험의 변경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3.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보험자의 권고에 대하여 해당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
4.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일으켰거나 또는 허위신고를 하고 보험보상을 요구하였을 경우
5. 이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24조 (보험계약의 취소경우)** 보험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 보험사업을 다시 할 수 없을 경우
2. 보험계약일방이 지불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3. 보험계약일방이 파산 또는 해산되었을 경우

제25조 (보험보상청구시효) 보험사고와 관련한 보상청구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26조 (벌금) 이 규정 제5조의 사항을 어겼을 경우에는 1만 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제27조 (분쟁해결) 보험사고와 관련한 분쟁은 보험당사자들이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재판절차 또는 북남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해결절차로 해결할 수도 있다.

제28조 (보험증권사항에 의한 처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보험증권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결정 제58호(2005.6.28)로 채택

###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기업의 회계계산과 회계문건작성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회계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보장하고 기업관리를 개선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회계대상)**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된 기업은 회계를 한다. 총투자액이 100만 US\$ 이상되거나 지난년도 판매 및 봉사수입금이 300만 US\$ 이상되는 지사, 영업소와 개인업자(이 아래부터는 기업이라 한다)도 회계를 하여야 한다.

**제3조 (회계업무)** 기업의 회계업무는 회계원, 계산원, 출납원 같은 회계일군이 한다. 회계업무량이 적은 기업은 회계검증사무소에 회계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다.

**제4조 (회계화폐와 단위)** 공업지구에서 회계화폐는 US\$로 한다. 기업의 경제거래규모에 따라 화폐단위를 천, 만, 백만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회계연도)** 기업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새로 창설된 기업의 회계연도는 조업을 시작한 날부터 12월 31일까지, 해산되는 기업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해산되는 날까지이다.

**제6조 (회계문건의 작성언어)** 회계문건의 작성은 조선말로 한다. 필요에 따라 회계문건을 다른 나라 말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선말로 된 번역문을 첨부한다.

**제7조 (회계준거규정, 회계관습의 적용)** 공업지구에서 기업의 회계는 이 규정과 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 회계검증규정, 세금규정 같은 관련규정에 준하여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제8조 (기업회계기준의 작성)**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이 규정에 준하여



공업지구기업회계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내용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기업의 회계사업에 대한 책임)** 기업의 회계사업에 대한 책임은 기업책임자가 진다. 기업책임자는 위법적인 회계업무를 지시할 수 없다.

## 제2장 회계계산

**제10조 (회계계산의 기본요구)** 회계계산은 발생한 경제거래에 기초하여 계서류를 만들고 정해진 규범에 따라 장부에 기록계산하며 주기별로 회계결산서를 작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업은 정해진 회계계산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

**제11조 (회계계산을 하는 경우)** 기업이 회계계산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화폐자금을 입금하였거나 출금하였을 경우
2.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인수하였을 경우
3. 재산을 인수 또는 발송하였을 경우
4. 채권채무가 발생하였거나 그것을 청산하였을 경우
5. 자본금, 기금이 증가하였거나 감소하였을 경우
6. 수입 또는 비용지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7. 손익을 확정하거나 분배할 경우
8. 기타 회계계산이 필요한 경우

제12조 (회계계산원칙) 회계계산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회계기록을 합법적이며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초하여 하여야 한다.
2. 회계계시와 용어를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회계계시의 설정과 분류, 계산시점, 재산평가를 기간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용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4.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자본잉여금과 리익잉여금을 정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5. 회계계시와 금액의 중요내용을 회계결산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제13조 (회계서류의 작성) 회계서류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록을 검은색으로 한다.
2. 경제거래가 있는 즉시에 한다.
3. 양식에 따르는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한다.
4. 금액을 조선말로 복기한다.
5. 경제거래를 지시하거나 집행을 책임진 자의 도장을 찍거나 그가 수표한다.

제14조 (회계서류의 발행, 접수) 기업은 경제거래를 시작하면 회계서류를 발행하거나 접수하여야 한다. 접수한 회계서류는 회계원이 보관한다.

제15조 (회계서류의 검토, 처리) 회계서류를 접수한 기업은 양식, 기록 내용, 계산의 정확성을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효력을 가지지 못한 불비한 회계서류는 기업책임자 또는 회계부서책임자의 승

인을 받고 돌려 보낸다.

**제16조 (회계서류의 수정 및 재작성)** 불비한 회계서류를 돌려 받은 기업은 해당 내용을 수정하고 수정한 자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금액을 틀리게 쓴 회계서류는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 (회계계시의 리용)** 기업은 공업지구에서 정한 회계계시를 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경제거래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고 새로운 회계계시로, 일반경제거래는 유사한 회계계시에 합쳐 표시할 수 있다.

**제18조 (회계장부의 준비)** 기업은 회계장부를 종합계산장부와 세분계산장부로 나누어 갖추어야 한다. 종합계산장부는 경제거래를 시간적으로, 내용적으로 계산할수 있게 분기일기장과 계시원장으로 나누며 세분계산장부는 계산대상별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제19조 (회계장부의 작성)** 회계장부의 작성은 검토 확인한 회계서류에 기초하여 복식기입방법으로 한다. 회계장부양식은 표준양식으로 한다.

**제20조 (회계장부와 현물의 대조확인)** 기업은 회계장부의 내용과 현물을 정기적으로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회계장부의 내용과 현물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원인을 찾고 맞추어야 한다.

**제21조 (회계장부의 수정)** 회계장부의 수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계장부를 마감하기전에 틀리게 쓴것은 붉은 색으로 두줄을 긋고 다시 쓴다.
2. 회계장부를 마감한 다음에 틀리게 쓴것은 해당 분기를 취소

- 하고 경제거래내용에 맞게 다시 분기하여 기록한다.
- 회계장부에 올린 금액을 틀리게 쓴것은 추가로 분기하여 바  
써넣는다.
  - 수정한 곳에 회계원의 도장을 찍는다.

**제22조 (재산의 평가)** 재산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재산은 취득원가에 기초하여 한다.
- 교환, 현물출자, 증여,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공정가격을  
취득원가로 한다.
- 투자재산, 유형 및 무형재산의 생산, 구입,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리자비용과 기타 류사한 금융비용은 해당 재  
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 취득원가는 재산형태별 원가계산기준에 따라 회계년도별로  
나눈다.

**제23조 (수입의 계산)** 수입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상품, 제품의 판매수입은 그것을 판매하여 인도한 시점에서  
한다.
- 위탁판매수입은 위탁받는 자가 위탁품을 판매하여 인도한  
시점에서 한다.
- 건설물인도, 봉사제공, 예약판매수입은 실행정도에 따라 한다.
- 장기할부판매수입은 기간이 지난 정도에 따라 한다.

**제24조 (비용의 계산)** 비용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생산원가는 제품생산과정에 실지 발생한 소비액에 기초하여  
한다.

2. 판매원가는 판매수입과 관련되는 비용지출만을 포함시켜 한다.
3. 판매비와 관리비는 실제 발생한 지출액에 기초하여 한다.
4. 리자와 기타 금융비용은 기간이 지난 정도에 따라 한다.

제25조 (대차대조표의 작성) 대차대조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상태를 재산, 채무, 자본으로 구분하며 재산과 채무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류동재산과 고정재산, 류동채무와 고정채무로,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리익잉여금, 자본조정으로 구분한다.
2. 재산의 합계를 채무, 자본의 합계와 대비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3. 재산, 채무, 자본의 해당 계시를 총액으로 표시한다.
4. 대차대조표의 배열을 류동성배렬법으로 한다.

제26조 (손익계산서의 작성) 손익계산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손익을 판매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 기업소득세덜기전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한다.
2. 수입과 비용을 발생원천에 따라 구분하고 수입의 합계를 비용의 합계와 대비하여 표시한다.
3. 수입과 비용을 발생기간별로 나누어 처리한다.
4. 수입과 비용의 계시를 총액으로 표시한다.

제27조 (손익처분계산서의 작성) 리익처분계산서 또는 손실처리계산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리익처분정형을 미처분리익액, 자체기금인입액, 리익처분액, 다음년도 조월리익액으로, 손실처리정형을 미처리손실액, 손

- 실처리액, 다음년도 조월손실액으로 구분한다.
- 2. 미처분리익액과 자체기금인입액의 합계를 리익처분액과 다음년도 조월리익액의 합계와 대비하고 미처리손실액을 손실처리액과 다음년도 조월손실액의 합계와 대비하여 표시한다.
- 3. 리익처분액과 손실처리액을 총액으로 표시한다.

제28조 (현금류동표의 작성) 현금류동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현금류동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정활동에 따라 구분한다.
- 2. 현금의 기초잔고와 기간증감액을 합계하여 기말잔고로 표시한다.
- 3. 현금수입과 지출항목을 증가와 감소에 따라 상쇄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한다.

제29조 (회계결산서의 작성) 회계결산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리익처분계산서표 또는 손실처리계산서, 현금류동표를 연관시켜 검토 확인하고 종합편찬한다.
- 2. 업종에 따르는 원가명세서를 첨부한다.
- 3. 당해년도와 지난년도의 회계자료들을 비교하여 표시한다.
- 4. 손익계산서를 보고식으로, 대차대조표를 계시식으로 한다.
- 5. 잘못 이해할 수 있는 회계내용에 대하여서는 해석을 첨부한다.

제30조 (회계결산서의 작성주기) 회계결산서의 작성주기는 월, 분기, 반년, 년간으로 한다. 년간회계결산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며 월, 분기, 반년결산서는 기업의 규약에 따라 작성한다.

제31조 (회계결산서의 작성기일) 회계결산서의 작성기일은 다음과 같다.

1. 월회계결산서는 다음달 6일까지
2. 분기회계결산서는 분기가 지난 다음달 15일까지
3. 반년회계결산서는 반년이 지난 다음 30일까지
4. 년간회계결산서는 회계년도가 지난 다음 60일까지

**제32조 (회계결산서에 대한 수표)** 회계결산서에는 기업의 책임자와 회계부서의 책임자가 수표한다. 기업의 책임자와 회계부서의 책임자는 회계결산서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33조 (회계검증의무)** 기업은 회계년도가 지난 다음 60일안으로 년간 회계결산서를 공업지구 회계검증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년간 회계결산서는 회계검증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월, 분기, 반년회계결산서의 검증은 기업의 신청에 따른다.

**제34조 (부당계산의 금지)** 회계계산과정에 할 수 없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재산, 책무, 자본의 평가기준과 계산방법을 승인없이 변경하거나 허위기록 또는 기록하지 않는 행위
2. 수입을 숨기거나 지연 또는 앞당겨 계산하는 행위
3. 비용, 원가의 계산시점과 계산방법을 승인없이 변경하거나 허위기록 또는 기록하지 않는 행위
4. 리윤계산, 리윤분배방법을 승인없이 변경하고 허위리윤을 조성하거나 리윤을 숨기는 행위
5. 기타 공업지구 회계관련법규를 어기는 행위

### 제3장 회계문건

**제35조 (회계문건의 구분과 양식)** 회계문건에는 회계서류, 회계장부,

회계결산서가 속한다. 회계문건의 양식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6조 (회계서류의 정의와 구분)** 회계서류는 경제거래를 반영하는 회계계산의 기초물건이다. 회계서류에는 증표, 전표, 분기표, 집계표 같은 것이 속한다.

**제37조 (회계서류의 반영내용)** 회계서류에 반영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계서류의 제목
2. 발행번호와 날자
3. 품명, 수량, 단가, 금액 같은 경제거래근거와 내용
4. 경제거래용도
5. 현금거래서류에는 수납인과 출납원의 도장
6. 발행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제38조 (회계장부의 정의와 구분)** 회계장부는 회계서류에 반영된 경제거래를 일정한 양식 또는 계산표에 기록계산 하는 회계문건이다. 회계장부에는 분기일기장, 계시원장, 세분계산장부 같은 것이 속한다.

**제39조 (회계장부의 반영내용)** 회계장부에 반영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표지에는 회계년도, 장부이름, 계시번호, 기업명칭 같은 것을 밝힌다.
2. 첫페이지에는 목록을 쓰고 목록별 페이지번호를 밝힌다.
3. 둘째페이지부터 번호를 쓰고 기록하는 회계서류의 날자와 분기표번호, 경제거래내용과 금액 같은 것을 밝힌다.
4. 마지막페이지에는 장부의 마감을 확인한 회계부서책임자의



도장을 찍는다.

**제40조 (회계결산서의 정의와 구분)** 회계결산서는 결산기간에 발생하는 경제거래에 기초하여 주기별로 기업의 재정상태, 경영성적, 손익처분, 현금류동의 결과와 원인을 반영하는 회계문건이다. 회계결산서에는 결산서, 결산서 주해, 재정상태설명서가 속한다.

**제41조 (회계결산서의 반영내용)** 결산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리익처분계산서 또는 손실처리계산서, 현금류동표를, 결산서주해에는 중요재산의 처분에 대한 설명, 중요항목의 명세자료와 결산서의 이해와 분석에 필요한 기타 자료를, 재정상태설명서에는 생산경영상태의 중요내용, 리윤의 확정과 분배상태 같은 것을 반영한다.

**제42조 (회계문건의 보존기간)** 회계문건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회계서류 5년
2. 회계장부 10년
3. 년간회계결산서 10년
4. 월, 분기, 반년회계결산서는 기업의 규약에 따른다.

**제43조 (회계문건보존기간의 계산)** 회계문건보존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계서류는 회계년도가 지난 다음날부터 한다.
2. 회계장부는 장부를 마감한 날부터 한다.
3. 회계결산서는 회계검증을 받은 날부터 한다.

**제44조 (회계문건의 보관)** 회계문건은 회계부서책임자의 책임밑에 해

당 기업에 보관한다. 통합, 분리, 해산되는 기업은 해당 리사회에서 보관인과 보관장소를 정한다.

## 제4장 회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제45조 (감독통제기관) 공업지구에서 회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는 기업의 회계감독사업을 담당할 감독부서를 둘 수 있다.

제46조 (회계감독방법) 회계감독은 회계결산서와 회계검증보고서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알리고 기업의 회계사업정형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제47조 (기업내부의 회계검증제도) 기업은 종합계산장부작성업무와 재산보관업무, 내부회계검증업무를 분리시키며 재산실사의 범위, 기간, 실사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투자, 재산처분, 자금공급 같은 중요경제업무의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8조 (출납업무의 겸임금지) 기업은 출납업무와 회계장부기록계산업무, 회계문건보관업무를 겸임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49조 (회계업무인계) 조동, 동원, 병치료, 해임 같은 사유가 있는 회계원은 제3자의 립회밑에 회계사업을 인계하여야 한다. 회계원의 인계인수에 대한 립회는 회계부서책임자가, 회계부서책임자의 인계인수에 대한 립회는 기업의 책임자가 한다.

**제50조 (손해보상)** 회계업무집행과정에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1조 (업무중지)** 회계결산서작성에서 중요자료를 무락시켰거나 착오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6개월부터 1년까지 업무를 중지시킨다. 돈, 물품을 받고 사실과 어긋나게 회계를 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상 업무를 중지시킨다.

**제52조 (벌금적용)** 벌금을 물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회계결산서를 사실과 어긋나게 작성하였거나 의무적인 회계검증을 거절, 회피하였을 경우에는 1만 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2. 정당한 이유없이 회계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을 거절하였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5,000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3. 기업이 년간회계결산서를 정한 기간안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4. 대가를 약속하고 사실과 어긋나게 기록, 계산, 보고하였을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몰수하고 1만 5,000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5. 위법적인 회계계간을 강요하였을 경우에는 1만 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제53조 (연체료적용)** 벌금을 제때에 물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매일 0.05%의 연체료를 물린다. 연체료의 계산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벌금통지서를 보낸 다음 7일이 지난 날부터 한다.

## 개성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57호(2005.6.28)로 채택

-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기업의 자본조성과 리용, 리윤분배, 자본청산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재정관리를 규범화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적용대상)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된 기업과 영리활동을 하는 지사, 영업소, 개인업자(이 아래부터는 기업이라 한다)는 이 규정에 따라 재정관리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제3조 (자본의 조성방식) 기업은 자본조성을 출자, 신용, 증여, 리윤저축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 (등록자본) 등록자본은 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하고 투자한 자본이다. 기업은 등록자본을 줄일 수 없다.
- 제5조 (등록자본의 규모) 등록자본은 자본총액의 10%이상으로 한다. 기업은 자본총액이 늘어나는데 맞게 등록자본을 늘여야 한다.
- 제6조 (투자의 형태) 기업은 투자를 화폐재산, 유형재산, 무형재산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폐재산의 투자는 전환성외화로 하여

야 한다. 무형재산의 투자몫은 등록자본의 20%를 넘을 수 없다.

**제7조 (투자의 인정시점)** 투자의 인정시점은 다음과 같다.

1. 화폐재산은 공업지구에 설립된 은행에 입금시켰을 때
2. 부동산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수속을 끝냈을 때
3. 부동산밖의 유형재산은 공업지구에서 정해진 수속을 끝냈을 때
4. 무형재산은 도입 또는 리용으로 경제적리익이 발생하였을 때

**제8조 (투자재산의 가격)**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정한다. 국제시장가격보다 낮은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의 가격은 시장가격에 준하여 정한다.

**제9조 (유형재산의 내용년한)** 유형재산의 내용년한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구축물은 20년 이상
2. 철도차량, 선박과 기계 같은 생산설비는 10년 이상
3. 철도차량, 선박을 제외한 수송수단은 5년 이상
4. 전자설비와 취득원가가 300US\$ 이상인 공구, 비품은 3년 이상

**제10조 (유형재산의 감가상각)** 유형 재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고비례법에 따라 한다. 기업은 유형재산의 형태와 리용방식, 과학기술발전영향 같은 것을 고려하여 감가상각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한 감가상각방법은 유형재산의 내용년한이 끝날때까지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 (유형재산의 잔존가치평가)** 유형재산의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의 5%이하로 평가할 수 없다. 기업은 유형재산의 잔존가치를 5% 이하로 평가하려 할 경우 공업지구세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무형재산의 내용년한) 무형재산의 내용년한은 계약 또는 기업  
립신청서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 계약 또는 기업설립신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무형재산의 내용년한은 예상수익기간으로 하며 예  
상수익기간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한다.

제13조 (무형재산의 감가상각) 무형재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 또는 생  
산고비례법에 따라 한다. 무형재산의 잔존가치는 0으로 한다.

제14조 (감가상각의 금지) 기업은 경영활동에 리용하지 않는 고정재산  
과 건설중에 있거나 완성하지 못한 고정재산, 시일이 지나도 가  
치가 감소되지 않는 고정재산에 대하여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15조 (물품구입과 생산제품판매) 기업은 물품을 국제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 생산한 제품은  
국제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

제16조 (원가, 비용계산의 금지대상) 원가,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는 지  
출 또는 손실은 다음과 같다.

1. 재산의 구입을 위한 자본지출
2. 자기 자본에 대한 리자
3. 일반리자률보다 높은 리자
4. 본사에 지불한 특허권사용료
5. 대외투자 및 관련기업을 대신하여 지출된 관리비
6. 기준을 초과한회수불가능채권 및 대외사업비
7. 몰수당한 재산손실액, 위약금, 연체료, 벌금, 보상금
8. 당기순리윤으로 적립한 예비기금
9. 생산, 경영활동과 관련이 없는 지출

**제17조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는 새로운 기술 또는 제품의 연구개발에 지출하는 비용이다. 기업은 연구개발비를 5년간에 균등하게 나누어 계산하여야 한다.

**제18조 (대손충당금의 설정한도)** 대손충당금은 회수불가능한 판매채권, 대부금, 미수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한 자금이다. 일반기업은 당해년도말 채권잔고의 1%, 금융기업은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19조 (퇴직보조금지불 대상자와 규모)** 기업은 1년 이상 일하다가 퇴직하는 종업원, 관리성원에게 퇴직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퇴직보조금의 계산은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월로임에 일한 해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0조 (퇴직보조금지불충당금의 설정한도)** 퇴직보조금지불충당금은 퇴직자들에게 보조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미리 설정한 자금이다. 기업은 1년이상 일한 종업원, 관리성원에게 지불하는 월로임총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보조금지불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21조 (종업원의 로임)** 기업은 종업원의 로임을 공업지구 종업원월 최저로임보다 낮지 않게 지불하여야 한다. 종업원에게 지불한 로임은 월가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제22조 (관리성원의 로임)** 기업은 관리성원의 로임기준을 세금납부액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규약에서 정하고 지불하여야 한다. 관리성원에게 지불한 로임은 관리비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제23조 (종업원의 상금)** 기업은 일을 잘한 종업원에게 상금을 줄 수 있

다. 종업원에게 지불한 상금은 전액 원가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제24조 (관리성원의 상금)** 기업이 관리성원에게 지불한 상금은 관리비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종업원의 상금기준을 초과하여 관리성원에게 지불한 상금은 관리비에 넣어 계산할 수 없다.

**제25조 (대외사업비의 지출)** 생산부문, 상업부문의 기업은 순판매액이 200만 US\$까지는 그 금액의 0.5%를, 200만 US\$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액의 0.3%를 가산한 한도에서 대외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다. 건설, 금융, 교통운수 같은 기타 봉사부문의 기업은 순영업액이 70만 US\$까지는 그 금액의 1%를, 70만 US\$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액의 0.5%를 가산한 한도에서 대외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26조 (예비기금)** 기업은 등록자본의 10%가 될 때까지 해마다 당기순리윤의 5%를 예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자본손실을 메꾸거나 등록자본을 늘이는데 쓸 수 있다.

**제27조 (자체기금)** 기업은 당기순리윤에서 예비기금과 리익배당금을 공제하고 원천이 있을 경우 자체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자체기금은 확대재생산, 기술발전 같은 기금으로 쓸 수 있다.

**제28조 (차입금상환)** 기업은 차입금을 정한 기간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채권자를 찾지 못하여 상환할 수 없는 차입금은 예비기금에 포함시킨다.

**제29조 (채무의 평가)** 기업은 채무를 당해년도에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30조 (감독 및 제재) 이 규정의 집행에 대한 감독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이 규정을 어기고 재정관리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업에 벌금을 물리거나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64호(2005.9.13)로 채택

###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에서 회계검증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회계검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회계검증의 당사자) 공업지구에서 회계검증은 공업지구에 설립한 회계검증사무소가 한다. 회계검증사무소는 유형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도 한다.

제3조 (회계검증의 준거규정) 회계검증은 이 규정과 공업지구 회계규정, 기업재정규정, 세금규정 같은 관련규정에 준하여 한다.

제4조 (회계검증의 대상)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된 기업과 총투자액이 100만 US\$이상되거나 지난년도 판매 및 봉사수입금이 300만 US\$이상되는 지사, 영업소, 개인업자(이 아래부터는 기업이라한다)는 회계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앞항에서 지적하지 않은 기업은 년간회계결산서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제5조 (회계검증에 대한 간섭금지) 회계검증사무소는 공업지구의 회계검증사업을 담당한 독자적인 법인이다. 회계검증사업에는 누구도 간섭할수 없다.

제6조 (회계검증준칙작성)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이 규정에 준하여 회계검증준칙을 작성한다. 이 경우 중요내용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장 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과 운영

제7조 (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승인) 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승인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회계검증사무소설립신청서의 심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 (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가능수) 공업지구에는 2개의 회계검증사무소를 둔다. 2개이상의 회계검증사무소를 두려 할 경우에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9조 (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신청) 공업지구에 회계검증사무소를

내려는 회계검증조직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설립신청서를 내야한다. 이 경우 기본규약, 사무소성원의 자격, 경력증명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설립신청서에는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기본업무, 기구와 정원수, 책임자와 성원의 이름, 자격, 자본금총액, 존속기간, 해산사유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10조 (회계검증사무소의 심의등록, 설립일)**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심의하고 등록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며 그 결과를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한 날을 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일로 한다.

**제11조 (회계검증사무소의 재등록)** 기본규약, 기구와 정원수, 기본업무가 달라진 회계검증사무소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통지 하여야 한다.

**제12조 (회계검증사무소의 업무)** 회계검증사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의 창설, 통합, 분리에 대한 회계검증
2. 결산보고서에 대한 회계검증
3. 유형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4. 기업의 해산, 파산에 대한 회계검증
5. 회계검증과 관련한 상담
6. 이밖에 회계관련법규에 지적된 업무

**제13조 (회계검증사무소의 정원수와 자격)** 회계검증사무소에는 3명 이상의 회계검증원과 1명 이상의 감정평가원을 둔다. 회계검증원과 감정평가원(이 아래부터는 회계검증원이라 한다)은 해당한

자격증을 가지고 그 부문에서 3년이상 일한 자가 될 수 있다.  
형사처벌을 받았던 자는 회계검증원으로 사업할 수 없다.

**제14조 (회계검증원의 권한)** 회계검증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회계장부, 서류 같은 것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으며 장부와 현물을 대조 확인할 수 있다. 기업과 개인은 회계검증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5조 (회계검증사무소의 의무)** 회계검증사무소는 회계검증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회계검증과정에 알게 된 비밀은 공개할수 없다.

**제16조 (장부기록)** 회계검증사무소는 검증정형을 해당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장부기록 및 관리방법을 정하는 사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제17조 (회계검증보고서작성)** 회계검증원은 검증이 끝나면 회계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계검증보고서에는 검증대상, 검증보고서의 부류, 검증과 관련한 의견, 보고날자, 회계검증원의 이름 같은 것을 밝히고 회계검증사무소의 도장을 찍는다.

**제18조 (업무제한)** 회계검증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 회계검증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회계검증을 의뢰받았을 경우에는 다른 회계검증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제19조 (위법행위처리)** 회계검증원은 회계검증과정에 알게 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회계검증보고서에 밝히고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수정할데 대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검증사무소

를 통하여 공업지구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회계검증료)** 회계검증사무소는 회계검증, 상담과 관련한 검증료 또는 봉사료를 받을 수 있다. 검증료와 봉사료의 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제21조 (손해보상준비금과 손해보상)** 회계검증사무소는 해마다 세금을 납부한 다음 당기순이익의 10%를 직전 회계 연도 총수입액의 10%가 될 때까지 손해보상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업무과정에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제때에 보상하여야 한다.

**제22조 (손해보상준비금의 류용금지)** 회계검증사무소는 손해보상준비금을 손해보상에만 써야 한다. 손해보상준비금을 다른 용도에 쓰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장 회계검증절차와 방법

**제23조 (회계검증내용)** 기업은 회계검증을 제때에 정확히 받아야 한다. 회계검증에는 투자검증, 결산검증, 청산검증이 속한다.

**제24조 (투자검증의무)** 새로 창설되거나 통합, 분리되는 기업, 총투자액의 10%이상을 재투자하는 기업은 투자검증을 받아야 한다. 투자검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출자증서의 발급, 리윤분배, 투자상환 같은 것을 할 수 없다.

**제25조 (투자검증대상)** 투자검증은 기업이 작성한 투자보고서에 대하여 한다. 투자보고서에는 출자상태표와 화폐재산출자명세표, 현물재산출자명세표, 부동산출자명세표, 지적소유권출자명세표 같은것이 속한다.

**제26조 (투자검증기간)** 기업창설투자에 대한 검증은 조업을 한 날부터 3개월 안으로, 통합, 분리에 대한 검증은 기업변경등록을 끝낸 날부터 2개월 안으로, 재투자에 대한 검증은 해당투자를 끝낸 날부터 1개월 안으로 한다.

**제27조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감정평가)** 회계검증사무소는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감정평가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중고설비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는 기업은 중고설비의 생산년월일과 구입년월일, 구입가격, 내용년한, 사용한 기간 같은 것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문서를 회계검증사무소에 내야 한다.

**제28조 (결산검증의 대상)** 결산검증은 기업의 월, 분기, 반년, 년간회계결산서에 대하여 한다. 이 경우 월, 분기, 반년회계결산서에 대한 검증은 기업의 신청에 따른다. 기업은 년간회계결산서에 대한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29조 (년간회계결산서의 제출기간)** 기업은 회계년도가 끝난 다음 2개월 안으로 년간회계결산서를 회계검증사무소에 내야 한다. 회계업무량이 특별히 많은 기업은 회계검증사무소의 승인을 받고 회계년도가 끝난 다음 3개월 안으로 년간회계결산서를 낼수도 있다.

**제30조 (결산검증의 내용)** 회계검증원은 결산검증결과를 종합하여 회계검증보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계검증

보고서에는 회계결산서에 대한 설명서와 재정상태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 (회계결산서의 설명서에 반영할 사항)** 회계결산서의 설명서에 반영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업지구회계관련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
2. 주요 회계정책 및 예측과 그 변경정형
3. 우발사항과 결산후 발생한 경제거래정형
4. 중요재산의 처분정형
5. 기업의 통합, 분리정형
6. 회계결산서의 중요항목
7. 회계결산서의 이해와 분석에 필요한 자료

**제32조 (재정상태설명서에 반영할 사항)** 재정상태설명서에 반영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중요 생산 및 경영상태
2. 리운의 확정과 분배상태
3. 자금의 증감과 회전상태
4. 재정상태, 경영성적, 현금류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5. 대차대조표의 이해와 분석에 필요한 자료

**제33조 (년간회계결산서에 대한 검증기간)** 회계검증사무소는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 3개월안으로 기업의 년간회계결산서에 대한 검증을 끝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계검증을 끝낼수 없을 경우에는 그 이유와 연장기간을 공업지구세무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청산검증대상) 청산검증대상은 해산 또는 파산되는 기업의 청산보고서이다. 청산보고서에는 청산재정상태표, 채권채무명세표, 자금원천분배표, 재산실사표, 국가납부표 같은 것이 속한다.

제35조 (청산검증의무) 해산 또는 파산되는 기업은 청산사업을 끝낸 날부터 1개월 안으로 청산보고서에 대한 회계검증을 받아야 한다. 청산검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업에 조직된 청산위원회의 사업을 종결할수 없으며 기업등록을 삭제할 수 없다.

제36조 (검증보고서의 제출) 회계검증사무소는 투자검증보고서, 결산검증보고서, 청산검증보고서의 사본을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검증보고서의 사본은 해당 검증을 끝낸 날부터 7일안으로 내야 한다.

#### 제4장 감독통제

제37조 (감독통제기관) 공업지구에서 회계검증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회계검증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38조 (감독통제방법) 회계검증에 대한 감독통제는 회계검증사무소가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러나 회계검증에서 엄중한 위법행위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알리고 현지 조사를 할수 있다.

제39조 (업무중지처벌) 회계검증에서 중요한 자료를 무락시켰거나 엄중



한 착오를 일으킨 회계검증원의 업무를 6개월이상 1년까지 중지시킨다. 돈이나 물품을 받고 사실과 맞지 않게 회계검증을 한 회계검증원의 업무를 1년이상 중지시킨다. 회계검증원이 3회이상 업무중지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회계검증사무소의 운영을 중지시킨다.

**제40조 (벌금)** 벌금을 적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업무기록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0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2. 손해보상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았거나 다른 용도에 썼을 경우에는 5,000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3. 회계검증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의 회계검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5,000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4. 회계검증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할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맞지 않게 기록하였을 경우에는 1만 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5. 대가를 약속하고 사실과 맞지 않게 회계검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물품을 몰수하고 1만 5,000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제41조 (연체료)** 벌금을 제때에 물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일 벌금액의 0.05%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물린다. 연체료의 계산은 중앙공업 지구지도기관이 벌금통지서를 발급한 다음 7일이 지난날부터 한다.

## 개성공업지구 자동차관리규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76호(2006.7.25)로 채택

### 제1장 일반규정

-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자동차의 등록과 기술검사, 통행질서를 엄격히 세워 자동차운행의 편의를 보장하고 교통사고를 미리 막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업지구에서 자동차를 리용하는 법인, 개인에게 적용한다. 공업지구에서 자동차를 리용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공업지구밖에서의 자동차통행은 공화국의 도로교통법규에 따른다.
- 제3조 (자동차의 구분) 자동차에는 승용차, 버스, 화물차, 자동자전차, 특수차같은 것이 속한다. 자동차의 세부적인 분류는 이 규정시행세칙에 따른다.
- 제4조 (자동차의 등록의무) 공업지구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동차의 등록은 의무적이다. 회의, 관광, 물자수송 같은 것을 목적으로 북측 또는 남측지역에서 공업지구에 출입하는 자동차는 등록을 하지 않는다. 자동차를 등록하는 사업은 공업지구 관리기관이 한다.

제5조 (자동차의 번호판발급) 등록된 자동차에는 번호판을 준다. 립 시로 리용하는 자동차, 등록수속중에 있는 자동차에는 립시표 식판을 준다.

제6조 (자동차의 기술검사기관) 공업지구에서 자동차의 기술검사는 자동차기술검사기관이 한다. 자동차기술검사기관은 자동차의 기술검사형식과 기준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 (자동차의 운전자격) 공업지구에서 자동차의 운전은 공화국의 운전면허심사기관이 발굴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만이 한다. 남측 또는 다른 나라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는 그것을 자동차감독기관에 제기하여 교부받은 다음 자동차를 운전한다. 회의, 관광, 물자수송 같은 사유로 공업지구에 단기로 출입하거나 북과 남 해당 기관들사이에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지 않고도 자동차를 운전할수 있다.

제8조 (자동차등록증, 기술검사증사본의 제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번호판, 기술검사증을 발급한 공업지구관리기관과 자동차기술검사기관은 3일안으로 해당 문건의 사본을 자동차감독기관에 보낸다.

제9조 (수수료의 납부) 자동차를 등록하였거나 기술검사를 받았거나 또는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을 경우에는 정해진 수수료를 낸다. 자동차의 등록, 기술검사와 관련한 수수료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운전면허증의 교부와 관련한 수수료는 자동차감독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의 처리) 자동차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공업

지구관리기관, 자동차감독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 제2장 자동차의 등록

**제11조 (등록의 구분)** 자동차의 등록은 첫등록, 이동등록, 삭제등록으로 나누어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자동차의 등록신청서를 정확히 검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동차의 첫등록)** 자동차의 첫등록은 공업지구에 새로 반입한 자동차에 대하여 한다. 첫등록을 하려는 자동차소유자는 해당 자동차를 공업지구에 들어온 날부터 7일안으로 첫등록신청서를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13조 (자동차의 이동등록)** 자동차의 이동등록은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경우에 한다. 자동차소유자는 공업지구에서 구입한 자동차를 15일, 증여받은 자동차를 20일, 상속받은 자동차를 3개월, 이밖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자동차에 대하여 15일으로 자동차이동등록신청서를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14조 (자동차등록신청서의 검토, 등록증발급)** 자동차의 첫등록신청서 또는 이동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공업지구관리기관은 3일안으로 검토하고 해당 자동차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자동차에는 등록증과 번호판을 발급한다.

제15조 (자동차번호판의 봉인) 공업지구관리기관은 등록된 자동차에 번호판을 맡아주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승인없이 자동차번호판의 봉인을 뜯을수 없다.

제16조 (자동차의 립시표식판) 등록수속을 하거나 립시로 운행하는 자동차에는 립시표식판을 달아준다. 립시표식판의 유효기간은 15일간이다.

제17조 (자동차의 등록삭제) 자동차의 등록을 삭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를 폐기시켰을 경우
2. 구입한 자동차를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게 돌려 보냈을 경우
3. 충돌, 화재 같은 사유로 자동차를 다시 리용할수 없게 되었을 경우
4. 자동차를 공업지구에서 완전히 내가려 할 경우
5. 이밖에 삭제등록을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8조 (자동차등록의 삭제신청) 자동차소유자는 제17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안으로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자동차등록삭제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등록증과 번호판을 함께 바쳐야 한다.

제19조 (등록을 삭제하였던 자동차의 등록) 삭제등록을 한 자동차의 등록은 제12조에 따른다.

### 제3장 자동차의 기술검사

제20조 (기술검사의 구분) 자동차의 기술검사는 첫기술검사, 정기기술검사, 구조변경기술검사로 나누어 한다. 자동차기술검사기관은 자동차기술검사의 유효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기술검사를 제때에 하여야 한다.

제21조 (자동차의 첫기술검사) 자동차의 첫기술검사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첫등록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 한다. 첫기술검사의 유효기간은 공업지구관리기관과 자동차기술검사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2조 (자동차의 정기기술검사) 자동차의 정기기술검사는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이 만기되어 수리, 정비한 자동차에 대하여 한다. 자동차소유자는 검사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히 파손되어 수리복구한 자동차는 해당 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자동차의 구조변경기술검사) 자동차의 구조변경기술검사는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에 대하여 한다. 자동차소유자는 차종, 차형, 차체번호, 능력, 모양 같은 것이 달라진 자동차의 구조변경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자동차의 기술검사신청과 검사) 자동차의 기술검사를 받으려는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기술검사신청서를 자동차기술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자동차기술검사시관은 자동차기술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안으로 검사 날짜를 정하고 기술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기술검사증의 발급) 자동차기술검사기관은 검사신청에 따르는 기술검사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기술검사에서 합격된 자동차에는 기술검사증을 발급하여 준다.

제26조 (자동차의 장치물설치)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에 장치물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표식을 하려 할 경우 자동차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장 자동차의 통행

제27조 (교통지휘) 공업지구에서 교통지휘는 교통보안원이 한다. 자동차의 통행은 교통보안원의 교통지휘신호에 따라야 한다.

제28조 (자동차의 달림선) 자동차는 자동차도로로만 통행하여야 한다. 달림선이 표시된 도로에서는 정해진 달림선으로 통행하며 달림선이 표시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자동차의 속도와 종류, 차형, 통행목적에 따라 서로 양보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제29조 (자동차의 저속통행) 자동차는 사궤길, 건늌길표식이 있는 곳, 정류소, 안전보임거리가 제한된 곳, 교통이 복잡한 곳으로 통행하거나 눈, 비, 안개, 먼지 같은것에 의하여 차의 운전이 지장을 받을 경우에는 저속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30조 (자동차의 따라 앞서기) 자동차는 달림선이 없는 도로에서 앞선 자동차를 따라 앞서려 할 경우 정해진 신호를 하여야 한다. 신호를 받은 자동차는 따라 앞서려는 자동차에게 길을 내주어

야 한다. 좁은 도로, 따라앞서기금지표식이 있는 구간의 도로, 굽인돌이, 사궤길, 건늬길, 정류소 다리, 굴길, 철길건늬길 같은 곳에서는 따라앞서기를 할 수 없다.

**제31조 (자동차의 어기기)** 경사진 도로에서 자동차가 어길 경우 먼저 본 자동차 또는 내려오는 자동차는 길을 양보하여야 한다. 넓은 도로와 좁은 도로가 연결되는 도로에서 자동차가 어길 경우 넓은 도로에서 좁은 도로로 들어서려는 자동차는 길을 양보하여야 한다.

**제32조 (자동차의 정차와 주차장소)** 멈추어서려는 자동차는 안전을 확인한 다음 도로의 변두리나 주차장에 세워야 한다. 다리, 사궤길, 철길건늬길, 시야가 제한된 경사길과 굽인돌이, 정차금지표식이 있는 곳, 주차표식이 없는 곳에는 자동차를 세우지 말아야 한다.

**제33조 (적재량과 규격의 초과금지, 짐의 포장)** 자동차는 적재정량과 정해진 규격을 초과하여 짐을 싣지 말아야 한다. 바람에 날리거나 도로를 파손시키거나 보행자와 다른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짐은 포장하여 실어야 한다.

**제34조 (인원을 태울 수 없는 자동차)** 자동부림식, 반끌림식, 짐함식, 짐틀식, 탱크식화물차, 련결차와 강재, 통나무, 폭발성물질, 방사성물질, 독성물질, 인화성물질같은 것을 실은 자동차는 적재함에 인원을 태우지 말아야 한다.

**제35조 (보행자의 통행)** 자동차는 건늬길에서 보행자가 지나간 다음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행자는 도로를 빨리 건너가야 한다.



**제36조 (자동차의 사궤길통행)** 교통보안원, 자동신호등이 있는 도로의 사궤길에서 자동차는 속도를 점차 낮추면서 가려는 방향의 신호등을 켜고 해당 자리바꿈선에 들어선 다음 교통지휘신호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교통보안원과 자동신호등이 없는 도로의 사궤길에서는 가려는 방향의 신호등을 켜고 교통안전에 주의를 들리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제37조 (자동차의 다리통행)** 다리로 통행하는 자동차는 다리의 안전표식대로 짐을 싣고 통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힘든 다리에서는 저들어선 자동차부터 통행하여야 한다.

**제38조 (자동차의 철길건널길통행)** 철길을 건느려는 자동차는 건널길 10M 앞에 세우고 열차가 통과하지 않는가를 확인하며 안전신호를 받은 다음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도를 변경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39조 (자동차의 야간통행)** 밤에 통행하는 자동차는 조명등을 켜고 보임거리를 보장하며 자동차가 서로어길 경우 원거리등과 근거리등을 엇바꾸어 켜 다른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가로등이 있는 도로에서는 원거리등을 켜지 말아야 한다.

**제40조 (특수차의 통행)** 구급차, 소방차, 도로시설관리차 같은 특수차는 해당 경보장치와 표식등, 표식기재를 사용하며 교통안전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달림선에 표시한 속도보다 높은 속도 또는 낮은 속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41조 (교통사고시 운전사의 임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사는 즉시 자동차감독기관과 보험회사에 알리고 사고현장을 보존하며 보행자와 다른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 (자동차에 갖추어야 할 물건) 통행하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증, 기술검사증, 자동차3자책임보험가입확인증이 있어야 한다. 자동차운전사는 운전자격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43조 (자동차의 통행금지사유)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 기술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이 지난 자동차, 자동차3자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자동차와 조향장치, 제동장치, 조명장치, 신호장치가 불비한 자동차, 번호판, 립시표식판을 알아볼수 없는 자동차는 통행할수 없다.

## 제5장 제재 및 신소

제44조 (벌금과 부과)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행위에 따르는 벌금의 부과기준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5조 (자동차의 억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7일까지 억류시킬수 있다.

제46조 (추방) 이 규정을 어긴 행위의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를 공업지구에서 내보낼수 있다.

제47조 (신소와 처리기일) 자동차의 등록, 기술검사, 통행, 제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 자동차기술검사기관, 자동차감독기관과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받은 기관은 15일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개성공업지구 환경보호규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82호(2006.11.21)로 채택

### 제1장 일반규정

-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환경오염방지질서를 엄격히 세워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사람들에게 깨끗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 주는데 이바지 한다.
-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업지구의 기업과 개인(외국인 포함)에게 적용한다. 기업에는 공업지구의 기업과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개인업자가 속한다.
- 제3조 (환경보호사업의 담당자) 공업지구의 환경보호사업은 공업지구 관리기관이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환경보호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4조 (환경보호사업의 선행) 환경보호사업은 기업과 개인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공업지구에서 개발, 건설, 생산을 하려는 기업과 개인은 환경보호사업을 앞세워야 한다.
- 제5조 (환경보호기준) 공업지구의 환경보호기준은 중앙공업지구지도 기관이 정한다. 환경보호기준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지오

염, 방사성오염, 악취오염기준과 소음, 진동기준 같은 것이 속한다.

## 제2장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 제6조 (자연환경보존과 조성의 기본요구) 기업과 개인은 공업지구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그것을 사람의 건강증진과 문화정서생활에 유리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 제7조 (자연환경보호구의 설정) 공업지구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호구를 정한다. 자연환경보호구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 제8조 (산림자원의 보호)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산림병해충예찰체계와 산불감시체계를 세워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승인없이 공업지구에서 나무를 베거나 산림을 개간할 수 없다.
- 제9조 (동식물자원의 보호) 기업과 개인은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파괴하거나 희귀한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지 말며 그 서식조건을 지어주어야 한다.
- 제10조 (명승지, 천연기념물, 역사유적의 보존) 기업과 개인은 명승지와 천연기념물, 역사유적을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명승지와 천연기념물, 역사유적주변의 자연풍치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11조 (명승지, 천연기념물, 역사유적주변의 건설금지) 명승지와 천연

기념물, 역사유적주변에는 생산시설을 건설할 수 없다. 봉사시설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건설할 수 있다.

제12조 (수림화, 원림화) 기업과 개인은 공장, 도로, 철길의 주변과 공지에 환경보호에 유리하고 관상적가치가 있는 나무와 잔디, 꽃을 많이 심어 공업지구의 풍치를 돋구어야 한다.

### 제3장 환경오염의 방지

제13조 (환경오염방지의 기본요구) 공업지구관리기관과 개발업자는 공업지구의 개발, 건설, 운영에 따르는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보호계획을 작성하고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실행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보호계획에는 해당 대상의 개발, 건설, 운영계획과 대상의 특성, 환경에 미치는 예측평가자료, 환경오염방지대책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4조 (환경보호계획의 제출) 기업은 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보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당해연도 환경보호계획을 작성하여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오염물질배출, 방지시설의 설치) 기업과 개인은 환경보호기준에 맞게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환경오염물질배출, 방지시설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의 검사를 받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 (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제한)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자연환경

보호구와 주민지구의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줄수 있을 경우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17조 (가스, 먼지의 배출승인) 배출구를 설치하지 않고 대기중에 가스와 먼지를 직접 내보내려는 기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륜전기재의 운행금지) 기업과 개인은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배기가스를 내보내는 륜전기재를 운행하지 말아야 한다.

제19조 (악취방지) 기업과 개인은 개발, 건설, 생산과정에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고무, 비닐, 쓰레기 같은 악취발생물질을 불태울 수 없다.

제20조 (소음, 진동의 방지) 기업과 개인은 개발, 건설, 생산과정에 다른 기업이나 주민들이 소음,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게 하여야 한다. 소음, 진동기준을 초과하는 설비는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 (오수, 폐수의 정화) 오수, 폐수를 내보내려는 기업과 개인은 오수나 폐수를 수질오염배출기준아래로 정화하여야 한다.

제22조 (수역에서의 금지행위) 기업과 개인은 하천, 호소, 저수지에서 륜전기재를 청소하거나 거기에 오물을 버리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3조 (토지의 오염, 류실방지) 기업과 개인은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대책을 세워 토지오염을 막아야 한다. 절토 또는 성토로 인한 토사의 류출을 방지하며 폭우로 흙과 모래가 하천과 수로에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지하수의 오염방지) 기업과 개인은 지하수오염물질의 발생원과 물잡이구조물관리를 바로하며 오염물질에 의한 지하수의 오염을 막아야 한다.

제25조 (지반침하의 방지) 기업과 개인은 지하수의 리용과 지하구조물의 건설, 절토 또는 성토, 복구로 하여 지반이 침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반이 침하될수 있는 곳에서는 지하수를 뽑아 쓸 수 없다.

제26조 (유독성물질의 취급) 유독성물질을 취급하려는 기업은 유독성물질의 종류, 수량, 용도 같은 것을 밝힌 문건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유독성물질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신고하며 종류, 수량, 용도가 달라졌을 경우에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27조 (폐기폐설물의 배출량보고) 기업은 폐기폐설물의 배출량을 정확히 장악기록하며 그 정형을 월에 1차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폐기폐설물의 보관) 폐기폐설물을 보관하려는 기업은 보관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그 주변에 울타리와 경계표식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폐기폐설물을 담은 용기겉면에는 폐기폐설물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

제29조 (폐기폐설물의 운반) 폐기폐설물을 운반하려는 기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보고하며 운반도중에 폐기폐설물이 섞이거나 류출되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폐기폐설물의 처리) 폐기폐설물을 처리하려는 기업은 폐기폐

설물처리신청서를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그러나 공업지구 밖으로 내보내려는 폐기폐설물의 처리신청서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폐기폐설물처리신청서에는 폐기폐설물의 종류, 성분분석자료, 수량, 환경영향평가자료, 환경보호담보자료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31조 (환경의 오염경보)**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정화하여 내보낸 오수, 폐수가 특수한 기상수문조건과 사정으로 사람의 건강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환경오염경보를 하여야 한다.

**제32조 (환경상태의 조사, 측정, 분석)**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공업지구의 환경상태를 정상적으로 조사, 측정, 분석하여야 한다. 조사, 측정, 분석방법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정한다.

**제33조 (자료기록)** 기업은 오염방지시설의 운영, 폐기폐설물의 보관, 처리정형을 대장에 기록하고 정한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 (환경보호사업정형의 보고)**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환경보호계획 실행, 환경보호사업정형을 분기에 1차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장 감독통제

**제35조 (감독통제기관)** 공업지구의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지도밑에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환경보호기준의 준수정형을 엄격히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제36조 (환경감시체계의 수립)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환경감시체계를 바로 세우고 환경상태를 조사장악하며 기업에 필요한 환경정보를 정상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7조 (환경보호시설의 관리)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환경보호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보수주기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 (제재) 환경을 오염시켰거나 오염방지시설을 파손시켰을 경우에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또는 벌금을 물리거나 영업을 중지시킨다.

제39조 (분쟁해결) 환경보호사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복남 상사중재절차로 한다.

## 4. 주요 통계(2007년 10월말 현재)

### 생산 현황

(단위 : 만달러)

구 분	'05년 누계	'06년 누계	'07년						'07년 누계	전체 누계
			1분기	2분기	7월	8월	9월	10월		
섬유	678	2,779	1,608	1,987	669	738	770	930	6,703	10,160
화학	177	1,090	459	478	167	148	138	172	1,561	2,828
금속·기계	525	2,085	824	879	284	352	449	527	3,315	5,925
전기·전자	111	1,419	669	847	370	332	354	461	3,033	4,563
합계	1,491	7,373	3,560	4,191	1,490	1,570	1,711	2,090	14,612	23,476

### 수출 현황

(단위 : 만달러)

구 분	'05년 누계	'06년 누계	'07년						'07년 누계	전체 누계
			1분기	2분기	7월	8월	9월	10월		
화학	54	497	207	252	105	70	61	125	820	1,371
금속·기계	33	1,286	512	585	130	208	211	255	1,901	3,220
전기·전자	-	200	119	144	47	48	40	44	442	642
합계	87	1,983	838	981	282	326	312	424	3,163	5,233

## 근로자 현황

구분	입주기업		남측	복측			총계
	업종	기업명		남	녀	소계	
입주기업	섬유	문창기업(주)개성	9	43	738	781	790
		신원에벤에셀	11	60	808	868	879
		삼덕스타필드	16	156	1,775	1,931	1,947
		코튼클럽	13	13	665	678	691
		평안	3	142	651	793	796
		평화제화	17	29	327	356	373
		성화	8	32	247	279	287
		만선	6	51	734	785	791
		좋은사람들	8	14	423	437	445
		아트랑	9	47	713	760	769
		밀리온스	6	6	54	60	66
		제일상품	10	10	657	667	677
		진글라이더	4	22	156	178	182
	개성아파트형공장	85	334	2,215	2,549	2,634	
	화학	지에스	6	110	168	278	284
		태성하타	27	128	564	692	719
	금속	소노코쿠진웨어	8	244	206	450	458
		호산에이스	2	90	67	157	159
	기계	로만손협동화	56	377	755	1,132	1,188
		개성대화	6	165	212	377	383
		티에스피	8	60	58	118	126
		한국마이크로필터	6	105	311	416	422
	전기·전자	개성부천공업	2	18	521	539	541
		제씨콤 개성공장	5	26	279	305	310
		솔루텍지에스	6	82	307	389	395
		용인전자	5	22	220	242	247
		개성마이크로	4	7	602	609	613
	남광엔케이	10	49	0	49	59	
	소계	356	2,442	14,433	16,875	17,231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	53	126	22	148	201	
	협력업체	10				10	
	소계	63	126	22	148	211	
지원기관	KT	3	1	1	2	5	
	한전	17	2	4	6	23	
	우리은행	3		2	2	5	
	그린닥터스	6	8	8	16	22	
	환경관리공단	5	16	7	23	28	
	전기안전공사	2			0	2	
	아라코	8	1	34	35	43	
	패밀리마트	2	0	4	4	6	
소계	46	28	60	88	134		
개발업자	토지공사	13	12	10	22	35	
	현대아산	353	2,208	152	2,360	2,713	
	소계	366	2,220	162	2,382	2,748	
경협사무소	경협사무소	16	7	2	9	25	
	소계	16	7	2	9	25	
	총계	847	4,823	14,679	19,502	20,349	

### 인원·차량 방문 현황

(단위 : 명, 대)

구분	'05	'06	'07. 1분기	'07.4	'07.5	'07.6	'07.7	'07.8	'07.9	'07.10	총계
아시아	38,310	49,685	15,557	5,490	5,740	5,839	5,854	5,927	5,849	8,526	146,777
유럽	2,564	9,868	2,343	1,549	1,613	1,685	1,046	1,025	921	1,441	24,055
인원계	40,874 (144/일)	59,553 (203/일)	17,900 (740/일)	7,039 (306/일)	7,353 (272/일)	7,524 (290/일)	6,900 (276/일)	6,952 (278/일)	6,770 (295/일)	9,967 (433/일)	170,832
차량	19,413 (69/일)	29,807 (101/일)	8,098 (334/일)	3,006 (130/일)	3,369 (124/일)	3,299 (127/일)	3,161 (126/일)	3,432 (138/일)	3,306 (144/일)	4,693 (204/일)	81,584

※ 위 자료는 입경기준에 의한 방문 현황임.

### 지역별 외국인 방문 현황

(단위 : 명)

구분	'05	'06. 1분기	'06. 2분기	'06. 3분기	'06. 4분기	'07. 1분기	'07. 2분기	'07.7	'07.8	'07.9	'07.10	총계
아시아	15	49	46	14	17	26	51	7	9	10	7	251
유럽	30	10	37	16	39	56	94	3	-	3	16	304
미국	1	10	65	2	12	26	43	-	-	1	1	161
기타	3	2	76	3	1	33	2	1	-	-	-	121
총계	49	71	224	35	69	141	190	11	9	14	24	837

## 눈 내리는 금강산의 밤과 ‘개성공단 통신, 통관, 검역 합의서’

박형일 |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개발기획팀장

개성공단 시작을 한창 준비하던 2002년 말을 떠올리면 되살아오는 기억이 하나 있다. 2002년 12월 7일 밤, 제1차 개성공단 실무접촉 이틀째 회의가 열리던 금강산 여관은 무척 추웠다. 개보수 준비로 모든 집기를 복도에 내놓고 손님도 받지 않는 빈 건물에서 난방도 되지 않고 때때로 정전이 되는 상황이었지만 남북 대표단들은 밤새 협상을 계속했다. 쉽게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이가 있었지만 더 이상 개성공단 출범을 늦출 수 없다는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루 밤 사이에 적지 않은 분량의 ‘개성공단 통신, 통관, 검역 합의서’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동이 튼 뒤 숙소인 해상호텔로 돌아가려 했지만 밤새 내린 눈이 사람 키 높이까지 쌓여 포크레인이 출동해 길을 낸 다음에야 움직일 수 있었다.

그 뒤에도 많은 노력이 있었고, 그 결과 오늘날의 개성공단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정리한 책을 내놓게 되었다. 지금도 세부적인 문제들에 들어가면 남북간에 의견차이와 입장대립이 남아있지만, 그날 밤새 온기라고는 남아있지 않은 방에서 촛불을 밝혀놓고 합의서 조항을 협의하던 열기만 서로 잊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타날 어떤 문제들도 풀지 못할 것이 없을 것 같다.

## 薔薇가 만발한 행복한 개성공단

김기혁 | 통일부 남북경제협력본부 남북기반협력팀장/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사업지원부장

2003년 6월 초 2년간의 미국 연수를 마치고 통일부로 복귀하여 개성공단 개발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개성공단 업무를 해나가면서 막연한 대북정책 보고서로만 대변되던 통일부 업무가 가시적 성과물로 구체화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희열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사업지원단과 관리위원회가 출범 하던 2004년 10월의 감격을 잊을 수 없다.

이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파견되어 개성공단에서 생활하게 되었으며, 북측과의 쉽지 않은 협의 과정 속에서 原則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原則을 지키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두려워도 개성공단의 장래 발전을 위해서 옳은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은 그 개발목표처럼 남북이 함께 공영(Win-Win)하는 場으로서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남과 북이 함께 헤쳐가는, 역사를 만들어 가는 현장이다. 지금도 그 일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멈출 수 없는 역사의 수레바퀴이다.

『개성공단 5년』 원고를 검토하면서 문득 처음 개성공단에서 보았던 북측의 상냥하고 아리따운 사무원이 생각났다. 그 여사무원의 이름은 ‘장미’였다. 지금쯤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개성공단이 행복한 역사의 현장, 薔薇가 만발한 눈부신 꽃밭이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 평화와 번영의 생활공동체, 개성공단

**이수영** | 통일부 정책의제관리팀장/전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지원총괄팀장

『개성공단 5년』 발간을 위해 원고를 검토하면서 불과 몇 년전 허허벌판이던 개성공단 부지 일대가 눈 앞에 떠올랐다. 2003년까지만 해도 개성공단은 실재하지 않았다. 단지 사람들의 생각속에만 있었고, 오히려 실현가능성에 대한 회의도 있었다. 그러나 2004년부터, 하나 둘 공장들이 들어서고 제품이 생산되기 시작했다.

사업의 성패가 경제성과 국제경쟁력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초기부터 남북 양측의 실사구시적인 접근과 변화를 수반해 왔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남북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 60년 분단을 녹여내는 일이 쉬울 리가 없겠고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을 것이다. 그래도 가슴벅차게 기쁘다. 이제 이 개성공단에서 날마다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이 더 가까워질 것이고, 오늘 2만 3천명의 이 생활공동체, 경제공동체는 앞으로 더욱 커져갈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꿈은 조금씩 현실로 구체화될 것이다.

북한 근로자들의 얼굴에 웃음이 환해지고, 우리 입주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개성공단과 '삼통(三通)'

마경조 |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사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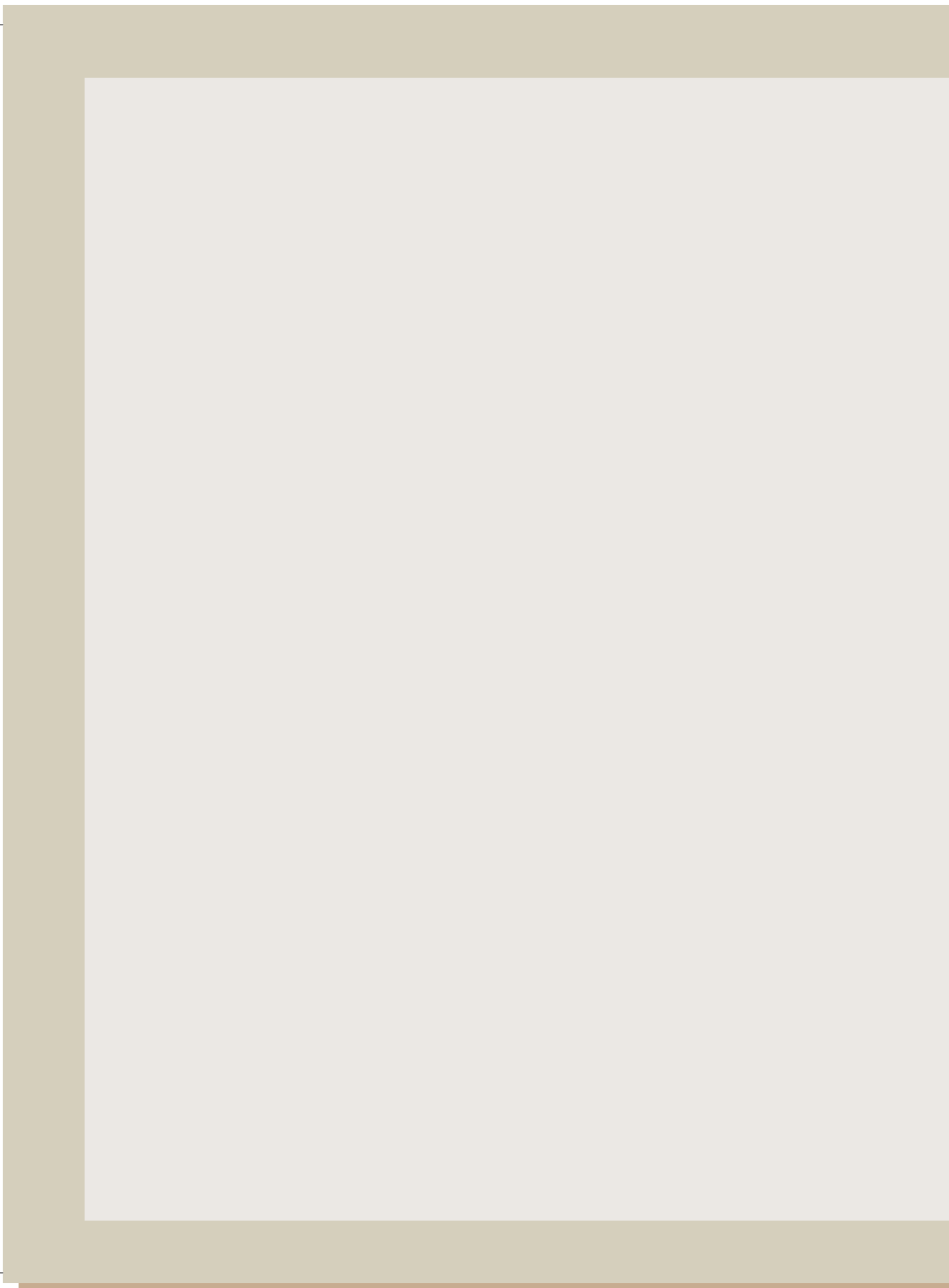
삼통! 입주기업을 비롯한 개성공단 사업 관계자들은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줄여 '삼통(三通)' 이라고 말한다. 2005년 2월 개성공단에 근무하면 서부터 삼통 문제는 늘 개성공단의 화두였다. 자유롭게 인원과 물자가 오 가야 하고(통행), 인터넷과 이동전화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통신), 신속한 물자 검색을 위해 관련 절차가 간소화 되어야(통관) 한다는 것이다.

50여년간의 분단 세월만큼이나 남과 북의 삼통 문제에 대한 인식차이는 컸다. 우리측은 모든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북측에 삼통 문제 해결을 촉구 해왔으나, 문제 해결은 더디기만 했다.

『개성공단 5년』 발간을 준비하는 동안, 다행스럽게도 2007 남북정상회담과 이후 일련의 회담을 통해 삼통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들이 이뤄졌다. 2008년부터는 보다 자유롭게 개성공단을 오갈 수 있으며 통관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2008년 내에 인터넷을 개성공단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10% 정도 왔다는 느낌이다. 갈 길은 아직 멀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산적해 있다. 기업들과 함께 힘을 합치고, 북측과 협력해 나간다면 개성공단이 중국의 그 어느 공단보다도 경쟁력있는 공단으로 발전해 나가리라 확신한다. 개성공단의 잠재력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WHITE PAPER ON GIC PROJECT

## 개성공단 5년

개성에 가면 평화가 보인다

발행일 | 2008년 1월 30일

펴낸이 | 개성공단5년 발간위원회 편

발행인 |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펴낸곳 |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 1가 10번지 우리빌딩 16층

전 화 | 02) 3783-7422 팩 스 | 02) 3783-7490

디자인 | 다해미디어 02) 722-7123

인 쇄 | 위너스기획인쇄 02) 2263-2937